

산업디자인편람

1997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편람

1997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편람」을 발간하며

최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경제의 경쟁력회복과 무역 수지 개선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우리산업이 의존해왔던 노동·가격 중심의 경쟁력 요소를 품질·가치 등 질적요소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과 더불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개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강한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디자인 제품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디자인산업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6년 2월, 정부내에 디자인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디자인과”가 설치된 이래 지난 1년간 디자인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산업디자인편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보완을 전제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편람이 정부내 분야별 정책의 수립·추진에 일조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발전에 애쓰시는 디자이너 및 디자인관련 학계, 업계, 기관, 단체 등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충고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1997년 5월

산업디자인과장 이 일규

목 차

I. 산업디자인의 정의	9
1. 학문적 정의.....	9
가. 전통적 의미의 디자인.....	9
나.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	9
다.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	11
라. 학문적 의미의 디자인.....	12
2. 법적 정의	13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정의	13
나. 산업디자인보호관련법령상의 정의	13
다. 외국의 디자인관련법령상의 정의.....	14
3. 응용미술의 정의	15
4. 산업디자인·의장·응용미술의 상호관계	15
5. 산업디자인의 구분	16
가. 제품디자인.....	16
나. 포장디자인.....	16
다. 시각디자인.....	17
라. 환경디자인.....	17
마. 기타 분야의 디자인.....	18

II.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19
1. 국내외 여건의 변화	19
가. 국내환경의 변화	19
나. 국제환경의 변화	19
2.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20
가. 국가경제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20
나. 기업경영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21
III. 국내 산업디자인의 현황 및 문제점	22
1. 국내 산업디자인의 현황	22
가. 산업디자인 기반	22
나. 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실태	25
다. 국제경쟁력 수준	26
2. 문제점	28
가. 산업디자인 기반의 취약	28
나. 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능력 미흡	30
다. 디자인관련상품의 국제경쟁력 취약	31
IV. 외국의 산업디자인 정책	32
1. 외국의 산업디자인 진흥정책 종합	32
가. 디자인진흥정책 기본방향	32
나. 디자인진흥정책의 특징	32

2. 주요국가의 산업디자인 정책사례	33
가. 영 국 : 제2의 산업혁명으로서의 산업디자인정책 추진	33
나. 일 본 : 정부, 공공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연계의 진흥정책	34
다. 대 만 : 디자인세계화(Design Globalization) 정책	35
라. 싱가폴 : 정부주도형의 강력한 디자인정책	36
마. 미 국 :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지원	37
바. 스웨덴 : 문화전반에 걸친 디자인의 기능을 함께 강조	38
 V.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정책	39
1. 기본정책방향	39
 2. 주요업무 추진현황	40
가. 디자인인프라의 확충	40
(1) 산업디자인진흥법 운용	40
(2) 「산업디자인종합진흥계획」의 수립·추진	42
(3) 「산업디자인센터」의 건립추진	43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지원	46
(5)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47
(6) 산업디자인보호제도의 개선·보완	48
(7) 우리상품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추진	50
 나. 디자인개발 지원강화	55
(1)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의 실시	55
(2) 산업디자인기반기술개발	60
(3) 산업색채표준화 추진	61

(4) 산업색채공동연구기반 구축	67
(5) 고부가가치화 사업(산업기반기금) 추진	76
(6) 민간 전문인력의 특별채용 추진	78
(7) 산업디자인분야 병역특례 추진	86
(8) 디자인 관련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94
 다. 디자인의 저변확대 추진	96
(1)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96
(2)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	108
(3) 각종 산업디자인관련 전시회 지원	118
(4) 산업디자인의 지방확산 추진	124
(5)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추진	125

업무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현황 관련자료	139
가. 전문인력 수급현황	139
나.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설치현황	141
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일반현황	141
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현황	142
마. 세계 유명 디자인전문회사 현황	142
바. 자체 디자인 개발실태 관련자료	143
사. 외국과의 디자인수준 비교	145

아. 디자인관련상품 수출입 추이	146
자. 주요 디자인 관련업체의 디자인실 방문결과	149
2.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관련자료	164
가. 디자인관련상품의 국내외 가격비교	164
나. 디자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	166
다. 디자인이 상품판매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의 디자인수준	167
3. 산업디자인관련 주요위원회 및 위원 명단	167
가.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167
나. 산업디자인센터설립위원회	168
다.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및 건립사업단	170
라. 산업디자인발전심의회	171
마.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평가위원회	171
바. 산업디자인지도사업 주요 지도위원	172
사. 기타 각종 위원회의 디자인분야 위원	175
4. 산업디자인분야 지원예산	180
5. 디자인 관련법령 및 규정 등	181
가. 산업디자인진흥법령	181
나. 제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법령	201
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06
마.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30
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238

6.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254
가. 일반현황	254
나. 조직 및 예산	255
다. 이사회	257
라. 정관, 직제 및 이사회운영규정	258
7.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288
가. 일반현황	288
나.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 이사회	289
다. 정관 및 관련규정	290
8. 디자인 관련단체 일반현황	333
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333
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337
다.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341
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345
마. 한국디스플레이협회	349
바. 한국포장협회	353
사. 한국색채연구소	357
9. 외국의 주요 디자인 진흥기관 및 단체	361
가. 영 국	361
나. 일 본	364
다. 대 만	366
라. 미 국	367

10. 주요 디자이너 및 업체별 디자인부서장 명단	368
가. 초대 디자이너	368
나. 추천 디자이너	369
다. 주요 업체별 디자인부서장	370
11. 세계 디자인관련 주요발간물 현황	371
12.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연혁	371
가. 설치근거 및 년월일	371
나. 구성원 현황	371
다. 업무분장	371
라. 산업디자인관계관 변동현황	376

I. 산업디자인의 정의

1. 학문적 정의

가. 전통적 의미의 디자인

- 디자인의 어원
 - 데시그나레(Designare—라틴어) = De(완전히) + Signare(전하려는 의미를 그리다), 즉 그 어원에서 볼 때 디자인은 “전달하려는 의미를 완전하게 기호로 나타내어 그리다”라는 의미
-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산업체품을 위해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조형활동으로 간주됨 →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혁명의 초창기에는 디자인 대신 응용미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응용미술”은 단지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미술의 원리를 응용한다는 전근대적인 개념으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디자인”이란 용어가 일반에게 쓰이게 된 것은 수공예품의 생산이 본격화 된 르네상스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이때부터 산업혁명 이전의 디자인 활동은 그 성격상 소비자 대중을 전체로 하지 않은 수공예적, 조형예술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나.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

-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은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작됨
 - 산업혁명과 더불어 종래의 공장제 수공업(manufacture)에서 공장제

기계공업(factory)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대량생산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디자인”이란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개념이 인식됨

- 1880년대의 아트 앤드 크래프트 운동(Art & Crafts Movement)과 1890년대의 아르누보(Art Nouveau)는 근대 디자인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그 자체로서는 결국 곡선과 색채에 의한 장식을 주로 사용
 - 아트 앤드 크래프트 운동(Art & Crafts Movement) : 산업혁명 초기 기계로 생산된 제품의 질적 저하와 열악한 제품이 시장에 범람한 상황에 대항하여 시민을 위한 실용공예품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디자인 혁명운동
 - 아르누보(Art Nouveau) : 벨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한 조형중심의 디자인 혁명운동으로, 건축, 실내장식, 포스터, 기타 생활용품 등에 유동적인 곡선과 색채에 의한 장식을 주로 사용
 - 아트 앤드 크래프트 운동(Art & Crafts Movement)이나 아르누보(Art Nouveau) 모두 근대 디자인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그 자체로서는 결국 장식자체에 목적을 가지는 예술을 벗어나는 것은 아님
- 1907년의 “독일 공작연맹(DWB : Der Deutsche Werkbund)”의 결성
 - 기계문명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대량생산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과 디자이너와 기술자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예술가, 건축가, 공예가, 교육자, 기술자를 기업 내에 통합시켜 생산의 양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
 - 현대 산업디자인을 설립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
 - 이후 오스트리아(1910), 스위스(1913)에 공작연맹이 결성되고, 영국에서는 1915년에 산업디자인협회가 결성됨

다.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

- 1919년 바우하우스(Bauhaus)의 설립
 - 독일공작연맹의 일원이었던 건축가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서 독일의 바이마르에 설립된 종합조형학교
 - 예술과 기술, 인간과 기술, 예술과 인간사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술과 생활양식과의 통일을 건축상에 실현하는 일을 궁극적 이념으로 하고,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대량생산을 위한 원형(prototype)을 만드는데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였음
 - “미술가이고 동시에 장인이며 또한 산업디자이너”라는 교육이념을 제시
 - 바우하우스는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인간” 그자체에 근거를 둔 국제적인 조형사상으로, 그 사상과 이론은 오늘날의 산업디자인에는 물론 모든 디자인분야에 큰 기초가 되었음
- 1920년말부터 시작된 공황으로 인한 관리방식의 변화 : 산업디자이너의 출현
 - 불황으로 인한 구매의 급락현상이 나타나자 새로운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산업디자인이 등장하게 됨
 - 1926년 제너랄 모터스(General Motors)사내에 아트 앤드 컬러 섹션(Art and Color Section)이라는 디자인 부서 신설에 이어 1927년 게데스(Norman Bel Geddes)는 세계최초의 산업디자인 사무실과 연구실을 설립하고 드레이퍼스(Henry Drefuss), 로위(Raymond Lowey), 도렌(Horold Van Doren) 등이 사무실을 열어 새로운 스타일의 기관차, 열차, 자동차, 가구 등장

- 1930년대 산업계의 번영
 - 금속, 플라스틱, 유리섬유, 합판등 신소재분야의 상품 개발의 증가로 인한 산업디자이너의 등장 촉진

라. 학문적 의미의 디자인

-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의 정의
 - 대량생산에 맞게 제품을 분석하고 창작하고 실현하는 실행위로서 그 목표는 거액의 투자가 되기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형태, 그리고 널리 팔아서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제조 할 수 있는 형태를 획득하는 일
-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의 정의
 - 제품 및 장치들의 기능, 가치 및 외관을 그 이용자나 제조자 모두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구상과 세부설계를 창작하고 발전시키는 전문적 활동
- 세계예술백과사전(Encyclopedia of World Art)의 정의(1959)
 - 기계제품을 위한 예술가의 계획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로 수공작의 경우에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적형태가 창조되는 것이며 완전히 동일한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대해서, 기계제품의 경우에는 그 예술적 효과는 양산되는 제품의 패턴으로서 사용되는 원래의 디자인중에 완성 되는 것으로 봄
- 결국 디자인이란 “기능과 부합되는 형태를 창출하는 조형활동”이라 할 수 있음

- 디자인과 미술과의 차이점
 - 미술은 절대적인 미적가치의 추구와 작가의 개인적인 만족에 의존하지만, 디자인은 상대적인 조형적 가치와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고
 - 미술은 모든 제작과정이 전적으로 작가 자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디자인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
- 최근 소비자의 기본적 요구가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개성화·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제품의 형태·기능에 있어서도 그 물리적 기능은 물론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기능, 사용자와의 친화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디자인도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중시됨

2. 법적 정의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정의

-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나. 산업디자인보호관련법령상의 정의

- 의장법상의 정의
 -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장법 제2조)

※ 일본 의장법상의 정의도 이와 거의 동일함

※ 意匠의 어원：意는 마음(心)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음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匠은 (방)과 斤(근)의 합자로서 은 상자 斤은 도끼, 즉 도끼로 상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즉 意匠은 물건을 만드는 계획 또는 고안을 의미함

다. 외국의 디자인관련법령상의 정의

○ 미국 산업재산권 관련법령상의 정의

- 의장특허의 대상을 “공업제품에 관해서 새롭고 독창적인 장식적 디자인”으로 정의 (미 특허법 제171조)
- 판례법상의 trade dress법리 : 특허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 도식별력이 있고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리에 의해 보호됨. 원래는 단순히 물건의 외형을 의미하였으나 미국의 제11항소법원에서 그의미를 확대하여 물건의 외형적 느낌,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 색깔의 조합, 심지어는 그 판매기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EU의 디자인보호규정안(1993)

- EU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EU디자인권의 창설 및 EU각국 디자인법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침안
- 디자인은 물품 그 자체 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채, 형태 및 재질의 특징으로부터 유래하는 물품의 전체적, 부분적 외관을 의미함. 단, 당해 형상이 특정한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를 통한 기술독점을 피하기 위해 제외함

○ 세계 각국의 디자인보호를 위한 정의는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임

3. 응용미술의 정의

- 공업제품과 미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순수미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으로서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의미(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베른조약)
- 수공예품이건 공업적제품이건 묻지않고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저작물(WIPO용어사전)
- 현재 저작권법 제4조에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규정하여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예시

4. 산업디자인·의장·응용미술의 상호관계

- 연혁적으로 보면 응용미술로서의 공예는 기계생산과 더불어 산업공예 내지 양산공예로, 그리고 공업디자인 내지는 산업디자인으로 변화해 옴
 - 영어의 경우도 ‘applied art’ 내지 ‘art and crafts’로부터 ‘art and industry’, ‘industrial art’로, 그리고 ‘industrial design’으로 명칭이 변해옴
 - 결국 응용미술이란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 현행 의장법상 의장이란 양산된 실용품의 외부형태를 미적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므로 양산된 제품에 적용된 응용미술을 의장이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 그러나 최근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물건의 외형과 색채, 기능에 관계되는 것과 함께 전체적인 디자인과정(Design Process)이 중요시 되면서 디자인의 의미에 「설계」, 「계획」의 개념이 포함됨에 따라 의장과는 다른영역이 발생하는 추세임

5. 산업디자인의 구분

산업디자인을 기능에 따라 크게 구분하면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의 네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가. 제품디자인

- 제품디자인이라는 대량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에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질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디자인을 의미함
 - 제품의 물리적 특성 : 제품의 구조, 형태, 색채, 크기, 질감 등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과 제품의 제조, 운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과 관련되는 기능적인 문제들이 물리적 특성의 범주에 해당됨
 - 제품의 심리적 특질 : 제품과 관련지어 사용하는 사람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 이미지는 사용자의 제품선택은 물론 제품 사용중 또는 사용후의 만족도와 직결됨
 - 패션디자인과 텍스타일디자인의 경우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특성상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됨

나.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 물질적인 형태를 일정한 목표를 위하여 담아놓은 입체적이고 평면적인 제반활동을 뜻함
 -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제품을 단지 안전하게 담는다는 기능에 모든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기능과 감성적 기능을 지키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이를 담는 형태를 만들거나 도형하는 제반활동을 일컬음

다. 시각디자인

- 시각디자인이란 눈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전달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분야로 전통적으로 인쇄매체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뜻을 갖는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으로 불리워짐
 -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창의적이며 개성적으로 디자인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임
 - 인쇄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책, 잡지, 광고물, 포장, 포스터는 물론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의 디자인이 이에 해당됨
 - 실제 완성된 결과물이 입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단위는 평면적임

라. 환경디자인

- 환경디자인이란 인간이 만드는 생활환경의 디자인문제를 다루는 광범위한 분야의 디자인을 의미함
 -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창작활동이 곧 환경디자인이며, 주요영역으로는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지역사회 및 도시계획 등을 꼽을 수 있음

마. 기타 분야의 디자인

- 사인디자인 : 시각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의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시설물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음
- 디스플레이디자인 : 제품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의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제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열·전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II.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1. 국내외 여건의 변화

가. 국내환경의 변화

- 수입선다변화의 해제 진전에 따라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내수시장 진출이 예상되며, 이는 특히 우리나라 가전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가전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의 상실, 시장개방에 의한 경쟁력심화 등으로 양적성장에 있어 한계에 다다름
-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
 - 50~60년대는 기술본위의 경영전략이, 70년대는 마케팅중심의 경영전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보편화현상이 전개되면서 제품자체의 기능보다 제품의 사용환경, 사용행태가 중시되어 생활문화 창출을 위한 디자인 주도적 제품개발체제가 대두됨

나. 국제환경의 변화

- 정치·경제적 변화
 - 공산권의 붕괴, EU의 통합과 독일의 통일 등으로 유럽지역이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중요시됨
-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 소비자선호의 개성화·다양화 진전으로 각 기업은 제품의 내용적인 면에서 기능이상의 “사용가치”를 갖는 제품의 개발, 생활문화의 반영, 개성의 존중 등을 주제로 하는 “감성적”제품의 개발에 주력

2.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가. 국가경제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 국가경제 차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국가는 영국으로서 19세기부터 수출증대를 위한 디자인의 진흥 문제를 거론하였음
 - 1832년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은 의회에서 기술력에서 앞서는 영국의 섬유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외국제품, 특히 프랑스제품에 밀리는 것은 바로 디자인 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
 -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그 결과 영국 상무부는 런던을 비롯한 맨체스터등 전국의 산업중심지에 디자인 학교와 디자인박물관의 설립을 추진함
 - 국가경제에 미치는 디자인의 역할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됨
 -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임금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게 되고 이에따라 새로운 경쟁력 강화요소로 기술혁신과 함께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됨
 - 특히 디자인개발은 첨단기술개발에 비해 적은 투자비용(1/2수준), 짧은 회수기간(1/3수준)에 모든 제조업 분야에 걸쳐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P가 1만불을 넘어서면서 디자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디자인 관련산업의 매상과 신장율이 GNP의 성장율을 능가하게 됨
- ※ 일본이 일인당 GNP가 1만불을 넘어선 1982년을 기준으로 할 때 GNP의 연평균 성장율은 5.6%를 나타낸 반면, 디자인산업은 8.6%의 신장율을 나타냄(자료 :「1990년대를 위한 디자인정책」, 일본 통상산업성 무역국)

- 제품의 질이나 기술수준이 각 국가간, 기업간에 평준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쉽게 제품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
- 같은 성능의 제품일 경우 경공업제품은 디자인이 경쟁력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중공업제품도 30%정도를 차지함
- 기술, 인력, 재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

나. 기업경영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 제품차별화의 가장 빠른 수단
 -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기업간의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함
 - 기술개발투자에 실패했을 때 보다 디자인개발투자의 경우 그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
- 최근 기업의 시장점유전략에 있어 상품의 경쟁력 제고차원과 더불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디자인의 경우 기업 이미지제고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임
 - 이러한 기업 디자인의 전략적 관리문제와 관련지어 최근 기업이미지 동질화 프로그램(Corporate Identity Program : CIP)이라는 개념이 부각됨
- 기존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계층화가 심화되면서 틈새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됨
 - 틈새시장의 경우 각 소비계층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가 시장점유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경우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III. 국내 산업디자인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산업디자인의 현황

가. 산업디자인 기반

(1) 산업디자인 인력수급

〈인력수요〉

- 디자인 전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부족율 : 20~24%)
- 특히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분야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인력공급〉

- 디자인관련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 즉 전국 62개대학 산업디자인관련 79개학과와 118개 디자인관련 학원 등을 통해 연간 약 3만여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93년)
-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디자인전문직에 완전고용되고 있으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율이 떨어짐
- 교육기관의 디자인 전문인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기업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으로 해석가능함

(2) 교육기관

-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의 대부분(75%)이 미술대학에 속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배출에 한계가 있음
 - 공과대학 또는 조형대학에 소속된 산업디자인과 교육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편중된 디자인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국내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설치현황(93년) : 산업디자인과(32), 산업미술과(13), 시각디자인과(7), 응용미술과(6), 미술학과(5), 미술교육과(4), 응용미술교육과(1), 실내디자인과(3), 공업디자인과(3), 생활미술과(3), 장식미술과(1), 조형공학과(1), 광고디자인과(1), 정보디자인과(1)
- 유럽등 디자인선진국의 경우, 전통적인 산업디자인 고유분야를 확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로 연간 약 5,000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대학의 디자인학과 대부분(75%)을 공과계열에 두고 실기실습, 마케팅, 엔지니어링 부문, 컴퓨터그래픽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수행함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국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수는 1,048개 업체로 조사됨(96년말)
 - 전문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제품 디자인(52), 패키지디자인(27), CI/BI(37), 일러스트레이션(68), 출판물편집(77), 애니메이션(60), 영상 및 멀티미디어디자인(90), 컴퓨터그래픽시스템(30), 인테리어·디스플레이디자인(309), 서체시스템(7), 기타 디자인기획(291)까지 전문회사의 범주에 포함

- 전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중 제품디자인 전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52개업체에 불과함
 - 전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중 카탈로그, 팜플렛 등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타 디자인기획 분야가 27.8%, 시각·정보디자인 분야가 67.3%를 차지하고 있어 동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3,000여개의 산업디자인전문업체가 있으며, 이중 15.0%인 450여개 업체가 제품디자인 분야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중 현재 진홍원에 신고를 필한 업체는 74개('96년말 기준)이며, 연간 매출액도 평균 4~5억원 수준으로 영세한 형편임
 - 전문회사의 신고요건 : 전문디자이너 3명이상, 자본금 5천만원이상
 - 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자본금규모나 소속 디자이너 수에 있어 영세한 실정임

* 자본금에 있어 1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43개로 전체업체의 63.2%를 점유하고 있음

* 디자이너 수에 있어서도 5명미만인 업체수가 15개로 전체업체의 22%를 차지함
-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제품디자인 분야는 취약하고 시각·정보디자인 분야에 편중된 실정임
 - 매출액이나 자본금, 디자이너 수에 있어서도 열악한 형편임
- 또한 외국의 유수 디자인전문업체의 국내진출은 국내업계가 선진 산업디자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국내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집중적인 경쟁력확보 노력이 없다면 확대되어가는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 큽

(4) 산업디자인보호제도

- 디자인개발의 촉진차원에서,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디자인의 life cycle이 짧아 실효성이 있는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 현행 디자인보호 관련법 : 의장법, 저작권법, 대외무역법
- EU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방디자인에 대한 제재움직임 등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가 필요함

나. 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실태

(1) 국내 기업의 디자인전담부서 현황

- 중견제조업체의 30% 정도가 디자인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음(93년)
 - 음식료품, 섬유, 목재, 화학, 피혁, 고무제품, 운송기기, 전자·전기, 의료, 계측, 광학기기 등
- 기업의 디자인개발 투자액은 매출액의 0.42%에 불과함(KIDP, 93년)
- 디자인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제품 개발시 디자이너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타사제품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엔지니어들이 결정하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내 기업의 디자인개발 실태

- 수출상품 제조업체의 경우 경공업부문과 중소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디자인개발 투자가 미흡한 요인으로는 개발비용 과다(22.5%), 개발기반 취약(21.3%), 투자순위 열위(19.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출업계의 디자인개발 추진방법은 “상시전담추진”이 39.6%로 전담 부서가 없거나, 필요시마다 추진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됨
 - 구조별, 규모별로 보면 중화학, 대기업이 상시전담추진의 방법을 다수 활용하고 있으며, 경공업, 중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전담추진”的 방법의 비중이 높음

다. 국제경쟁력 수준

(1) 해외바이어의 한국상품 구매이유 (KIDP, 1992)

- 가격요인(32.5%) 때문에 주로 한국상품을 선택하며, 디자인이 좋아서 (13.1%)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조사됨
- 섬유류, 잡화류, 전자제품류는 가격의존도가 높고, 디자인면에 비중을 높게 두는 품목은 완구류, 잡화류, 피혁·모피류, 신발류, 운동·레저용품류 등 유행성이 높은 품목임

(2) 부문별 평가

- 형태/색상 : 기계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며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유행감각 : 신발류와 운동·레저용품류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피혁·모피류, 완구류, 생활용품류, 양식기류는 선진국 제품에 비해 유행감각면에서 격차가 크고, 특히 기계류, 생활용품류는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 독창성 : 신발류, 운동·레저용품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경쟁국 모두 선진국제품의 모방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피혁·모피류가 모방성이 심한 것으로 조사됨

- 모델의 다양성 : 신발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기계류, 전자제품류는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 포장디자인 : 신발류와 생활용품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선진국제품에 뒤지며, 특히 완구류, 식품류의 포장디자인은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 브랜드선호도 : 전 품목에서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기계류와 생활용품, 식품류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3)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악화요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

- 우리기업은 일반적으로 획일화된 제품의 계획생산체제에는 익숙하나 수출시장별 특성에 부응하여 제품제작기법을 변형시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음
 - 현지시장의 기후, 소비자 기호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개발의 차별화 노력이 부족함
 - 상당수의 우리제품이 기능면에 비해 색상과 패션등 디자인부문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4) 외국에서 본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한국=100

구 분	일 본	미 국	대 만	싱가폴	홍 콩
디자인 수준	257	235	143	128	121
기술적 진보성	213	245	98	71	39

* 한국의 디자인수준 및 기술적 진보성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임

* 자료 : TIME지, '89

(5) 디자인이 상품판매에 미치는 영향 및 현 수준

구 분	디자인 의존도(%)	현 수준(%)
승용차	70~80	50~60
가전제품	70~80	60~70
의류 (패션의류)	50~60 (60~70)	50~60 (60~70)
문구류	80~90	70~80

* 자료 : 디자인관련 제품생산업체 간부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통상산업부, 1996. 6

- 주) 1. 디자인 의존도 : 조사시점에서 소재, 기술, 영업능력, 디자인 등 상품의 매출신장 요인중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
- 2. 현수준 : 해당업종의 선진국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 (승용차 : 미국·일본·독일, 가전제품·문구류 : 일본, 의류 : 프랑스·이태리)

2. 문제점

가. 산업디자인 기반의 취약

- 우리산업의 디자인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디자인 선진국의 60~70년대 수준으로 우리산업의 발전수준에 미치지 못 한 대표적인 낙후 부문임
 - 디자인 인프라의 취약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실무디자이너 및 고급디자이너 부족함
 - 전문인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 상존함

- 디자인관련 교육기관의 경우, 소속단과대학의 기능 및 시설면에서 디자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형편임
 - 대졸 산업디자이너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재교육과정을 거쳐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관련분야와의 연계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색채·감성·인간공학등 디자인관련 비상업적 기초연구 등을 연구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음
 - 산업현장 적용 등 실용적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할 디자인 교육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요함
 - 디자인 정책관련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예) 통산부에서 '96.6, 대학, 기업, 관련단체등 56개 기관에 정책자료(디자인의 중요도, 수준, 문제점등) 요청결과, 9개(단체1, 학교3, 기업4, 보조기관1)기관에서만 응답함
- 디자인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유통체제가 미비함
- 산업디자인 관련 진흥, 연구, 교육, 정보화 등 디자인 기반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제가 미비하고, 기존 디자인진흥기관 건물(65년 건축)의 노후·협소로 전시관, 박물관 및 각종 회의장의 활용공간이 부족하여 디자인 지원관련 업무수요를 수용하기 곤란함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최근 그 수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대부분이 시각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함
 - 보유시설이나 전문디자이너의 수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으며, 지원도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산업디자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유명 산업디자인전문업체의 국내진출이 예상되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국내디자인시장이 크게 흔들릴 소지가 많음
- 국내 산업디자인 보호제도는 관련법령이 산업디자인의 특성 및 국제적인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디자인보호법령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때 자체디자인개발이 취약한 국내기업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나. 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능력 미흡

- 국내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능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쳐지고 있음
 - 선진국 특정모델 기본 Concept의 변형·모방에 치중
-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자체 디자인전담부서를 두지않고 모방이나 OEM방식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 디자인이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비재산업이나 경공업분야에서 자체디자인개발비중이 더욱 낮게 나타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전담부서는 물론 전문디자이너도 없어 자체디자인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이렇게 취약한 디자인개발능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디자인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실정임
 -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재인식이 필요함

다. 디자인관련상품의 국제경쟁력 취약

- 디자인관련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아직도 가격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내 임금의 상승등 노동의존형 비교우위요인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독창적 디자인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노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함
- 우리상품은 디자인요소중 독창성, 모델의 다양성, 브랜드선호도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의 선호를 창출하는 디자인이 아닌, “끌려가는 디자인” 수준임

IV. 외국의 산업디자인 정책

1. 외국의 산업디자인 진흥정책 종합

가. 디자인진흥정책 기본방향

-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산업디자인을 산업 및 제품경쟁력 강화의 핵심도구로 인식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을 국가적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각국 사정에 맞는 장·단기적인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실시하고 있음
- 디자인 정책의 주체는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일수록 정부가 디자인 부분에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투자의 위험부담을 국가가 대신 하였음

나. 디자인진흥정책의 특징

- 디자인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총체적·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며 다른 정책이나 타분야와의 긴밀한 상호 협조하에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발전의 전략적 도구화 :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 유기적인 진흥정책 전략수립·집행 :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동으로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함
- 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 : 각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디자인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디자인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 산업디자인 조기교육제도의 강화와 산업디자인 관련 연구소 등의 설립을 추진함
- 통합적 관리기능 강화 : 산업디자인의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종합적인 진흥기관의 설립을 추진함

2. 주요국가의 산업디자인 정책사례

가. 영국 : 제2의 산업혁명으로서의 산업디자인정책 추진

- 영국은 디자인 교육쇄신과 진흥이 일찌기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150여 년 이상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국가임
- 근래 쇠퇴했던 국가 산업 및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이 디자인 진흥정책을 수립함
- 진흥정책관련 세부시행 사항
 - 런던에 『장식미술 박물관』 및 『국립디자인 학교』 설립 : 1836년 정부의 Edwart위원회에서 디자인진흥의 필요성 역설 이후 설립함
 - 대처 수상의 디자인진흥회의 주재 : 1982년 대처 수상이 산업, 교육 및 디자인계의 리더들을 초빙하여 영국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결정함
 - 진흥과제로 「기업인의 디자인인식의 부족」과 「대학의 미술 지향적 교육」의 문제제기
 - 진흥 정책의 방향으로 「조기교육, 대학교육 강화」, 「기업 경영자의 기능 재인식」에 중점을 둠
 - 조기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디자인을 교육과정에 삽입함

- 대학에서 과거의 미술지향교육을 지양하고 엔지니어링과 마케팅이 보강된 실질적 교육을 강화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 디자인지원(Support for Design, SFD)제도 시행
- 종합적인 컨설턴트지원책인 기업주도 프로그램 (Enterprise-Initiative, EI)의 시행
- 정부지원으로 세계 최초의 디자인 박물관 건립 등

나. 일본 : 정부, 공공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연계의 진흥정책

- 통산성 통상국에 디자인과 설치(1958년)
 - 이를 계기로 일본은 독자적인 디자인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진흥책이 「정부」, 「공공단체」, 「민간 및 기업단체」의 조화속에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됨
- 진흥정책관련 세부시행 사항
 - 정부기관인 공업기술원, 산업공예시험소 등에서 디자인의 기초연구 실시
 - 각지에 있는 지방 공공시험 연구소를 통하여 직접 중소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됨(1950년대부터 시작)
 - 정부기관에서 Good Design 선정제도의 실시
 - 기업의 디자인 관심증대와 디자인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1957년 특허청 의장과를 만든 것을 계승, 현재는 통산성 (디자인실)에서 실시
 - 공익단체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우수디자인 선정 및 유학생 선발 지원
 - 1959년 이후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일본 디자인하우스(JDH)」를 통해 우수디자인을 선정, 바이어의 상품선정을 서비스하고 지속적으로 유학생을 선발

- 민간 및 기업단체인 일본도자기의장센터, 일본섬유의장센터, 일본기계디자인센터, 일본수출잡화센터 등의 단체 디자인진흥 활동 : 공모전, 강습회, 자료수집 정비, 디자인상담 업무 등을 진행하고 단체의 성격에 맞는 특색있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디자인서비스 제공
 - 총합 디자인 진흥기관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설립 : 1960년 「세계디자인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총합적인 진흥 중심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에 의해 1969년 통상산업성의 지도하에 설립
 - 1989년 「디자인의 해」제정, 나고야에서 세계 최초의 「디자인 박람회」 개최, 매년 10월 1일을 「디자인의 날」로 제정
- 21세기 일본 디자인 진흥정책
- 디자인의 사회활동 : 토탈디자인의 개념으로 디자인도시 육성
 - 디자인창조를 위한 사회기반 정비 : 창조성 및 주체성 함양을 위한 시스템 정비, 디자인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망 구축, 디자인 보조 및 지원, 디자인보호, 통합적 진흥체제 확립, 디자인센터활동 지원
 - 디자인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

다. 대만 : 디자인세계화(Design Globalization) 정책

- 저임금정책을 토대로 한 OEM방식에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에 따른 돌파구를 「디자인 세계화작업(Design Globalization)」으로 집약
- 고부가가치를 위한 「독창적 디자인개발방식(Original Design Manufacture, ODM)」으로의 전환에 국가와 산업의 모든 노력 투입
 - 이런 최종의 목표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정부차원의 진흥을 위한 디자인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 진홍정책관련 세부시행 사항

- 5개년 디자인진홍계획에 1,360억원을 정부가 지원
 - 디자인의 세계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1980년대 후반부터 3대 디자인 진홍 5개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집중적이고 총체적인 행정적 지원도 병행
- 3대 디자인진홍 5개년 프로젝트
 - 품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1988~1993)
 - 산업디자인 진홍을 위한 5개년 계획(1989~1994)
 - 대만 제품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1989~1994)
- 기타 산업디자인 진홍내용
 - 대일 무역역조극복을 위한 「미니유럽 프로그램(Mini-Europe Program)」
 - 1989년 이후 「대만 국제디자인 전시회(Taipei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 TIDEX)」의 개최
 - 1990년 5월 디자인의 달 제정
 - 1995년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총회」 개최
 - 대북 국제무역센터 전시장에 「디자인관」 설치
 - 디자인종합진홍기관으로서의 「디자인센터 및 신건물 추진」등

라. 싱가폴 : 정부주도형의 강력한 디자인정책

- 타 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디자인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싱가폴 정부는 1985년에 무역개발위원회(Trade Development Board) 산하에 싱가폴 디자인센터(Design Center Singapore)를 설치하여 정부 주도형의 강력한 디자인 진홍 프로그램을 마련

○ 진홍정책관련 세부시행 사항

- 싱가폴 전 수상인 이광요의 「디자인지향국가 선언」: 1988년 제1회 국제 디자인포럼 개회식에서 디자인지향국가 선언
- 중학교에 디자인 커리큘럼 삽입: 무역개발위원회가 문교부와의 협의로 중학교 커리큘럼에 삽입(1984년)
- 「디자인 벤처 프로그램(Design Venture Program)」시행: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공동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1984년)
 - 1984년 125개의 프로젝트를 완료(예산: 16억)
- 「싱가폴 디자인 협의회(Singapore Design Council)」 발족: 기업가, 교육 전문가,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무역협회 관료가 주축이 된 싱가폴 디자인협의회가 싱가폴 무역개발위원회(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에 의해 설립(1991년)
- 「디자인센터」와 「디자인연구소」 설립: 싱가폴 디자인 협의회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 증진, 기업에 디자인 지원, 디자인지향국가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디자인센터」와 디자인 교육·훈련 및 디자인연구를 담당하는 「디자인 연구소」등 2개의 실행기관을 갖고 있으며 동 협의회를 포함한 3개의 조직이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 전개

마. 미국 :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지원

- 미국의 산업디자인은 전후 일본, 유럽에 비해 비교우위를 상실했으나 1970년대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게 됨
 -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홍은 다소 미비
- 미국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지원은 디자인 지원차원이 아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 연방정부는 종합예산법을 통해 디자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20%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음
- 미 상무부 산하 NIST의 기술개발실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개발에 대해 금융알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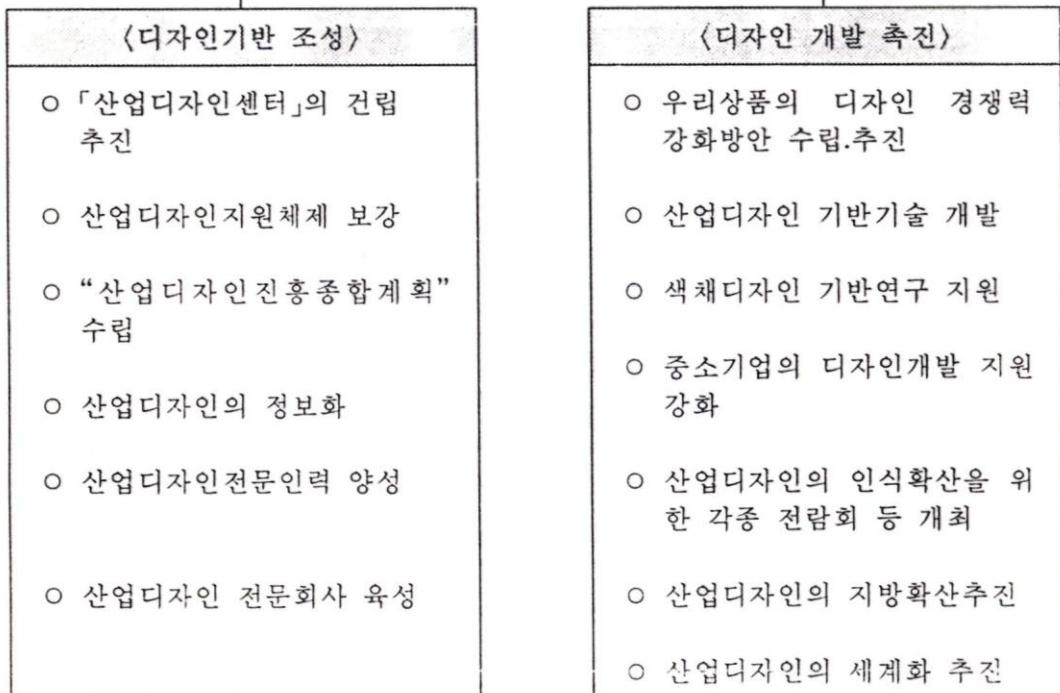
바. 스웨덴 : 문화전반에 걸친 디자인의 기능을 함께 강조

- 디자인의 대 사회적인 역할을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뿐만 아니라 문화전반에 걸친 기능을 함께 강조
- 진흥정책관련 세부시행 사항
 - 상공부와 문화부의 공동지원 : 디자인정책의 총괄담당 기관인 SVENSK FORM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같이 디자인진흥기관인 상공부와 관련을 맺으면서도 한편 문화부로부터 지원을 받음
 - 장기 디자인 진흥목표
 - 경쟁의 전략적 도구로서 디자인이 갖는 가능성을 기업에 확산
 - 기업에 있어서 디자인 관련업무의 자체적 수행능력 증대
 - 단기 디자인 진흥목표
 - 지역발전기금 및 제조업체의 후원으로 각 지역마다 지부를 설치하여 디자인진흥기관으로서의 효과적인 기능확대 : 지역문화 및 자문프로그램 시행
 - 기술, 경제관련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산업디자인 과목을 추가하여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각종디자인 교육내용을 심의, 계획하기 위한 「디자인교육위원회」 설치
 - 디자인 진흥정책의 입안 및 전략기획에 디자이너, 제조업체, 소비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공동참여

V.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정책

1. 기본정책방향

- 디자인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2000년대 초 선진국 진입의 원동력 제공
 - WTO 체제의 본궤도 진입으로 세계가 하나의 열린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그 대응책으로 기술경쟁력과 함께 21세기 산업경쟁력의 양 축인 문화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디자인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한 디자인분야 장기정책방향의 정립 및 체계적 추진



2. 주요업무 추진현황

가. 디자인인프라의 확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운용

(가) 법의 연혁

○ 제 정 : 1977. 12. 31(디자인·포장진흥법)

○ 개 정

1991. 1. 14(전문개정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 연구개발사업실시,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전문인력 양성, 전문회사지원
조항 등 신설, 「한국디자인센터」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변경

1993. 3. 6(부분개정)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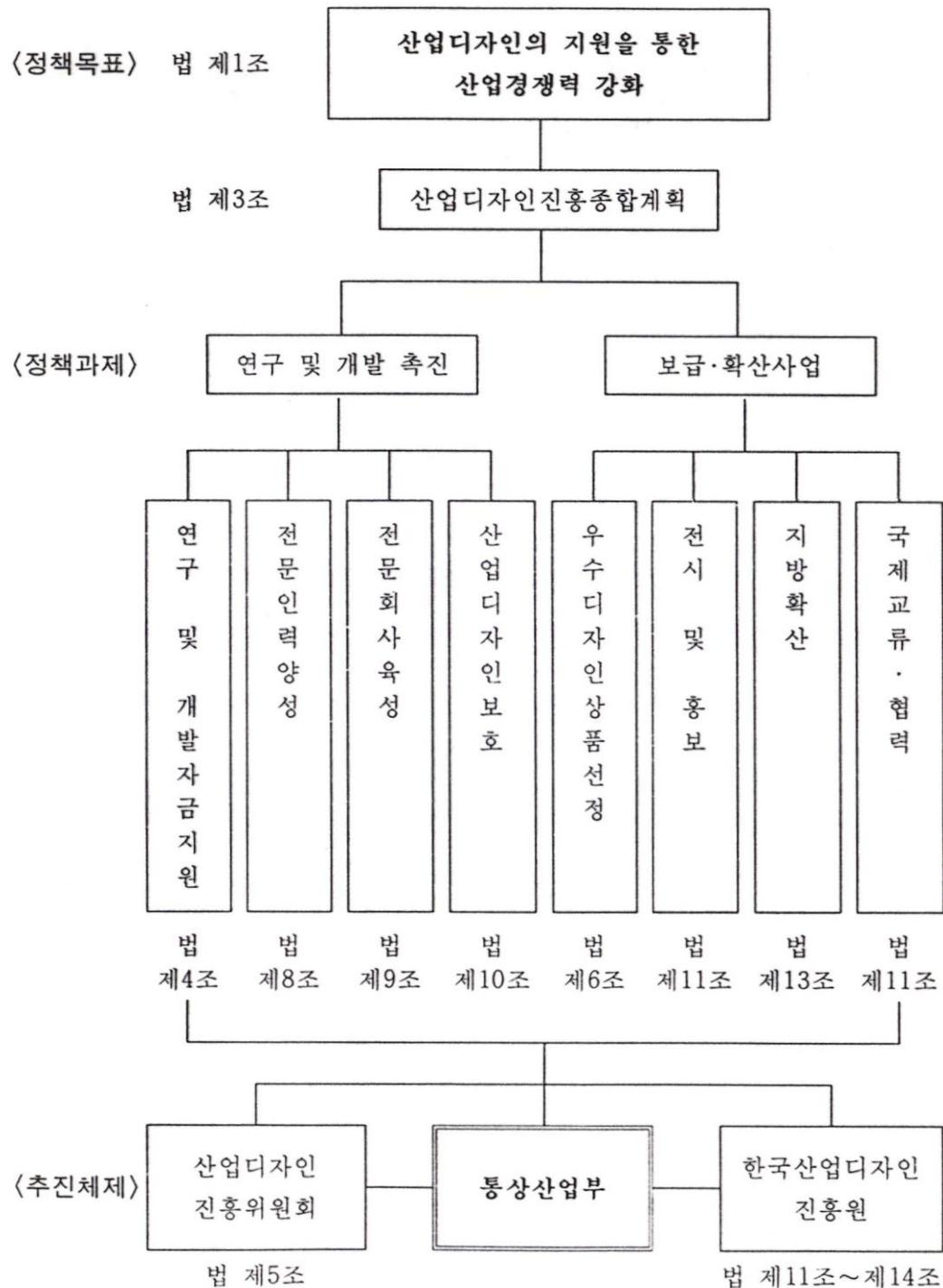
1994. 12. 22(부분개정)

–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폐지

1996. 12. 30(전문개정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디자인 진흥사업 지원강화, 산업디자인보호 규정신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 포장기술을 동 법의
범위에서 제외

(나) 주요골격



(2)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목 적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산업디자인정책을 추진

○ 추진일정

- 기존의 “산업디자인발전5개년계획”을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기본방향

- 디자인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2000년대 초 선진국 진입의 원동력 제공
 - WTO 체제의 본궤도 진입으로 세계가 하나의 열린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그 대응책으로 기술경쟁력과 함께 21세기 산업경쟁력의 양 축인 문화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디자인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디자인기반 조성〉

- 「산업디자인센터」의 건립 추진
- 산업디자인지원체계 보강
- 산업디자인전문인력 양성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 산업디자인의 정보화

〈디자인 개발 촉진〉

- 우리상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추진
- 산업디자인 기반기술 개발
- 색채디자인 기반연구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 강화
- 산업디자인의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전람회 등 개최
- 산업디자인의 세계화·지방화 추진

(3) 「산업디자인센터」의 건립추진

사업개요

산업디자인센터는 우리산업의 급증하는 디자인수요에 부응, 디자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후·협소한 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부지를 처분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21세기 디자인 인프라의 중심기능을 수행케 될 것임 (사업기간 : 97-2000)

- 동 센터에는 교육, 연구, 정보화, 전시 및 회의기능 등을 수행하는 비상업성 공공시설 위주로 수용할 계획임

- 사업기간 : 97~2000 (4년)
- 사업규모 : 대지 6,445평, 연면적 지상 16,000평 규모(지상 8층, 지하 4층, 2개동)
- 총사업비 : 1,825억 원
- 국고보조 1,424억 원, 자체조달 177억 원, 민자조달 224억 원
- 위치 : 도시계획 및 교통혼잡요인 등을 감안, 서울근교에 신축
- 수용시설
 - 산업디자인 및 관련분야에 대한 진흥·연구·정보화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수용
 - 전시관, 정보자료관, 이벤트홀, 디자인박물관, 상설전시·판매장, 국제회의장 등 관련시설 설치

필요성

- 디자인인프라의 확충

– 디자인의 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디자인 선진국의 60~70년대 수준으로 우리 산업의 발전수준에 미치지 못한 대표적인 낙후부문

* 기업경쟁의 변화단계 : 가격/생산성 → 성능/품질 → 디자인/품격

- 디자인 관련산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디자인 인프라의 부족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
- 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건물(65년 건축)이 노후·협소하고 활용공간이 부족하여 디자인 지원관련 업무수요 수용불가

○ 유기적인 산업디자인지원체제의 구축

- 현재 산업디자인 관련 공공기관·단체·연구소·전문회사 등의 분산으로 종합적인 산업디자인 진흥활동 수행에 비효율성 초래

○ 디자인이 선진국진입에 핵심요소가 되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

- 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감에 따라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이 “독창적 디자인에 의한 생산(ODM :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에 역점을 두는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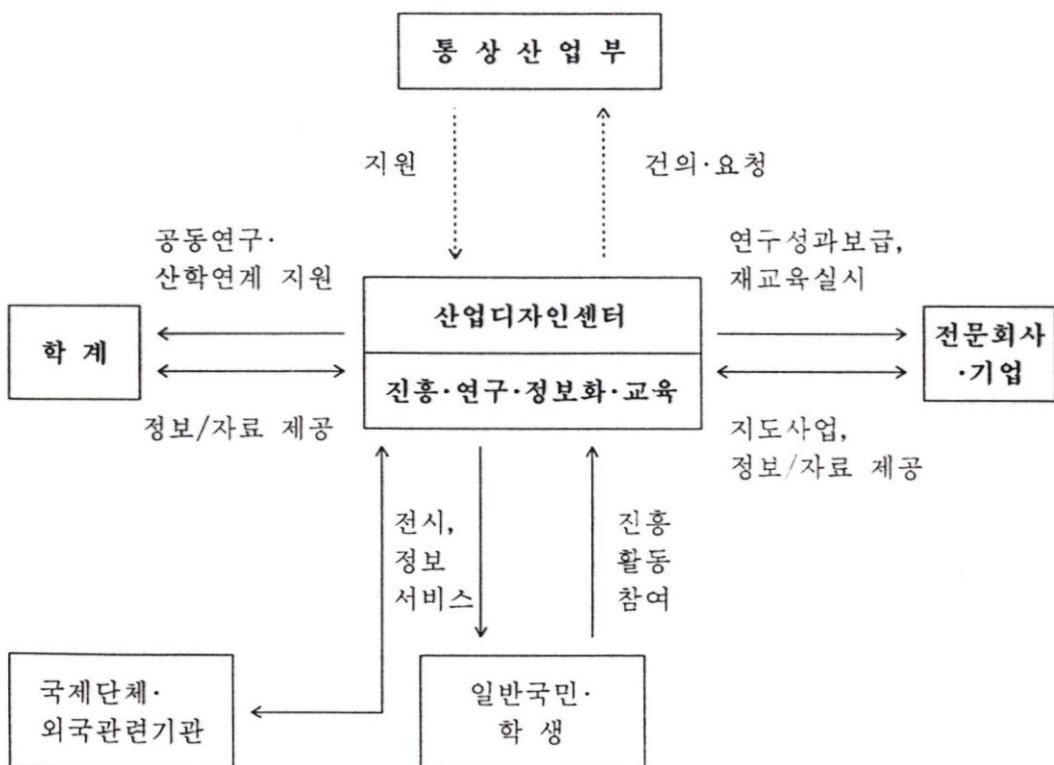
주요기능

○ 향후 21세기 정보화 및 정서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디자인발전 중심기반을 구축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하이테크·하이터치형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첨단기술과 조화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의 개발을 적극 도모

- 산업디자인의 기초연구에서부터 교육, 정보화, 진흥·개발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기업 및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산업디자인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부대시설로 국제회의장, 전시장, 정보자료관, 디자인박물관, 우수 디자인 상품상설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민간디자인단체 수용 공간도 확보
- 산업디자인센터의 주요기능별 합리적인 업무범위 설정과 민간분야와의 역할분담 도모

〈산업디자인센터의 역할〉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지원

현 황

- 현재 국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수자는 대략 900여개 파악되고 있음
 - 이중 약 83%에 해당하는 업체가 시각·정보디자인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품개발에 핵심을 이루는 제품디자인분야는 5.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 일본의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총 3,00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8%에 해당하는 240개 업체가 제품디자인분야임
- 이러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공인을 받은 업체는 74개에 불과하며, 이들 업체의 연매출액도 공인업체가 평균 4~5억원 수준이고, 비공인업체가 평균 1~2억원 수준으로 영세한 형편임
 - 또한 이들 업체들은 전문디자이너수나 장비면에서 선진국 전문회사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 이와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으로 산업디자인시장이 전면개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할 예정인 바, 열악한 국내 전문회사들의 경쟁대상이 되고 있음

지원방향

- 산업디자인 지도사업에 전문회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업계와 전문회사간의 연계를 강화
- 각종 장비구입 및 상품화를 위해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자금 등의 정책 자금의 지원을 확대

- 인력 및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강화
-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전문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각종 법률적, 행정적 자문 및 각종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임

(5)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 현재 전국 62개대학 산업디자인관련 79개학과와 118개 디자인관련 학원 등을 통해 국내수요보다 많은 연간 약 3만여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기업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으로 해석가능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엘리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대학들과는 달리 실습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96. 9. 3)
- 또한 기존 대학에서 내실있고 현장감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장비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학교수·학생참여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겠음
 - '96년에 72개 품목 추진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기존 산업디자이너의 자질향상에 노력
 - 교육인원 : '95년 1,533명, '96년 2,131명
- GD 상품선정등에서 수상상품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등에 대해 해외연수 지원
 - 해외연수지원 : '95년 33명, '96년 60명

(6) 산업디자인보호제도의 개선·보완

산업디자인의 특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

- 보호객체의 다양성
 - 산업디자인은 여타 산업체재산권과 달리 대상 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
- 제품 수명주기(Life Cycle)의 다양성
 - 특히 패션디자인·텍스타일디자인 및 시각디자인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므로 보호 기간의 신축성 필요
- 일정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창작활동
 - 대다수의 산업디자인 활동은 일정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므로 장기간의 독점적 권리인정은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저해
- 모방·도용이 용이
 - 권리의 조기설정 및 효과적인 법적구제 조치의 필요
- WTO체제의 출범으로 관세장벽이 사라진 대신 EU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의 수단이 되고 있음
 - EU의 경우 통합특허청이 발족되었고 금년부터 통일의장법, 국제표준 상표법등 관련법규가 발효되는 등 『디자인라운드』가 전개될 가능성이 점증
- 반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상당수가 OEM방식 또는 모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각국이 자국의 디자인보호를 강화할 경우 우리 수출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

문제점

- 관련 법령이 보호대상, 보호기간, 보호요건, 등록출원방식 등에 대해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 심미성보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보호의 대상으로 심미성을 반드시 요구하는 현행 법제로는 전반적인 보호가 어렵고
 - 경직적인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어 디자인제품의 다양한 수명주기(life cycle)에 따른 보호기간의 신축성이 부족하며
 - 동일한 테마를 중심으로 다수의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의 성격상 한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유사의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95년 개정된 의장법은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의장권자의 권리를 조기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 출원공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의장등록출원인이 그 의장을 모방·도용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때부터라야 나타나고
 -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의장권의 설정등록은 오랜기간이 소요
- 현행 법체계상 산업디자인이 의장법과 저작권법으로 중복 보호
 -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장법과 범위설정이 불분명하고
 - 양 법에서 규정한 보호절차, 보호요건, 보호기간, 권리의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디자인분야 종사자들의 혼란과 부적정한 보호의 결과를 초래

개선방향

- 디자인보호의 기본법인 의장법과 저작권법등 기타 관계 법령의 정비 추진

-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보호기간, 보호요건, 등록출원 및 심사 방식 등에 대해 현행 의장법의 조정 검토 필요
 - 보호대상 : 반드시 심미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표현에서 기능적, 기술적인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보호기간 : 현행보다 보호기간을 줄이고 보다 장기간의 보호를 원하는 자는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요건 : 현행 법상 『창작의 비용이성』 요건을 선진국과 같이 『특이성 (distinctiveness)』 요건으로 대체하여 보호여부를 판단
 - 등록출원방식 : 동일분류에 속하는 다수의 의장을 한번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장 출원제도의 도입
 - 등록심사방식 :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의장검색은 사실상 불가능(막대한 경비 및 시간 소요)하므로 실제 심사없이 방식심사만으로 등록이 되도록 함
- 또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응용미술작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는 등 적용대상을 의장법과 구분하여 설정 필요
- 아울러 보호가 필요하나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등 관련 법령의 보완 필요

(7) 우리상품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추진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고도 정보화시대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다원화되고 보다 세련된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늘어가고,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 산업 역시 단순히 기술과 품질중심의 시대에서 디자인, 패션, 색채, 이미지 등 감성적, 개성적 요인이 판매전략에서 더욱 중시되는 문화중심 산업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 즉, 소비의 고급화, 개성화 시대인 지금은 하이테크(High-Tech)와 하이아트(High-Art)가 결합된 상품만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 것임.

필요성

-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는 수출경쟁력의 질적전환이 긴요
 - 첨단수준의 기술로, 보다 편리한 상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 감각의 문화를 담은 우리상품의 개발 필요
 - 지난해 연간수출 1,000억불 돌파를 계기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양위주의 수출에서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질위주의 수출로 전환
-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신상품개발 및 판매에 디자인요소의 적극활용 불가피
 - 기술수준, 시장경쟁의 평준화로 가격 또는 기능에 의한 차별화 전략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으므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구매의욕을 고취
 - 대중이 따라올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Most-Advanced, Yet Acceptable) 개념의 상품을 창출
- 따라서 수출주력 품목에 대한 우리상품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 및 각종 지원대책이 필요함

(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디자인경쟁력 현황

- 그동안 국내업체들의 기술자립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독창적 디자인에 바탕을 둔 우리 상품의 개발은 아직 미흡
 - 업계의 관련분야 투자미흡, 전문인력등 개발기반의 취약등으로 디자인 수준이 선진국의 50~60%, 경쟁국의 80~90%수준
 - 우리 수출상품의 자체 디자인개발 비율은 41%내외

〈우리나라의 디자인 개발형태〉

구 분	자체개발	외부개발·도입	바이어 의존	모 방
형 태 (%)	41.0	12.0	36.0	11.0

* 자료 : 무역협회, 수출산업실태조사 보고('95)

- 가전제품, 섬유제품, 신발등은 자기상표와 독자적인 마케팅 기반없이 OEM방식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제품의 Life Cycle은 급속히 짧아지고 있는 반면, 브랜드이미지 및 유통경로에 의한 시장지배는 반영구적임을 감안하여 외국 유수기업들은 OEM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우리 수출상품의 자기상표 비중〉

구 분	가전제품	섬유제품	생활용품(신발)	전상품 평균
자기상표 비중 (%)	28.6	11.6	12.2 (2.0)	51.7

문제점

- 독창적 디자인 및 자기상표의 개발미흡은 우리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결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 넥타이, 블라우스 등 패션상품의 경우 제품의 디자인 및 상표에 따라 10배이상까지 가격차가 발생 (대일수출 평균가격에서 이태리산이 한국산보다 3~4배 높음)
- EU의 산업디자인청 발족 및 국제표준상표법 발효 등으로 소위 디자인라운드 파고가 예고되어 모방디자인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은 중대한 장애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
 - 한국산은 중저가품 또는 모방상품이라는 고정 인식을 깰 수 있도록 기업 및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이미지관리 노력 시급
-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국상품의 범람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함께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에 의한 문화의 종속화 위험

(다) 디자인경쟁력 강화방안수립 추진계획

최종목표

- 상품개발 및 판매에 디자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경쟁력 제고

중점 추진대상분야의 선정

- 디자인 요소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산업분야를 중점추진 대상분야로 선정

- 가전 및 정보기기산업 : TV, 오디오, 냉장고, PC, 휴대폰 등
- 자동차산업 : 일반승용차, 레저용 차량, 스포츠카 등
- 조명기기산업 : 실내조명등, 스텐드, 특수조명 등
- 섬유산업 : 패션의류, 텍스타일디자인 등
- 생활용품산업 : 가구, 악기, 완구, 가방, 도자기 등
- 신발산업 : 구두, 운동화, 실내화 등

추진방법

〈사업주관기관 선정〉

- 우리부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정책연구기관 선정

〈추진협의회구성·운영〉

- 산·학·연 전문가 및 우리부 담당관 합동으로 디자인경쟁력강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5명 내외(학계, 디자인단체, 업계 및 정부관계자 등)
 - 주요업무 : 해당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실태분석·평가(기술경쟁력, 주요국과의 비교)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운영방법 : 디자인 경쟁력강화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Task Force로 운영한 후 정보 교류, 공동사업추진, 정책협의 등을 위한 상설 협의회로 전환

소요예산의 확보

- 우리부 성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금 지원

(라) 추진 계획

- 사업주관기관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97. 3월
- 디자인 경쟁력 강화 추진협의회 구성 : '97. 4월
- 디자인 경쟁력강화 추진협의회 운영 : '97. 4 ~ '97. 10
 - 추진협의회 회의개최를 통해 디자인전문가 및 우리부 담당관이 공동으로 산업별 디자인경쟁력 실태분석·평가 및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우리상품 디자인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수립 : '97. 12월

나. 디자인개발 지원강화

(1)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의 실시

사업목적

-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산업디자인·포장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사업(진단→개발→홍보)을 실시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산업디자인 분야 : 수요자 지향형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 포장 분야 : 포장표준화에 대한 지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물류개선에 기여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포장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개발지원을 함으로써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구
- 물류표준화의 기틀 마련을 위한 포장 표준화사업의 중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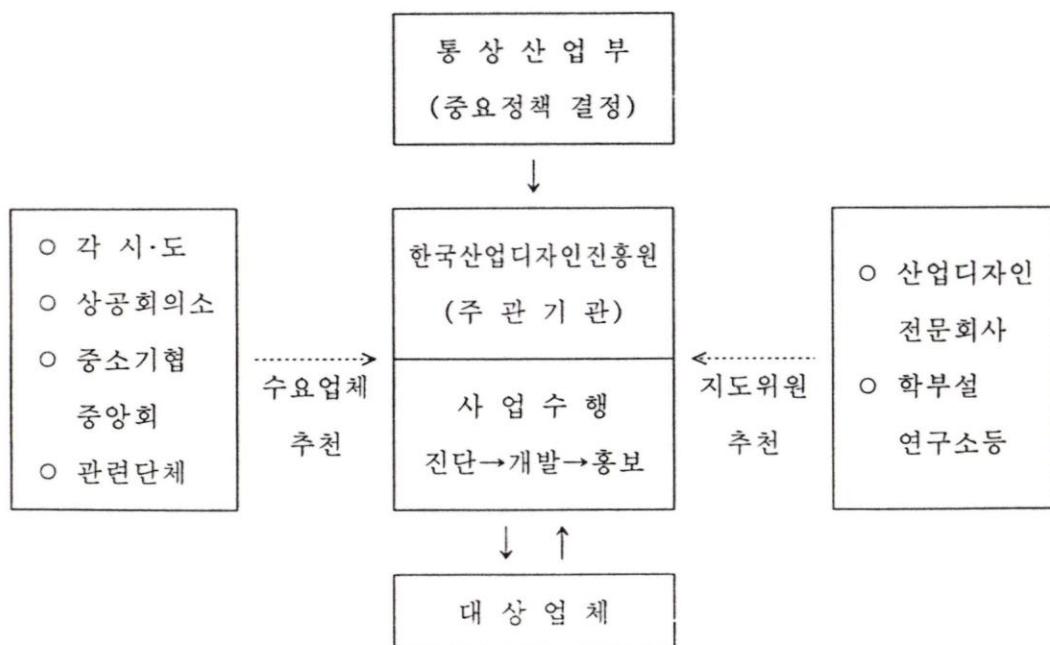
- 각종 전시회를 통해 지도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 강화
- 지도사업 결과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추진계획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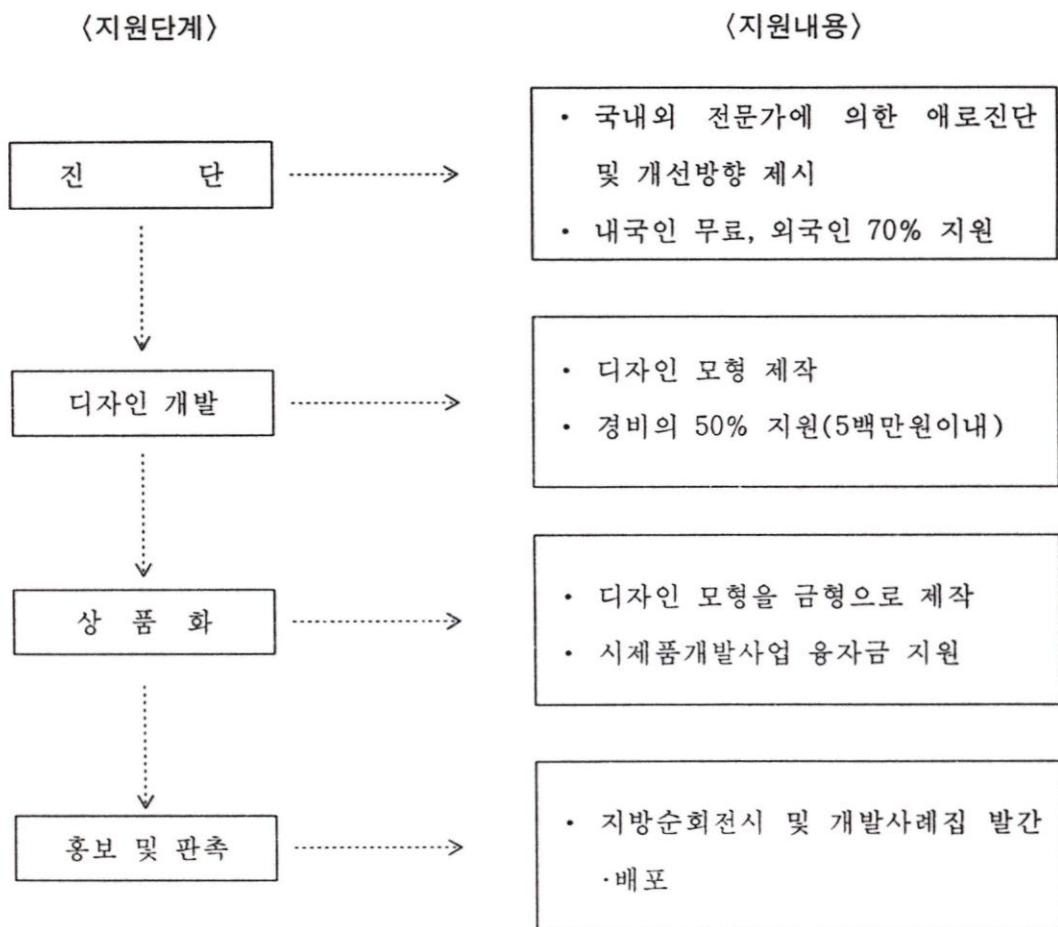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기술의 개선 또는 개발로 상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공산품·농수산물 및 관광토산품
- 97 계획 : 3,310여개 업체
 - 중소기업, 농어민단체, 유통업체, 대기업(외국인 전문가에 의한 진단 및 개발에 통하여 지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포장표준화 및 산·학 연계사업 프로젝트

○ 추진체계



○ 지원방식

– 디자인 애로의 해결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체제 구축(One Stop Service 체제)



○ 세부목표

구 분	내국인에 의한 지원	외국인에 의한 지원
진 단	○ 2,500여개 업체 대상	○ 10여개 업체대상
개 발	○ 700여개 업체 대상 (산·학연계 70개품목 포함)	○ 100여개 업체 대상

○ 예산

구 분	'96예산	'97예산	비 고
○ 지도사업(공기반자금)	67억원	113억원	○ 출연금(일반회계)
○ 시제품개발사업자금	200억원	160억원	○ 응자금(재특)
합 계	267억원	273억원	

○ 추진기간

- '97. 3~'98. 2. : 산업디자인·포장기술 지도사업 시행

〈산·학 연계 프로젝트〉

○ 사업목적

-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화
- 지역연고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지방화 촉진
- 내 용 : 산업계와 학계의 연계에 의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참여대상 : 기업체,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 협약체결 : 참여기업·참여대학·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

○ 참여형태

- 진흥원이 참여기업과 참여대학을 연계
- 참여기업은 참여대학에 산업디자인개발 프로젝트를 위탁
- 참여대학은 수탁한 프로젝트를 지도교수 및 산업디자인 전공학생이 공동수행하고, 개발결과물을 제작한 후 진흥원에 제출

- 개발결과물은 제품디자인의 및 환경디자인 경우 Mock-up, 포장디자인 및 시각디자인은 인쇄원고·교정지로 함
 - 진홍원은 제출된 결과물을 지도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에 인계
- 비용
- 참여대학에 프로젝트당 개발지원금을 제품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의 경우 5백만원, 포장디자인 및 시각디자인의 경우 3백만원을 지원하되 추가부담은 참여기업이 부담
 - 참여기업이 개발결과물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금형 또는 인쇄물 시제품 제작비는 일정한도내에서 시제품개발 사업용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해외연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전문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선진 산업디자인·포장 기법 습득
- 연수처 : 유럽·미국·일본 및 호주등의 유명 산업디자인아카데미, 전문회사 등
- 연수기간 및 인원 : 4개월 이내, 80여명
- 연수대상자 선발기준
- :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영어 또는 해당대상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1948.1.1일 이후 출생한 자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기관장상 이상을 수상한 자
 - 우수산업디자인(GD)선정제에서 「우수산업디자이너상」을 수상한 자
 - 업체·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에 종사하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대학원 재학생 또는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2) 산업디자인 기반기술개발

○ 지원 필요성

-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기반기술의 개발은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 업계의 독창적 디자인 개발촉진과 수준향상을 위해 디자인기반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함

○ 지원 대상분야

- 조형, 감성공학, 인간공학, 색채 등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디자인 관련 기초부문

○ 지원방안

- 산업디자인 기술개발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과제 발굴
-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으로 디자인 부문 지원
- 우리부 연구·기획과제 선정시 지원

○ 추진현황

- '96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2개 과제에 5개기관 지원(6억 원)
 - 인간 감성지향의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감성디자인 기반기술」
 - 제품의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제품 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향후 추진계획

- '97년도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자금 지원
 - 지원분야 : 산업디자인관련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
 - 지원대상 : 대학, 디자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상 연구 및 진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지원금액 : 1개 기관당 300백만원 한도

(3) 산업색채표준화 추진

사업목적

- 국내 전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중요한 매개체인 각 분야의 색채에 대한 기준을 통일, 표준화하여 색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필요성

- 제품 생산에 정확한 유행컬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색상에 대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나, 이제까지 국내에는 정확한 색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어 옴
- 따라서 제품생산업체가 유행감각에 맞는 색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 산업에서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색채 표준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
- 과학적 색채관리
 - 색채는 단기간내 최소비용에 의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분야이나 색채표준화 없이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색채관리 불가능

〈색채와 디자인과의 비교〉

구 분	색 채	디 자 인	비 고
표 준 화	가능	불가능	개발된 색상은
계 량 화	가능	불가능	전 산업분야에
과학적관리	가능 (감각 + 배색원리)	불가능 (감각에 의존)	공동활용

- 생산원가 절감

- 표준화된 색채언어로 색채를 정확히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색상분쟁 해소, Claim방지, 시간 절약등 직접 생산원가 이외의 비용 발생요소 최소화

- 산업색채의 인프라화

- 색채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산업인프라화를 위해 도량형의 단위를 미터법으로 하듯 색채에 대한 표준화된 언어의 정착이 필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6 ~ '98 (3년간)

- 사업수행주체 : (재)한국색채연구소

- '97 정부지원 : 8억원

- 플라스틱 표준화 : 5억원 ('96년 3억원 기지원)

- 섬유표준색도감 가공·보급 : 3억원

주요사업내용

- 플라스틱색채 표준화

- 색상수 : 400색

- 재질 : ABS 수지

- 보급수량 : 3,000set

- 사업기간 : 1996년 ~ 1998년 (매년 300~400색 규모로 1,000색까지)

- 소요예산 : ('96) 3억원, ('97) 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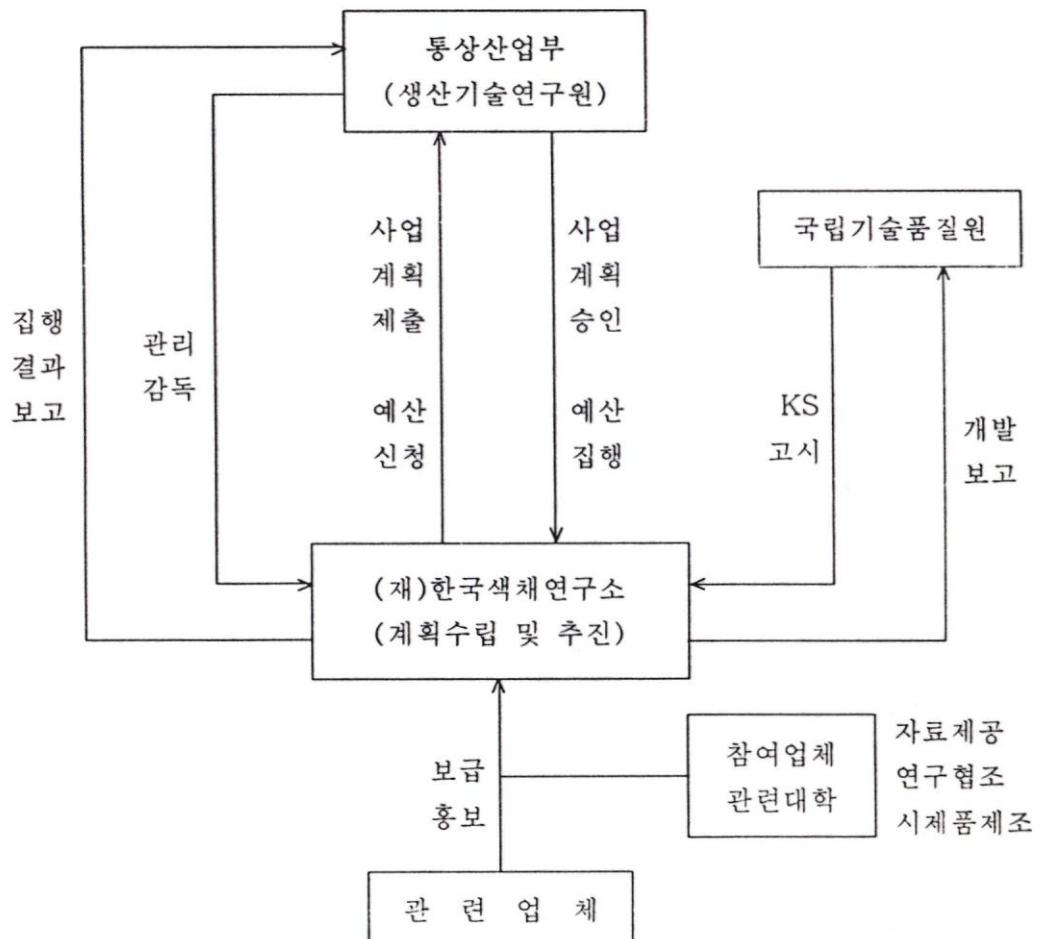
○ 한국섬유표준실용색도감 보급

- 색상수 : 2,135색의 KS섬유표준색 중 1,200개의 실용색
- 재질 : Polyester
- 보급수량 : 3,000set
- 사업기간 : 1997년
- 소요예산 : 3억원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지원)수행주체 : 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

○ 사업 집행절차



'97년도 예산확보 내역

- 국가재정에 의한 지원의 필요성
 - 국가기준으로서의 색채표준화
 - 산업색채 표준화는 도량형의 단위로서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산업색채 전반에 걸쳐 국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임
 - 기초과학으로서의 색채연구의 공익성
 - 대다수의 기초학문이 수익성 보다는 국가기간산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산업색채 표준화 역시, 색채디자인의 응용면 보다는 색채 전달 언어의 기준으로서의 공공재적인 측면이 강하여 수익성면에서 민간의 자본참여가 어려운 여건임
 - 산업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색채연구
 - 산업경쟁력이 가격, 기술보다는 색채디자인등 감성에 의해 좌우되는 미래산업사회에서는 색채연구가 가장 강력한 S/W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산업색채표준화는 색채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단계임
 - 정보화와 색채표준화
 - 정보화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색채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색채표준화 없이는 정보화 불가능
- ※ 일본의 경우 1927년 일본 색채연구소(문부성 산하)를 설립하고 색채 표준화 시행 (1977년)
- 지원 중단시 문제점
 - 선진국의 색채산업 예속화
 - 현재 국내 색채디자인 분야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산업의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뒤져있는 실정으로, Design Round가 강화되면 선진국의 색채산업 예속화가 더욱 심각해 질 전망
- ※ '95기준 색채산업(제품) 수입액 : 약 100억원

○ 색채표준화 사업 정부지원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별	'96예산	'97 예산		
		당 초	추가요청	최 종
계	300	300	500	800
〈플라스틱색채표준화〉	300	300	200	500
· 장비구입비		70	65	135
· 원·부자재비		100	50	150
· 조사분석비		80	50	130
· 가공 포장비		50	35	85
〈섬유표준색도감제작〉	—	—	300	300
· 색도감 가공비			125	125
· 색도감 제작비			175	175

〈추가요청사유〉

- 당초 예산요구액 중 중점지원이 필요한 플라스틱색채표준화 및 섬유표준색 도감 제작을 위한 최소비용으로 5억원을 추가요청하여 반영됨
 - 플라스틱색채표준화의 경우, 시급히 필요한 활용 500색(당초 300색)개발을 위하여는 추가 200색 개발에 필요한 2억원 추가요청
 - 섬유표준색도감의 경우, 우리나라 섬유표준색 정착을 위하여 기 제작된 섬유표준원단(2,135색)을 가공하여 유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기 위한 가공·제작비(1,000세트) 3억원 요청
- * 기 제작된 섬유표준원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탈색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새로 도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70~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이미 개발된 표준색원단을 활용할 경우 6억원(국고 3억원)으로 1,000set의 도감을 제작하여 관련단체 및 업계에 무상으로 보급이 가능함

[한국섬유표준색도감은 94년에 제정(공업진흥청 고시 KSCP-K-1009)되었으나, 상업성이 없고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민간이 제작·보급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음]

〈참고〉

외국의 사례(색채표준화 사업)

□ 미 국

- 1902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1905 Munsell Color System
- 1931 Iscc(Inter Society of Color Council)
- 1968 FS(Federal Standard)
- 1984 Pantone Professional Color System

□ 일 본

- 1927 일본색채연구소
- 1964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 1975 NCD(Nippon Color Design)
- 1977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 1986 일본색채정보연구소

□ 영 국

- 1901 BS(British Standards)

□ 독 일

- 1917 DIN(Deutsche Normen)의 RAL Code

□ 스웨덴

- 1976 NCS(Natural color System)

(4) 산업색채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목적

- 제품 고부가가치화의 핵심요소이나 기반연구체계가 미흡한 산업색채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색채관련 기초 및 응용연구, 전문인력양성, 정보구축·보급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성

-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
 - 색채는 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 특히 전 산업에 균형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색채를 연구할 수 있는 공동기반하에 관련 연구, 개발, 정보 등의 인프라가 구축 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됨
- 학제간 연구의 필요
 - 색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사회학, 심리학, 철학, 생리학, 의학, 물리학, 화학, 건축학 등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주관할 수 있는 공동의 창구가 필요
- 색채산업의 무한한 가능성
 - 산업 전 분야에서 색채와 무관한 분야는 거의 없으며, 색채 그 자체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한 분야로서 미래산업으로서의 색채산업의 가능성은 무한함

사업개요

- 산·학 협동을 위한 색채공동연구기반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학 및 업계에서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총 사업비 126억원의 규모로
 - 부지 및 건축비를民間에서 부담하고
 - 정부는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장비구입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수행주체 : 이화여자대학교
- 사업 기간 : '97~'99 (3년간)
- 사업 수행방안
 - 색채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대학내에 연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학제간 교류 원활화 유도
- '97 정부예산 : 15억원 확보 (장비구축 : 10억원, 건축비 : 5억원)
- 사업 규모
 - 위치 : 이화여대내
 - 대지 : 500평
 - 건물 : 1,000평(지하1층, 지상 5층 규모)

주요 사업내용

- 색채관련 기초 및 응용연구
 - 색채광학, 색채심리, 색채정신분석, 환경색채디자인, 안전과 색채, 색지각 및 색감각, 건축과 색채, 도시계획과 색채, 제품색채디자인, 감성공학과 색채
- 색채관리 전문인력 양성
 - 색채관리사, Special Colorist, 조색사양성을 위한 신기술교육
- 산업색채 표준화 및 색표개발
 - 도료색채 표준화, 섬유색채 표준화, 플라스틱색채 표준화, 잉크색채 표준화, 유행색 Trend 분석 및 색표개발, Color Bank

- 색채관련 정보 제공
 - 해외정보수집 분석, 산업별 활용색채 조사, 소비자 색채관련 기호조사, 국가별 색채선호도 조사, 배색 사례연구, 색채관련 세미나 등
- 색채관련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한국색채학회, 한국색채교육학회, 유행색협회, 관련대학 등
- 색채정보 Data Base 구축
 - 색기호 호환시스템, 소재별 배색연구, 색채이미지 분석시스템, 색채감성분석시스템, 색채진단시스템, 색채상품화 전략시스템, 색채교육시스템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색채관련 정책자문 및 지원
- 색채상담 및 자문(연구센터 및 지방분소)
 -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의 색채관련 상담 및 자문 Network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70여가지의 색상을 배워 지적감성을 익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여가지의 색상을 이해하는데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색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색채를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과소 평가하는 문제는 국내에 색채연구 전문가가 전무하고 색채연구 전문기관이 영세하여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색채연구소, 한국색채학회, 한국색채교육학회, 한국유행색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색채연구소, 기타 개별기업 연구소 등에서 색채와 관련된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연구단체들의 색채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산업인프라화 할 수 있는 공동 연구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기대효과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 산업, 소재, 제품별 특성에 적합한 고품위 색채디자인을 개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중복투자 방지
 - 색채관련 연구, 개발, 정보화등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개별산업체의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로 국가적 낭비요소 경감
- 미래산업사회에의 능동적 대응
 - 국내산업의 취약한 부분인 색채관련 분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및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중요한 Software산업인 색채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정보화사회에의 기반조성
 - 색채이미지 분석, 색채감성분석, 색채진단시스템 등 색채관련 연구, 개발, 정보화 자료들을 Data Base화하여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민의 미적감성 교육효과
 - 고품위의 다양한 색채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을 일상 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색채관련 정보나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국민문화수준이 향상되는 등 전 국민의 미적감성 교육효과

'97년도 예산확보 내역

○ 국가 재정에 의한 지원의 필요성

– 색채연구단체의 영세성

- 색채디자인의 수준의 열세로 인해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색채연구기관, 단체 등의 연구시설, 장비, 연구여건, 재원등이 영세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성, 생산성, 연구결과 및 인력의 활용도 등의 문제로 민간투자 어려움

– 산업인프라로서의 색채연구

- 색채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물리학, 심리학, 사회학등 다양한 기초학문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며 실제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는 산업색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국가차원의 사업임

○ 연도별 예산소요(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 실적 및 계획		
		'97	'98	'99
산 업 색 채 공 동 연 구 기 반 구 축 (1997-1999)	12,600	4,500	4,400	3,700
○ 정 부 지 원	6,500	1,500	2,500	2,500
○ 민 자 유 치	6,100	3,000	1,900	1,200

〈참고〉

연도별 총사업비 및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7	'98	'99	비 고
수 입	○ 국 고	6,500	1,500	2,500	2,500	
	○ 민 자	6,100	3,000	1,900	2,200	
	- 주관기관	4,600	2,500	1,400	700	
	- 참여기관	1,500	500	500	500	
계		12,600	4,500	4,400	3,700	
		(6,500)	(1,500)	(2,500)	(2,500)	
지 출	부지구입비	1,500 (-)	1,500 (-)	-	-	500평×3백만원 (현물)
	설계감리비	180 (-)	180 (-)	-	-	
	건축비	3,000 (1,000)	1,500 (500)	1,500 (500)	-	1,000평×3백만원 국고 1,000백만원
	장비구입비	6,000 (5,000)	1,000 (1,000)	2,500 (2,000)	2,500 (2,000)	현물 1,000백만원 국고 5,000백만원
	문현구입비	500 (500)	- (-)	- (-)	500 (500)	국고 500백만원
	인건비	470 (-)	100 (-)	120 (-)	250 (-)	(현물)
	관리비	750 (-)	200 (-)	250 (-)	300 (-)	(현금)
	기타	200 (-)	20 (-)	30 (-)	150 (-)	(현금)

※ 주 : 국고지원분은 ()내에 표기

〈참고〉

외국의 색채정보 Network

국 명	연 구 단 체 명	비 고
Argentina	GRUPO ARFENTINO DEL COLOR LIC	
Australia	COLOUR SOCIETY OF AUSTRALIA	
Austria	ARBEITSKREIS FARBE DER OVE-OLAV	
Belgium	CENTRE D'INFORMATION DE LA COULEUR BELGLQUE	
Canada	CANADIAN SOCIETY FOR COLOR	
China	CHINESE COLOUR COMMISSION	
France	CENTRE FRANCAIS DE LA COULEUR	
Great Britain	THE COLOR GROUP	
Holland	NEDERLANDSE VERENIGING VOOR KLEURENSTUDIE	
Hungary	HUNGARIAN NATIONAL COLOUR COMMITTEE	
India	COLOUR GROUP OF INDIA	
Italy	ASSOCIAZIONE OTTICA ITALIANA	
Japan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Norway	NORSK FARVEFORUM	
Poland	POLISH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South Africa	SOUTH AFRICAN COLOUR SCIENCE ASSOCIATION	

국 명	연 구 단 체 명	비 고
Sweden	SVENSKA FARGGRUPPEN	
Switzerl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CONSULTANTS	
Switzerland	SCHWEIZERISCHE LICHTTECHNISHE GESELLSCHAET	
U.S.A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U.S.A	AMERICAN INFORMATION CENTER FOR COLOR AND ENVIRONMENT	
U.S.A	COLOR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U.S.A	COLOR MARKETING GROUP	
U.S.A	DRY COLO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CONSULTANTS	
U.S.A	INTER-SOCIETY COLOR COUNCIL	
U.S.A	NATIONAL PAINT AND COATINGS ASSOCIATION,IND.	
U.S.A	DEUTSCHER VERBBAND FARBE	

분야별 색채 전문연구기관(미국)

-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AATCC)
- American College of Prosthodontists(ACP)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 Americ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ASID)
- American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ASPRS)
- Color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nc.(CAUS)
- Color Marketing Group
- Color Pigments Manufacturer's Association(CPMA)
- Detroit Colour Council(DCC)
- Federation of Societies for Coatings Technology(FSCT)
-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GIA)
- Graphic Arts Technical Foundation(GATF)
-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HFES)
-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IES of NA)
- Individual Member Group(IMG)
- National Artists Equity Association(NAEA)
- National Association of Printing Ink Manufacturers(NAPIM)
-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 Society for Imaging Science and Technology(SPSE)
-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SID)
- Society of Plastic Engineers, Color & Appearance Division(SPE)
-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Graphic Arts(TAGA)
-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TAPPI)

(5) 고부가가치화 사업(산업기반기금)추진

사업목적

- 패션·신발·생활용품·가전·조명기기 등의 디자인 및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용기자재를 구입하여 패션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교육전문기관과 자기상표 개발 및 포장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디자인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관련 학원, 대학, 연구소, 제조업체, 포장전문업체 지원
- 지원근거
 - 공업발전법, 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이내(2년거치 3년분할)
 - 융자금리 : 연 6.5%

필요성

- 디자인개발은 첨단기술개발에 비해, 적은 투자비용(1/10수준)과 짧은 회수기간에 광범위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특히 최근 소비자선호의 개성화·다양화의 진전과 수입선 다변화 해제 확대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됨
- ※ 수출촉진을 위한 비가격 경쟁력 회복방안[뉴욕주재 지상사 1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무역협회, 96. 1.)]에서 기존제품의 디자인개선이 42%를 차지

※ 영국기업의 디자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의 예

[자료 : The Open University, Design Council (영국, 1991)]

- 제품출하시 평균 15개월만에 투자비용 회수(이중 41%는 1년이내에 회수됨)
 -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게 소요됨
 - 성공적 프로젝트의 소요비용 : 평균 20,000파운드
 - 추진된 프로젝트 중 74%가 수출경쟁력제고 및 국제수지향상에 기여
 - 프로젝트 완결후 90%가 회사에 이익실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기반은 취약한 형편이고, 기업의 자체디자인개발비중도 29%에 불과하여 대부분 OEM이나 모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국내에 총 867개의 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수준이고 인적·물적자원에서 일정요건에 합치되는 진흥원에 신고된 업체는 74개('96년말 기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형편임
 - 특히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주요 고객층이 중소기업이므로 동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자체 디자인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됨
 - 산업디자인관련 대학, 연구소, 학원의 기반장비 부족으로 산업디자인관련 전문인력은 실습교육이 취약하여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관련 장비 및 S/W의 고가화로 장비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자체 디자인실은 물론 전문디자이너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 모방에 의존하고 있음
 - 자체디자인개발을 위해 고가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나 동 업종의 대부분 업체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장비확충이 어렵고

- 자체디자인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도 상품화하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각종 조립설비 및 포장설비의 확충이 필요함
- 포장의 경우 최근 포장디자인을 통한 판매촉진, 제품의 보호, 포장폐기물과 관련된 환경포장, 유통의 원활화 등 그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총 3,000여개 포장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고 정부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특히 포장분야가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어 많은 첨단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의 포장관련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로서 자체자금으로 첨단설비등 시설투자가 어려움

(6) 민간 전문인력의 특별채용 추진

추진배경

- 산업디자인 정책의 수립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 시험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디자인 분야 전문인(제품 및 시각 디자인)을 사무관 등으로 특별채용할 필요성 대두
- 우리부내에 항공우주산업 및 산업피해조사 분야등에 기 특채된 사무관들에 대한 호평

특별채용에 따른 관계법령 및 절차

-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 4, § 28), 공무원임용령 (§ 3, § 16)
공무원임용시험령 (§ 7, § 14)
- 채용방법
 -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술사 자격소지자이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중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 당해부서에서 1차로 선발한 후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를 임용
- 또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현행 법령(국가공무원법 § 4, 공무원임용령 §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10개 직군에 해당되어야 함
※ 10개 직군 : 공안,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정보통신

○ 특별채용절차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상 10개 직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총무처장관과 사전 협의

⋮
↓

추정일수(3개월 이상 소요)

공 고	(20일 이상, 일간신문등 이용)	20일
-----	--------------------	-----

↓ 서류접수	↓
--------	---

서류합격자선발	30일
---------	-----

↓	↓
---	---

면 접	10일
-----	-----

↓	↓
---	---

특별채용시험요구 및 시험	20일
---------------	-----

↓	↓
---	---

임용제청	7일
------	----

↓	↓
---	---

임 용	7일
-----	----

검토내용

- 채용후보자의 수급 측면에서도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술사 또는 산업디자인분야를 전공한 박사소지자의 수가 빈약할 뿐 아니라
- 산업디자인 분야의 사무관 특별채용은 현행 『공무원임용령』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가능한 {직군}에 대한 총무처장관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가능

〈채용후보자 수급 측면〉

-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술사자격 소지자 전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정한 22개 기술분야에서 『산업디자인』분야 『제품디자인』에 대한 기술사는 '95.10.3일부터 신설되어 운용
 - 제품디자인기술사의 응시자격 : 기사1급취득 5년이상 경과자, 기사2급취득 7년이상 경과자 및 4년제대학졸업자로서 해당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 7년이상 실무종사한 자
 - 시험응시과목 : 제품디자인의 계획·방법·마케팅 및 제품의 설계, 생산관리 기타 제품디자인에 관한사항 (기사1급 시험의 경우는 제품디자인, 인간공학, 공업재료 및 색채학 등)
 - '92년이후 제품디자인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95년에 단 2명이 응시하여 1명만 합격한 실정임
- 특수전문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부족

- 산업디자인(산업미술과, 응용미술과(광고 및 공업디자인))만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는 없으며, 박사과정은 마케팅 및 색채분야 등을 전공한 뒤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며,
- 국내에 거주하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대략 10여명 내외로서 대부분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며 연령층도 40대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조사됨

〈법령측면〉

-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10개직군에 해당되는 분야이어야 하나
- 금번,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산업디자인분야는 위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총무처장관과 적용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실적〉

- 『공무원임용령』상 10개직군중 행정직군의 “일반행정”직렬에 동분야가 포함되도록 추진, 곤란한 경우 “문화”직렬에 포함시키는 방안 강구
 - 주무부서인 총무처(인사기획과)와 유선상으로 협의한 바 『공무원임용령』상 10개직군내의 적용이 불가하며 “연구직”으로의 채용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
 - 그러나, 『공무원임용령』상 10개직군중 『행정직군』을 제외한 9개 직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로의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직군』을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 계속 협의하면 『행정직군』으로의 임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특채대상자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황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및 관련기관을 통해 파악

-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등 29개대학 39개학과에 협조공문 발송 ('96.5.16)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협조공문 발송 ('96.9.5)

※ 조사 결과

- 일부대학의 산업디자인과 담당교수들과 상담한 결과, 디자인 분야는 석사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하고, 교수들도 대부분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디자인』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의 현황파악이 어려움
- 파악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대부분이 50세 전후의 대학교수들로서 사무관으로 특채 곤란

〈기타 채용방법에 대한 검토〉

- 연구직 채용 (공무원 임용령상 10직군 이외의 채용 → 연구관)
 - “연구직 공무원”은 6개 직군(학예,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의무, 환경)으로 대별되며,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관 특채는 “학예”직군중 학예연구 또는 미술직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연구직으로의 채용시 우선 우리부 직제령상 연구직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함
- 전문직 채용 (공무원 임용령상 10개직군과 관계없음)
 - 전문직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채용 가능하며 채용전에 우선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직 T/O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전문직채용 계약기간은 3년이며,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과 같이 예산의 확보와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가능

* 서울시의 경우, 의사, 헬기조종사, 헬기정비사, 교통전문요원 등 500여명이 임용된 바 있음.

※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향후 추진계획〉

- 디자인관련 학과의 담당교수들을 통하여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사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준비중에 있는 인재 파악
- 계속적인 조사와 동시에 각 위원회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물색하고, 유관단체(협회 등)를 통한 현황 파악
- 특허청에서도 디자인분야 사무관 특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파악하고, 절차 등에 대한 협조체계 유지

(참고)

(수료)

디자인전공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

('96년 상반기 기준)

성명	연령	학력	주요 경력	비고
김현선	40	동경대 환경조형디자인 박사	김현선 환경디자인연구소 운영	
박규현	50	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현)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신인숙	44	프랑스 파리7대학 섬유미술 사 및 색채이론	(현) 한성대 교수	
김성희	41	홍익대 텍스타일박사과정 수료	(현) 시립인천 전문대 교수	
최현찬	37	파리대학 아트플라스틱박사 과정 수료	'89까지 D.P근무	
박용균	30	전북대학원 미술학석사	(현) 전북대, 전주공전 출강	전북대
최원재	28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아 트칼리지 석사		"
이상복	51	일본동경예술대학원 디자인 전공 박사	(현) 단국대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단국대
박예철	44	홍익대학원 제품디자인 석 사	(현) 건국대 교수	건국대
명계수	44	홍익대학원 산업디자인 미 술학 석사	(현) 건국대 예술대 산업디 자인과 교수	"

성 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현 동 희	38	일본 쯔꾸바대학원 디자인 학석사	(현)건국대 교수	"
임 춘 택	41	홍익대 광고디자인(석사)	(현)건국대 교수	"
이 광 호	41	일본 쯔꾸바대학원 예술(석 사)	(현)건국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
곽 원 모	62	한양대학원 응용미술과(미 술석사)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고문	중앙대
신 용 태	56	중앙대 광고학(석사)	한국시각디자인협회 부회장	"
김 준 교	42	중앙대 시각디자인전공(미 술석사)	(현)중앙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
홍 성 수	49	중앙대 공업디자인전공(석 사)		"
정 석 길	41	동아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 부 교수	중앙대
김 명 석	48	일본 오사카대학원(환경디 자인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 학과 교수	한국과학 기술원
정 경 원	48	미국 시라큐스 대학원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 학과 교수	한국과학 기술원
박 대 순	66	한양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과 박사	한양대학교 교수	한양 대 학교 명 예교수

(7) 산업디자인분야 병역특례 추진

추진배경

- 산업디자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대상자(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를 전문연구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산업디자인분야의 활성화를 도모

관련법규

- 병역법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 병역법 제3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등
- 병역법 시행령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 병역법시행령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선발 및 편입)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산업체의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전문연구요원〉

○ 정 의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편입대상

-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원에 의하여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사람
 -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 하고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 복무기간 : 5년

○ 종사할 전문분야

-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는 3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산업기능요원〉

○ 정 의

-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능인력의 생산현장 활용으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해당기술·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편입대상

-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소지자, 국제기능대회 3위이상 입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수 있는자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학 력	기술자격 등급
○ 대학(원) 졸업자	○ 기사 1, 2급
○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1~2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 복무기간 : 3년

○ 종사할 전문분야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 분야 또는 병무심의 위원회가 인정한 분야
-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편입당시의 종사분야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편입당시의 해당 특기분야

검토내용

○ 병역특례 대상산업의 확대

- 현행 자연계 석사이상 → 미술계 특정학과 포함
- 과기처등록 연구기관(8개)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파악
- 산업디자인공인전문회사(74개)의 석사이상학위소지현황 파악
- 병역법에 산업디자인 연구범위 확대

○ 전문연구요원 선발기준 조정

〈참고〉

산업디자인 공인전문회사 현황

('96. 12. 말 기준)

번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전문분야
1	(주)212디자인	서울 서초 양재	5720-212	14	제품
2	(주)IDN	서울 서초 서초	525-5006	15	산업전반
3	(주)인피니트그룹	서울 종로 안국	736-7533	36	시각, 포장
4	(주)D&C	서울 마포 서교	326-2636	35	포장, 시각
5	(주)프론트디자인	서울 강남 신사	545-5542	5	제품
6	클립디자인(주)	서울 강남 논현	545-6862	10	제품
7	(주)한국프리즘	서울 강남 삼성	511-6942	17	제품, 환경
8	(주)시지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 신사	540-3333	27	제품, 시각
9	고저스	서울 마포 서교	338-7384	5	제품, 포장
10	(주)메서드산업디자인연구소	서울 중구 장충	277-7691	15	산업전반
11	(주)CD'S	서울 강남 신사	548-3822	5	시각, 포장
12	디자인터치	서울 중구 저동	263-2202	4	포장, 시각
13	세암디자인그룹	서울 서초 양재	571-0801	8	제품
14	APEX	서울 강남 역삼	561-3436	5	포장, 시각
15	IRI디자인연구소	서울 마포 서교	325-2389	8	제품, 환경
16	씨드디자인	서울 용산 한강	749-5570	4	산업전반
17	마린디자인인스티튜트	서울 중구 장충	273-2212	5	시각, 포장
18	산업디자인연구소	서울 중구 필동	277-5432	6	제품
19	메카디자인그룹	서울 강남 논현	511-6525	15	제품, 환경, 시각
20	에이스팩	부산 사하 하단	207-6071	5	산업전반
21	(주)예맥디자인	서울 송파 송파	419-3764	10	제품, 환경
22	(주)우퍼디자인	서울 강남 논현	543-0615	6	제품, 환경

번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전문분야
23	(주)대홍기획	서울 종로 공평	7248-591	350	포장, 시각
24	디자인아카데미	대전 중구 대홍	221-1999	7	포장, 시각
25	퍼비드디자인	서울 강남 논현	518-3996	5	포장, 시각
26	(주)모토디자인	서울 강남 논현	518-3341	10	환경, 제품
27	(주)다담디자인어소시에이트	서울 마포 합정	323-6050	6	제품
28	가람디자인	서울 강남 역삼	3453-7257	10	산업전반
29	C & COM	서울 중구 충무	263-6364	6	시각, 제품
30	라미환경미술연구원	서울 송파 방이	421-7277	16	환경, 시각
31	하나캐넥션(주)	서울 종로 효제	745-2167	20	textile, 시각
32	(주)C & I	광주 북구 신안	527-9001	13	환경, 시각
33	포장디자인연구소	서울 서초 양재	557-7238	11	시각, 포장
34	텐덤디자인어소시에이트	서울 종로 부암	394-5471	7	제품, 환경
35	C&C	서울 서초 양재	575-8925	3	산업전반
36	디자인하우스	서울 강남 신사	518-1831	8	산업전반
37	BEE 디자인컨설팅	서울 서초 방배	522-6205	3	제품
38	타코스	부산 사하 괴정	208-8357	6	산업전반
39	뷰에드	서울 강남 신사	3442-6916	4	시각, 포장
40	(주)KDA연구소	서울 강남 청담	511-4301	26	환경, 시각
41	(주)카이드 어소시에이츠	서울 강남 청담	511-7311	10	시각, 포장
42	디자인오피스	서울 중구 충무	275-5981	6	시각, 포장
43	(주)쥬비드	서울 중구 예장	273-3747	25	포장, 시각
44	A&B커뮤니케이션	서울 중구 장충	266-7215	6	시각, 포장
45	마노	서울 송파 잠실	424-2260	9	산업전반
46	원산업디자인연구소	전북 익산 남중	858-4118	5	시각, 포장
47	레드 인터내셔널	서울 양천 목2동	268-1280	5	산업전반제품
48	위트 디자인	서울 강남 신사	544-3437	5	제품, 시각
49	코다스디자인 어쏘시에이트	서울 서초 방배	585-8936	6	제품

번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전문분야
50	삼우기획	서울 강남 논현	518-3066	7	시각, 포장
51	섹터디자인	서울 강남 역삼	3452-1122	7	환경, 산업전반
52	크레션	서울 충무로2가	277-9027	6	포장, 산업전반
53	우주기획	서울 서대 충정	364-9101	15	환경, 시각, 산업전반
54	디자인파크	서울 종로 동승	745-5881	15	환경, 시각
55	피엔피디자인	서울 마포 도화	701-3945	4	포장, 제품
56	미래산업디자인연구소	서울 광진 노유	497-8637	3	환경, 제품
57	에스아이디자인	경기 안양 만안	67-3343	7	제품
58	디자인뱅크	광주 북구 종흥	512-6723	5	포장, 환경, 시각
59	그린디자인	서울 마포 서교	3377-274	6	포장, 시각
60	(주)금강디자인산업	부산 금정 구서	518-7772	13	제품, 시각
61	위드	경남 양산 동면	387-5073	5	제품, 시각, 포장
62	(주)올커뮤니케이션	서울 서초 반포	549-6440	10	시각, 환경, 포장
63	비엔애드	광주 동구 남동	232-8987	16	환경, 포장
64	뉴톤디자인	서울 강남 논현	514-1591	5	제품
65	(주)씨디알복스앤팩스	서울 강남 논현	518-2470	18	환경
66	아이에프디자인	서울 서초 서초	598-2170	6	제품
67	문애드	서울 중구 수표	276-0750	7	산업 전반
68	세건임팩트	광주 동구 동명	226-8226	9	포장
69	서진디자인	대구 중구 포정	253-6366	13	산업 전반
70	프로에드	전주 완산 중노	231-0805	8	시각, 포장
71	두성애드	대구 남구 대명	652-053	6	시각, 포장
72	디자인네트워크	서울 강남 청담	540-7518	12	산업 전반
73	아테크디자인	서울 마포 합정	323-4661	5	제품
74	누부티스	경기 남양 진건	963-0346	16	텍스타일

↑
724

국내 주요 디자인연구소 현황

회 사 명	부 서 명	인 원 (명)	전화번호
LG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	김철호이사 등 150명	630-3243
대우전자	디자인실	유한정상무 등 100명	369-0634
삼성전자	상품기획센터	박재욱이사 등 250명	259-2007/8
기아자동차	디자인부	임재국이사 등 117명	801-2082
태평양	디자인연구센터	조용현상무 등 73명	709-5054
현대자동차	디자인연구소	박종서상무 등 100명	0339)350-5024
삼성중공업	서울개발센터 디자인팀	진형주차장 등 12명	3458-6221
모닝글로리	개발본부	허인구상무 등 100명	719-0400
태광산업	디자인연구소	유재화이사 등 16명	0343)43-3651
린나이코리아	종합조정실 디자인팀	김삼현과장 등 5명	320-5555
한샘	개발실	노지영차장 등 30명	590-3114
에이스침대	개발실	김송태이사 등 11명	0446)877-1881
국제상사	상품기획부 디자인실	하영주이사 등 7명	709-7552/7
삼성항공산업	상품기획팀 디자인실	허만부장 등 8명	528-6824

〈국내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소속 및 설치현황(62개 대학, 79개 학과)〉

번호	대 학	단과대학	학 과 명	번 호	대 학	단과대학	학 과 명
1	가야요업대		산업디자인과	41	서울여대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2	강남대	미술계	산업디자인학과	42	서원대		산업디자인과
3	강릉대	예술·체육대	미술학과	43	성균관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4	강원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44	성균관대	공과대	산업디자인과
5	전국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	45	성신여대	미술대	산업미술과
6	전국대	예술대	실내디자인과	46	세종대	예·체능대	산업미술과
7	경기대	예·체능대	산업디자인과	47	수원대	미술대	산업미술과
8	경남대	자연과학대	산업디자인학과	48	숙명여대	미술대	산업미술과
9	경북대	예술대	미술학과	49	용인대	미술계	산업디자인과
10	경성대	예술대	응용미술과	50	울산대	조형대	산업디자인과
11	경원대	미술대	시각디자인과	51	울산대	조형대	시각디자인과
12	경희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52	원광대	미술대	응용미술과
13	계명대	미술대	응용미술과	53	원광대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14	계명대	미술대	산업미술과	54	이화여대	미술대	생활미술학과
15	계명대	미술대	공업디자인과	55	이화여대	미술대	장식미술학과
16	관동대	예술대	산업미술대	56	인천대	예·체능계	미술학과
17	광주카톨릭대	조형대	공업디자인과	57	인하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18	광주카톨릭대	조형대	시각디자인과	58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19	국민대	조형대	공업디자인과	59	전북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
20	국민대	조형대	시각디자인과	60	전주대	예·체 능계	산업미술과
21	군산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	61	제주대	공과대	산업디자인학과
22	단국대	문과대	시각디자인과	62	조선대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23	단국대	예술대	산업미술과	63	중앙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
24	대구대	미술대	응용미술과	64	창원대	예술대	산업디자인학과
25	대구대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65	청주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
26	덕성여대	예술대	산업미술학과	66	충남대	예술대	산업미술학과
27	동덕여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	67	피어선대		산업디자인과
28	동덕여대	예술대	생활미술학과	68	한국기술교육대	공학계	조형공학과
29	동서공과대		산업디자인과	69	한남대	문과대	응용미술과
30	동아대	예술대	산업미술과	70	한성대		산업디자인과
31	동의대	인문대	산업디자인과	71	한양대	사범대	응미교육과
32	명지대	예·체능대	산업디자인과	72	한양대	산업미술대	산업미술과
33	목원대	미술계	산업미술과	73	호남대	미술계	산업디자인과
34	부산여대	미술계	산업미술과	74	호서대	예·체 능대	실내디자인과
35	상명여대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과	75	호서대	예·체 능대	응용미술과
36	상명여대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과	76	홍익대	미술대	시각디자인과
37	상지대	예술체육대	생활미술과	77	홍익대	미술대	공업디자인과
38	서경대		산업디자인과	78	홍익대	조형대	광고디자인과
39	서울대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79	효성여대	미술대	시각디자인과
40	서울시립대	문리과대	산업디자인학과				

* 미술교육학과는 주요 5개 대학만 기재하였음

(8) 디자인 관련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현황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절(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의 대상업종 범위에 “공업디자인서비스 업”만 명기되어 있어 세제혜택이 디자인업종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업디자인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이 분류(74215)되어 그 혜택이 기계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문제점

- 조감법 시행령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별표4] 기술·인력 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디자인개발을 위한 비용도 동법상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나
 - 실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패션디자인업은 동 시행령상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패션디자인업에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의류디자인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류디자인외에도 섬유제품, 의복, 신발, 가구 등 생활용품과 그래픽디자인 등 시각디자인 관련제품 등 일반 제조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전문업체가 모두 포함
 -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기계모형, 차체형, 생산품 모형, 포장 등의 공업디자인, 제도 및 도안 등을 주로하는 공업디자인업에 비해 그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실제 디자인개발을 하는 제품 범위에 있어서도 공업디자인업에 비해 넓음

- 현재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공업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을 동일업체에서 모두 개발하고 있어 공업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전문업체의 경우 매출액대비 75~85%정도를 기술 및 인력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 조감법상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전무
- 또한 현재 국내의 생활용품 등 일반 제조상품의 경우 경쟁력약화의 가장 큰 요인이 자체 상표 및 디자인개발의 취약으로 지목되고 있어 동분야의 지원이 시급

개선방안

- 동법시행령 제8조 1항의 대상업종 범위에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이외에 “패션 디자인업”의 추가 또는 동 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대상업종 범위에 공업디자인업과 패션디자인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자인업”을 추가
 - 지원세제 : 기술·인력개발비, 손금산입,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 수혜대상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연구소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비 등

다. 디자인의 저변확대 추진

(1)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제32회 전람회 개요

- 개최목적 : 산업디자인 작품의 시상·전시를 통한 디자인개발 촉진 및 우수 디자이너의 발굴
- 개최일시 : '97.5.2 ~ 5.16(15일간)
- 개최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주최 : 통상산업부
- 주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개최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34조
- 개최내용
 - 출품부문 : 제품, 환경, 포장, 시각 및 특별주제부문(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물을 이용한 문화상품 및 디자인)
 - * 특별주제부문은 공식전람회 부문과는 별도로 시행
 - 심사방법 : 각 부문별로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결정하고 3차 심사시 최종 등급 결정(Presentation폐지)
 - 시상내역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각 1점, 통상산업부장관상 4점, 교육부장관상 4점, 총무처장관상 1점(신설), 각 기관장상 14점, 특선 및 입선작 다수
 - 포상내역
 - 상금수여 : 대통령상(천만원), 국무총리상(5백만원), 장관상(2백만원), 각 기관장상(50만원)

- 해외연수 자격 부여 : 장관상 이상 수상 및 KIDP원장상 수상자

○ 추진일정

- 제1차 산업디자인전람회 집행위원 구성 및 개최 : '97.1.17
- 전람회 개최공고 : '97.1.27
- 출품물 접수 : '97.4.14~15
- 심사발표 : '97.4.21(심사기간 : 4.18 ~ 20)
- 시상 및 전람회 개최 : '97.5.2 ~ 5.16(15일간)

(주요변경사항)

구 분	제31회 전람회	제32회 전람회
○ 출품부문	○ 제품, 환경, 포장, 시각	○ 특별주제부문(국가상징물을 이용한 디자인)추가
○ 시상제도	○ 해외 연수자에 한해 상금 수여	○ 상금 수여 및 해외연수자격 동시 부여
○ 상금내역	○ 대통령상 500만원, 국무총리상 300만원 등	○ 대통령상 1,000만원, 국무총리상 500만원등 상금 상향조정
○ 심사방법	○ 3차 심사시 Presentation실시	○ Presentation폐지

제32회 전람회 개회

〈참고〉

제32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요강

1. 개최기관

가. 주 쇠 : 통 상 산 업 부(MOTIE)

나. 주 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2. 출품절차

가. 출품원서 배포처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진흥1부 전시과

나. 출품원서 배포기간 : '97년 2월 1일 ~ 4월 15일

다. 출품물 접수 : '97년 4월 14일 (월) ~ 4월 15일 (화) (2일간)

※ 제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출품물 접수에 따른 제도개선 예정사항

- 1차 접수 : ROUGH SKETCH, 계획서로 접수(접수예정 '98. 2월) → 1차 심사후 선정된 출품물에 한하여 2차 접수
- 2차 접수 : MOCK-UP 및 완성된 출품물로 접수(접수예정 '98. 4월초)
→ 2차·3차 심사를하여 시상할 예정임

라. 출품물 접수처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접수시 제출물

- 출품료 : 1점당 40,000원
- 출품물
- 출품물에 대한 설명판넬
- 출품원서
- 사진2매 (반명함판)
- 슬라이드 (35mm)

- 연구서 (디자인 개발의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관한 내용 :

A4용지 10매 이내)

- 분실의 우려가 있는 출품물은 별도의 도난방지를 위한 보조 장치를 하여야 하며 도난방지 보조장치를 하지 않은 출품물의 도난품에 대하여 행사 주관 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3. 출품부문

가. 제품디자인 부문(산업공예 포함)

- 전기, 전자, 정보, 통신기기 디자인
- 생활용품, 레포츠,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 사무기기 및 문구, 아동용구 및 교육용품 디자인
-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주택설비 및 가구디자인
- 귀금속, 보석 디자인
- 도자공예 디자인
- 섬유 및 직물류 디자인
- 목공예, 석공예, 금속공예, 기타 공예 디자인

나. 환경디자인 부문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공 공간의 창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유용한 기획물

- (예시) ○ 가로시설물 : 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지하철 관련시설물, 가로사인시스템, 휴지통, 가로등, 화분대, 화분류, 공중전화
부스, 키오스크, 가드레일 및 각종 차폐시설물, 가로수관련 보조시설물, 단주(Bollards), 자전거·오토바이관련 시설물

- 옥외시설물 : 벤치 및 옥외용 의자류, 표지판, 표지물, 옥외용 조명
기구, 시계탑, 음수대(Drinking Fountain), 분수대, 집
합주거단지의 공용시설물, 공공정원·주택정원·옥상정
원용시설물, 스포츠단지의 시설물, 공원·리조트 및 여
가문화 공간의 시설물, 주차공간 및 차량통제용 시설
물, 캠프 및 주말주택 관련시설물
- 환경색채 및 조형물 : 사무용빌딩, 공공건물, 관공서, 공항, 병원, 학
교, 주유소, 주택, 종교건축물 등의 수퍼그래픽, 바닥
패턴, 배너(Banner)류,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각종
환경조형물, 실내조경 관련제품

다. 포장디자인 부문

엔지니어링, 마케팅,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획기적이고 상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포장의 기능을 갖춘 모든 상품의 포장디자인

- (예시)
- 포장 표면디자인 : 상품 내용에 적절한 구조와 표면디자인
(포장지, 쇼핑백 디자인 포함)
 - 포장 용기디자인 : 종이,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소재로 제작된 포장 용기로써 용기의 구조, 외
관등 형태디자인

라. 시각디자인 부문

- (예시)
- 광고디자인 : 신문, 잡지광고, 포스터 등 인쇄매체와 구매시점
(POP) 광고
 - 출판디자인 : 카탈로그, 팜플렛, 서적 등의 표지 및 레이아웃
 - 타이포그래피디자인 : 문자개발을 위한 타이포디자인
 - 기업디자인 : 기업, 상품이미지 통합계획 (CIP, BI)

- 일러스트레이션 :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와 카렌다, 카탈로그 등
의 시각매체
- 컴퓨터그래픽 : Still 및 Animation 등 컴퓨터를 응용, 제작된 출
품물(Art Design, CAD, Electronic publishing)

마. 특별주제부문 : 국가상징물(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을 이용한 문화상품 및
디자인

- (예시)
- 문구·완구·달력·수첩·포장지, 학용품, 사무용품 등
 - 넥타이, T셔츠, 컵, 시계, 신변 장식품, 생활용품 등
단) 일회용 소모품 등 국가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
는 상품은 출품할 수 없음.

※ 산업디자인전 제도와는 별도 시행

4. 출품물 규격 및 제작요령

가. 제품디자인 부문(산업공예 포함)

- (1) 출품물 규격
- 출품물 진열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0cm 이내
 - 실물 또는 모형과 별도로 설계도 판넬(수량에 관계없이 면적 15,000cm²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단, 1변의 길이는 150cm를 초과할 수 없음)
을 동시에 출품
- (2) 제작요령
- 현실적인 여건에 충분히 부합되고 실용적인 디자인 대상을 선정할 것
 - 문제해결의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
 - 합리적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소재, 재료 및 아이디어를
혼합, 응용하여 출품물을 제작할 것

- 기술상의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여 파손의 우려가 있는 출품물은 별도 보조장치를 설치할 것
- 출품물 제작에 있어서 내용상 유의사항
 - 테마선정 및 방향설정
 -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 형태 (조형상의 심미성, 독창성)
 - 기능 및 가격 (용도의 합목적성, 편리성, 안전성, 생산성, 시장성)
 - 구조 및 재료 (제작, 가공, 조립상의 기술 및 과학성)

나. 환경디자인 부문

(1) 출품물 규격

- 출품물 진열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0cm 이내
- 실물 또는 모형과 별도로 설계도 판넬(수량에 관계없이 면적 15,000cm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단, 1변의 길이는 150cm를 초과할 수 없음)을 동시에 출품

(2) 제작요령

- 현실적인 사례 또는 개선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디자인 대상을 선정할 것
- 문제해결의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
-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출품물을 제작할 것
- 출품물 제작에 있어서 내용상 유의사항
 - 테마선정 및 방향설정
 -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 형태 (조형상의 심미성, 독창성, 조화성)
 - 기능 (용도의 합목적성, 편리성, 안전성, 공간성)
 - 구조 및 재료 (제작, 가공, 조립상의 기술 및 과학성)

다. 포장디자인 부문

(1) 출품물 규격 : 제작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만 출품

- 출품물 진열면적은 90cm×180cm이내로 하고, 출품물과 별도로 설명판넬(수량에 관계없이 면적 15,000cm²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단, 1변의 길이는 150cm를 초과할 수 없음)을 동시에 출품

(2) 제작요령

-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색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독창성과 더불어 판매를 촉진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마케팅, 환경문제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을 갖춘 기획물
 - 보호성 : 물품의 유통, 보관, 보존을 위해 여러 종류의 장애로 부터 물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
 - 경제성 : 적합한 재료와 효율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작 비용이 저렴 할 것
 - 편리성 : 물품의 취급, 보관, 운반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고려되어 있을 것
 - 적정포장 및 재료의 재활용으로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제작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 단위만 제작 출품

라. 시각디자인 부문

(1) 출품물 규격

- 평면 출품물인 경우 판넬 (수량에 관계없이 면적 15,000cm²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단, 1변의 길이는 150cm를 초과할 수 없음)제작
- 입체 출품물인 경우, 출품물 진열면적은 90cm×180cm 이내로 하고, 출품물과 별도로 설명판넬(수량에 관계없이 면적 15,000cm²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단, 1변의 길이는 150cm를 초과할 수 없음)을 동시에 출품

- 컴퓨터그래픽의 Animation 제작물은 반드시 Video Tape를 제출

(2) 제작요령

- 실용화를 위하여 가급적 실존하는 업체 및 제품을 대상으로 출품물을 제작할 것
- 가능한 한 인쇄처리된 출품물을 제작할 것
- 출품물 제작에 있어서 내용상 유의사항
 - 독창성 (아이디어)
 - 표현내용 및 기술 (의미, 문안, 색, 질감, 레터링, 레이아웃)
 - 실용성 (용도, 기능, 가격, 인쇄방법)

마. 특별주제부문 : 국가상징물(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을 이용한 문화상품 및 디자인

(1) 출품물 규격

- 출품물 진열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0cm 이내
- 실물 또는 모형과 별도로 설계도 판넬(수량에 관계없이 면적 15,000cm²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단, 1변의 길이는 150cm를 초과할 수 없음)을 동시에 출품

(2) 제작요령

- 현실적인 여건에 충분히 부합되고 실용적인 디자인 대상을 선정할 것
- 문제해결의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
- 합리적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소재, 재료 및 아이디어를 혼합, 응용하여 출품물을 제작할 것
- 기술상의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여 파손의 우려가 있는 출품물은 별도 보조장치를 설치할 것
- 출품물 제작에 있어서 내용상 유의사항
- 테마선정 및 방향설정

-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 형태 (조형상의 심미성, 독창성)
- 기능 및 가격 (용도의 합목적성, 편리성, 안전성, 생산성, 시장성)
- 구조 및 재료 (제작, 가공, 조립상의 기술 및 과학성)

5. 출품물의 제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디자인은 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음.

-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된 산업디자인
-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 본 “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나. 출품자 1인이 출품할 수 있는 출품물은 3점이내로 제한

다. 형상 또는 표제 등으로 보아 동일한 디자인에 의한 출품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출품한 경우에도 이를 1점의 출품물로 간주

라. 출품물의 공동제작은 2인이내로 하며 출품원서 작성시 “주”디자이너와 “종”디자이너를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함

마. 출품자가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 접수할 수 없음

6. 출품물 심사 및 시상

가. 심사기구 : 관련분야 및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

나. 심사기준 : 부문별 제작요령을 엄격히 적용

- 출품물의 아이디어 측면 및 실용화에 주안점을 둠.

다. 심사방법 : 1차·2차, 3차로 구분하여 심사

라. 심사발표 : '97. 4. 21(월) 14:0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계시판(예정)

마. 개막 및 시상식

○ 일 시 : 1997년 5월 2일 10:30

○ 장 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바. 시상 내용

시상내용	수량	부상	비고
대통령상	1	상장, 메달, 해외연수자격 부여, 1,000만원	- KIDP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규정에 의거 '98.2.28일 이내 출국예정자
국무총리상	1	" , 500만원	"
통상산업부장관상	4	" , 200만원	"
교육부장관상	4	" , 200만원	"
총무처장관상	1	" , 200만원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상	4	" , 50만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2	상장, 메달 , 50만원	
한국무역협회회장상	2	" , 5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상	2	" , 5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상	2	" , 5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2	" , 50만원	
특선		상장, 도록, 메달	
입선		"	

※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 출품일 경우 그 상은 인정하나 경력 인정시 “주” 디자이너 1명만 추천디자이너로 위촉하며 “종”디자이너는 특선 수상으로만 인정

※ 국가상징물을 이용한 문화상품 및 디자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 기관에서 우선 활용 권장

※ 총무처장관상은 특별주제 부문에 시상

7. 출품물 전시

가. 전시기간 : 1997년 5월 2일 (금) ~ 5월 16일 (금) (15일간)

나.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다. 전시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출품물
- 초대/추천디자이너 출품물
- 기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품물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 출품물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박물관
에 영구 소장

8. 출품물 반출

출품물은 다음 기간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반출품에 대하여 행사 주관기관은 분실 및 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가. 반출기간

- 낙선 출품물 : '97년 4월 21일 (월) ~ 4월 22(화)(2일간)
- 전시 출품물 : '97년 5월 17일 ~ 5월 18일(2일간, 지방이동전시품 추후통보)

나. 반출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9. 제품화 지원 및 우대사항

가. 전시 출품물의 제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 제품개발지원을 할 수 있음

나. 출품물의 디자인 보호 및 실용화를 위한 업계와의 연계 적극 추진

다. 입선이상 수상자는 본인 희망시 취업 추천서 발급

라. 장관장 이상 및 KIDP원장상 수상자는 본인 희망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자격부여

10. 문의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진흥부 전시과

전화 : 02)708-2070/3

FAX : 02)765-967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우편번호 110-460)

(2)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 선정

'96 행사개요

○ 목 적

-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국가공인의 마크를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판촉·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
- 산업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제고

○ 기간 및 장소 : '96. 6. 21 ~ 6. 3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추진체계

- 주최 : 통상산업부
- 주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개최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 개막식 참석인사 현황

- 참석인원 규모 : 정부인사 및 외국대사등 100여명
- 주요참석인사
 - 대통령영부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연세대 총장, 홍익대 총장
 - 주한 네덜란드, 독일, 호주, 알제리, 뉴질랜드 대사 등

'96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결과

〈출품 및 선정 결과〉

구 분	업 체		출 품 상 품		선 정 상 품	
	'95	'96	'95	'96	'95	'96
수 량	155	238	477	602	172	310

〈평 가〉

- 중소기업의 출품(47%증가) 및 선정(131%증가)이 두드러짐
- 전부문 고르게 출품됨
 - 전기·전자(126개), 생활용품(118개), 포장디자인(90개), 통신기기(76개), 가구(38개), 주택설비(31개), 사무기기(30개) 등

〈수상내역〉

○ 수상품수

구분	대 상 (대통령상)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우수상 (장관상)	고유조형상 (문체부장관상)	중소기업 특별상 (장관상)	특별상 (기관장상)	합계
수량	1	1	8	1	4	28	43

〈특기사항〉

- 우수산업디자이너상(통상산업부장관상)별도 시상(신설)
 - GD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품의 디자이너 2명
 - SD의 국무총리상 수상품의 디자이너 1명
- ※ KIDP측에서는 당초계획을 변경, 수상상품 디자이너 소속업체의 대표 또는 담당중역(연구소장, 팀장)에게 수여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본상 신설의 취지를 살려 당초 계획대로 수상상품을 직접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수여하였음
- 성공사례(SD)상품(국무총리상 1점, 장관상 3점 등) 별도 시상
- 중소기업특별상은 중소기업제품을 대상으로 특별선정함
('97년부터는 중소기업청장상으로 변경할 계획임)

〈심사과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수 : 위원장 포함 100명(1차 45명, 2차 25명, 3차 30명)

○ 선정기준

- 지역별, 분야별(교수 34명, 업체 13명, 전문회사 4명, 외국인 4명, 각 소비자단체 대표45명) 안배
- 공인전문회사 및 기업체 디자이너는 1차심사만 참여

○ 심사방법

심사단계	심사내용	선정상품수	심사방법
1차심사	GD상품 선정	310	투표

심사단계	심사내용	선정상품수	심사방법
2차심사	수상후보 선정	86(2배수)	채점

심사단계	심사내용	선정상품수	심사방법
3차심사	기관장상이상 선정	43	투표

〈수상품 세부내역〉

시상명	업체명	상품명
GD대상(대통령상)	LG전자	캠코더
GD최우수상(국무총리상)	임마누엘전자	비만도 측정기
GD우수상(통산부장관상)	삼성전자 삼성전자 " " 대우전자 LG전자 대우중공업 대림자동차공업	대형칼라 TV 진공청소기 비동기식전송교환기 유무선응답전화기 진공청소기 유무선 전화기 차세대 카고트럭 모터싸이클
한국고유조형상(문체부장관상)	LG전자	에어컨디셔너
중소기업특별상(통산부장관상)	세프라인(주) 프라코(주) 보루네오가구 IBG(주)	주방용기(냄비) 접철식 의자 셀렉트 책상 접철식 상자
서울특별시장상	에스원(주) LG전자	주택용 경비기기 진공청소기

1. 선점목적

우수한 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장려하여

- 상품의 산업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 품질이 우수 함은 물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생활공간에 아름다움을 갖춘 상품개발 및 이의 발굴 촉진
 -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2. 주최 및 선정주관기관

- 주최 : 통상산업부(MOTIE)
 - 선정주관기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 후원 : 한국방송공사(KBS)

3. 신청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상품을 자기고유상표로 판매하는 업체

4. 신청 접수기간 : '97. 6. 10(화) ~ 6. 12(목) (3일간)

5. 선정대상 품목

가. 제품디자인 :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상품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전기전자제품 :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청소기, 에어콘 등
- 통신기기 : 컴퓨터, 전화기, 팩시밀리, 휴대폰, 도어폰, P/C컴퓨터 주변기기 등
- 생활용품류 : 카메라, 핸드백, 지갑, 압력솥, 주방기기, 가스렌지, 산업도자기 등
- 환경용품류 : 휴지통, 벤치 및 옥외용 의자류, 옥외용 조명기구 등
- 산업기계류 : 지게차, 굴삭기, 도자, 로다, 전류계, 농업용 양수기 등
- 섬유류 : 우산, 섬유핸드백, 섬유지갑,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침구류 등
- 의료기기 : 고압증기멸균기, 수술용기,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의료대 등
- 아동용구 : 완구,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삼륜차, 실내놀이용품 등
- 교육용품 : 현미경, 지구본, 미술용구, 자연학습교재, 반사투명기 등
- 사무기기 및 문구류 : 필기구, 타자기, 연필깍기, 복사기, 문서편집기 등
- 운송기기 : 중·소형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 레포츠용품류 : 등산장비, 테니스라켓, 물안경, 낚시용구, 자전거, 골프용품 등
- 취미용품류 : 피아노, 기타, 오르간, 드럼, 바이올린, 악기 등
- 가구류 : 책상, 식탁, 사무용 캐비넷, 의자, 침대, 장농, 쇼파 등
- 주택설비용품 : 씽크대, 수전금구, 위생도기, 타일, 도어설비류 등
- 기타 우리 생활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나. 포장디자인 :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농·축·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잡화등 기타 유통중인 상품

※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가능 함

6. 선정 신청

가. 선정 신청대상 : 본 공고전 1년 이내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

나. 선정 신청할 수 없는 상품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산업디자인 상품
- (2) 다른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 (4) '96년도 이전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산업디자인 상품

7. 선정기준

가. 상품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 품질, 사용상의 편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독창성이 있으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

다.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라.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8. 선정회수 : 년 1회

9. 선정 심사방법

디자인분야 및 소비자,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
서 1차, 2차, 3차 구분 심사하여 선정함

※ 3차심사는 수상후보 상품에 한하여 Presentation 실시[1개 상품당 5분,
슬라이드, 오버헤드 프로젝트(OHP), 단 야외전시용 중장비는 VTR 사용
가능, 해당업체 준비]

10. 선정 신청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1점 이상[전시용으로 필요시 다수, 단 지게차 등 야외
전시용 중장비는 판넬 및 슬라이드(10매이내)로 접수], 신청서류(소정양식),
품질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가. 신청서류

- (1) 신 청 서(소정양식) : 신청회사당 1매
- (2) 상품명세서(소정양식) : 신청상품 1종당 2매(상품사진 및 슬라이드 2매 첨부)
- (3) 상품설명서(소정양식) : 신청상품당 2매
- (4) 상품목록표(소정양식) : 신청회사당 3매
- (5) 선정집원고(소정양식) : 신청회사당 1매

※ 단, 각종 양식 부족시 같은 크기로 복사 사용이 가능 함

나. 품질관계서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질증빙 서류중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 (1) [KS] 표시 상품은 KS 표시 허가증 사본
- (2) [검] 자 표시 상품은 검사증 사본
- (3) [Q] 마크 표시 상품은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소 발행 서류
- (4) 기타 상품은 그 품질이 KS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KS기준, KS규격이
없는 경우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 전기용
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검사 기
관이 발행한 품질검사 성적서

다. 상품판넬 : 규격 - 가로, 세로 각 1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상품 1
건당 1매이상 제작 제출

라. 신청료 : 신청상품 1건당 200,000원

11. 선정결과 발표

심사 결과는 '97.6.25.까지 업체별 개별통지 후 7월초 일간지에 공고함

12. 시상

가. 일자 : '97. 7. 4(금) 10:30

나.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다. 내용

○ 대통령상	:	1점
○ 국무총리상	:	1점
○ 통상산업부 장관상	:	8점
○ 문화체육부 장관상	:	1점
○ 서울특별시장상	:	2점
○ 중소기업청장상(신설)	:	4점
○ 특허청장상(신설)	:	2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	2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	2점
○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	2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상	:	2점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신설)	:	2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상	:	2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상	:	2점
○ 한국백화점협회 회장상	:	2점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원장상	:	8점

라. '97 우수산업디자이너상

시상내용	대상	부상	비고
'97우수산업디자이너상	2명	상장, 200만원 해외연수	- KIDP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 '97 우수산업디자이너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 상품을 디자인한 산업디자이너 각1명에 시상

13. 전시회 개최

가. 일자 : '97. 7. 4 ~ 7. 13 (10일간)

나.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장

※ 전시기간에 발생한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상품은 해당업체에서 사전에 별도 조치를 해야 함

※ 선정된 상품에 한하여 해당업체는 KIDP와 협의후 디스플레이를 하여야 함

※ 선정상품 중 중장비 및 승용차등은 야외에서 전시하며 야외전시상품은 1부스당(가로4m×세로6m) 200만원을 전시회 개막전일까지 KIDP 진흥과에 납부하여야 함.

14. 선정상품에 대한 등록 및 표지사용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신청한 사업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가. 구비서류

- (1) 우수산업디자인상품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 (2) 상품설명서(외관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포함)
- (3) 상품사진(천연색 60mm×60mm) 2매.

나. 표지사용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은 등록과 동시에 [GD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 1건당 표지 사용료 600,000원(등록수수료 20,000원포함)을 전시 개막 전일까지 KIDP진홍과에 납부 하여야 함 (표지사용기간 제한 없음)

다. 등록기간 : '97. 6. 26 ~ 6. 30

15. 선정품에 대한 우대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
추천시 우대

나.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시 평가점수에 반영

다. KIDP 간행물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산업디자인(GD)
선정 상품임을 수시 홍보

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여시 우선 추천

16. 상품반출 기간

가. 심사 탈락상품 : '97. 6. 18(수) ~ 6. 20 (금) 3일간

나. 전시품 : '97. 7. 14 (월) ~ 7. 15 (화) 2일간

다. 선정품증 지방전시 품목은 전시후 추후통보

※ 위 기간중 반출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에서 분실, 파손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음.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 상품은 KIDP에서 운영하는 “산업디자인박물관” 자료로 영구 보존함.

17.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우편번호 110-460)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KIDP) 진홍부 전시과

TEL : 02) 708-2069/74 FAX : 02) 765-9679

(3) 각종 산업디자인관련 전시회 지원

(가) 제3회 초·중·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현황개요

○ 목 적

- 산업디자인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산업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확산키 위함

○ 행사주체

- 주최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조선일보사, 소년조선일보
- 후원 : 통상산업부, 교육부

○ 기간 및 장소

- 기간 : '96. 9. 13 ~ 9. 29(17일간)
-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연혁 : '94년 제1회 동 전람회 개최이래 매년 개최

개막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96. 9. 13(금) 10:30
-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주요행사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협판식
- 개막식 축사
- 시상(국무총리상 6점, 통상산업부장관상 6점 등)
- 입상품 관람

〈참고〉

제3회 전국 초·중·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 출품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제 품	859	451	718	2,028
환 경	281	38	102	421
포 장	340	210	232	782
시 각	1,577	153	1,148	2,878
계	3,057	852	2,200	6,109

〈연도별 총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제 품	'94	601	6	129
	'95	677	187	534
	'96	859	451	718
환 경	'94	142	—	5
	'95	286	25	33
	'96	281	38	102
포 장	'94	797	—	—
	'95	491	178	136
	'96	340	210	232
시 각	'94	1,681	63	954
	'95	1,261	251	1,396
	'96	1,577	153	1,148
계	'94	3,221	69	1,088
	'95	2,715	641	2,099
	'96	3,057	852	2,200
				6,109

전람회 수상자 명단

〈개인상〉

구분	시상내역	성명	출품물명	학교명	부문
초등학교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김진	꽃모양의 파라솔디자인	반원초등학교	환경
	금상 (통산부장관상)	윤종용	1인 3역 둥근 모서리 책상	5년 청운초등학교	제품
	금상 (교육부장관상)	홍지현	캘린더	2년 한신초등학교	시각
중학교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박하니	환경보전 포스터 디자인	대전신일	시각
	금상 (통산부장관상)	강리라	동물원 벽면을 위한 환경디자인	중학교 3년	환경
	금상 (교육부장관상)	박혜민	다목적 꽃이 디자인	”	제품
고등학교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하성민	인명구조용 에어백	영남상업고	제품
	금상 (통산부장관상)	정윤지	모노라이트 전구포장	1년 한강전자	포장
	금상 (교육부장관상)	권이선	2002 월드컵 기념포스터	공예고 2년 서울공예고	시각

〈단체상〉

구 분	시 상 내 역	학 교 명
초 등 학 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통산부장관상) 우수상(교육부장관상)	불암초등학교 서강초등학교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중 학 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통산부장관상) 우수상(교육부장관상)	영동포중학교 당산서중학교 대전신일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통산부장관상) 우수상(교육부장관상)	상명공업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경기안산공업고등학교

(나) '96 우수문화상품전 개최

목 적

-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개발·확산함으로써 우리문화산업을 육성하고 21C 무한경쟁시대를 대비 국제경쟁력을 제고코자 함

개 요

- 일 시 : '96. 11. 2 ~ 11. 8 (7일간)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 1층 제8실(644평)
※ 시상식 : '96. 11. 2(토), 14:00, KOEX 1층 제8실
- 주최 : 서울특별시
- 후원 :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공사(KBS)
- 전시내용
 - 전시작품 : 850종, 1만여 점
 - 전시품목 : 전통문화상품, 생활문화상품, 첨단문화상품, 공연문화상품, 관광문화상품, 교육문화상품 등 6개분야
 - 전시구성
 - 문화상품제안전 : 일반공모작 752점 전시, 우수문화상품 100점 선정
 - 기업문화상품전 : 문화상품 관련 47개 업체의 개발상품 전시
 - 기획전 : 일본 및 국내의 문화상품 개발사례 소개
 - 부대행사 : 무형문화상품 소개(만화영화, 패션쇼, 민속공연 등)
 - 시상내역 : 총 공모작 752점중 29점 입상

- 대상 1, 금상1, 은상2, 동상3, 특별상2, 장려상 20점 등
- * 특별상 : 통상산업부 장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다) '97 서울 리빙디자인 페어 개최

목 적

- 국내외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한 관련 디자인 정보의 교류 촉진
- 디자인 개선을 통한 품질 고급화·다양화 유도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디자인의 대중적 인식확산 및 생활공간의 질적향상 도모

개 요

- 일 시 : '97. 3. 21(금) ~ 3. 25(화), 5일간
- 장 소 : KOEX 3층 대서양관
- 주최 : (주)디자인하우스, KOEX
- 주관 :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
- 후원 : 통상산업부, MBC, 조선일보, 한국디스플레이협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 전시내용
 - 전시품목 : 4개 품목 【가구류(일반, 부엌, 욕실 등), 홈패션 및 침장류, 벽재·바닥재·창호재, 인테리어 소품 및 기타품목 등】
 - 전시규모 : 10,368m²
 - 참가업체수 : 총 146여개 업체('96 : 94개 업체)
 - 관람객수 : 약 12만명('96 : 10만명)
 - 부대행사 : 디자인 관련 각종 세미나

〈참고〉

행사주최기관 현황자료

□ (주)디자인하우스 : 디자인 전문서적 발간

- 설립일자 : 1976. 6
- 대표자 : 이영혜
- 자 본 금 : 100백만원
- 자 산 : 4,320백만원
- 매 출 액 : ('95)15,160백만원 ('96)20,000백만원
- 종업원수 : 112명
- 사업 부 : 전문서적별로 구분, 총 4개 사업부
 - 월간디자인('76) : 국내 유일의 디자인전문지로서 제품, 그래픽, 광고, 디스플레이 등 디자인 전반을 취급
 - * 공보처 선정 제2회 우수잡지 선정
 - 행복이 가득한 집('87) : 인테리어 전문지
 - * 공보처 선정 제1회 우수잡지 선정
 - 월간 워킹우먼,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등

□ 한국종합전시장 : 각종 종합전시회 개최

- 설립일자 : 1986. 5. 30
- 조 직 : 4부 1실 3팀 17과
- 임직원수 : 250명
- 주요사업
 - 전문전시회 개최 : ('95) 115회(KOEX 주최 60회)
 - 국제회의, 세미나 등 각종행사 개최 : 연평균 500회 이상
 - 해외유명전시회 참가 및 참관단 파견 등 해외교류 사업 추진
 - 한국종합무역센터 입주업체 홍보지원 및 업무편의 제공

(4) 산업디자인의 지방확산 추진 전국 10개 도시 산업디자인종합행사 개최

목 적

- 산업디자인에 개발수요 촉진 및 진흥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 마련
- 산업디자인의 지방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인, 공무원, 언론인, 학생, 일반국민 들에게 산업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

행사개요

- 주 쇠 : 각 시·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후 원 : 통상산업부, 각 시·도 상공회의소, 지역언론사 등
- 개최일시 및 지역
 - ('96) 전국 9개 도시 : 대전(3월), 부산(5월), 제주(6월), 인천(7월), 청주(8월), 전주(9월), 광주·대구(11월), 강릉(12월)
 - ('97) 전국 8개 도시 : 대전(3월), 수원(4월), 춘천(5월), 대구(6월), 인천(7월), 부산(10월), 청주(10월), 광주(12월)

행사내용

- 전시회 개최
 - 전시장소 : 각 시도 문예회관 등
 - 전시품목 : 산업디자인 지도신상품, 제3회 초·중·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 입상품, 우수산업디자인 선정상품 등

- 공무원 산업디자인 특강
 - 대상: 각 시도 관공서 및 산하기관 임직원
 - 강사: 디자인 지도위원, 진홍원에 신고된 전문회사 대표 등
- 산업디자인 세미나 개최
 - 대상: 관련업체 산업디자이너, 산업디자인 전공학생 등
 - 강사: 국내외 디자인전문가
- 경영자 산업디자인 교육
 - 대상: 피지도업체 임직원, 각 시도 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각 지역내 디자인 지도업체 임직원
 - 강사: 각 지역의 디자인 지도위원
- 초·중·고생 산업디자인 조기교육
 - 대상: 각 시도 초·중·고생
 - 방법: 디자인 관련 VTR상영

개막식 행사

- 장소: 각 시도 문화예술회관 등
- 주요 참석인사
 - 각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지역 도 및 시의회 의장,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장, 각 지역 학계 및 언론계 대표 등
- 주요행사
 - 테이프 커팅(전시장 입구)
 - 행사현황 보고 및 지도사업 설명
 - 전시장 관람

(5)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추진

(가) 2001년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총회 한국유치 추진

ICSID개요

○ 일반현황

- 공식명칭 :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설립년도 : '57. 6. (사무국 : 핀란드 헬싱키)
- 회원단체 : 49개국 130개단체(세계 각국의 디자인단체들의 협의체)

○ 설립목적

-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인식제고 및 수준향상
- 산업디자인에 관한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
- 산업디자인연구 및 이론 개발

○ 주요활동

- 총회에서 산업디자인관련 주요현안 및 정책결정(3개 분과에서 집행)
- 국제산업디자인대회 개최(격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협조하여 디자인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화 추진
-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개발도상국의 산업디자인 분야 개발

○ 총회(격년) 및 의결기구

- 총회 : 19차('95)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
20차('97) 캐나다 토론토 개최 예정
21차('99) 호주 시드니 개최 예정
22차(2001) 한국 서울 유치신청 (브라질, 남아공과 경합중)

○ 의결기구 : 이사회(9인으로 구성)

※ 우리나라에는 KAIST 정경원 교수가 '95년 총회에서 이사로 피선

○ 국내 가입단체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진흥회원),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전문회원), 삼성전자, LG전자

2001년 ICSID총회 한국유치 추진

○ 유치목적

- 산업디자인 분야의 유기적 국제협력체제 구축
- WTO체제에 대응
-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교류촉진

○ 개최지 : 서울

○ 참가국 및 예상인원 : ICSID 49개 회원국 130개 기관, 1,500~2,000여명

○ 행사내용

- 국내외 산업디자인계 현안 및 발전방향 토의(세미나 개최)
- 국내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비교전시(박람회 등)
- 국내 산업디자인의 대내외 홍보
- 한국문화의 특성 및 우수성 홍보

○ 유치추진경위 및 계획

- '95. 5. 20. 유치신청서 발송
- '95. 5.~6. 유치협력단 파견
- '95. 9. 29. 대만 총회 참석 및 유치경위 설명
- '96. 5. 10 ICSID회원 기관에 장관명의 서한 발송
 - 대상 : ICSID회원국중 투표권 보유 회원 세계 44개국 80개 산업디자인기관
- '96. 5. 구 소련 4개국(러시아, 에스토니아 등)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순방
- '96. 2 유치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단체, 업체 및 정부관계자로 구성
 -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유치전략 수립 및 홍보활동 추진
- '97. 4 공식유치제안서 발송 및 제1차 유치단 파견(서유럽 8개국)
- '97. 4~ 홍보자료 제작 및 해외유력인사 초청 등 민·관 협력하에 다각적 유치활동 전개
- '97. 8 캐나다 토론토 총회에서 유치 결정

〈참고〉

1. ICSID(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기구 및 활동

- 1957년 6월 28일 설립, 핀란드 헬싱키에 사무국을 둠
 - 사무국 주소 : Yrjönkatu 11E, 00120 Helsinki, Finland
 - T 358-0-607611, F 358-0-607875
- 회원단체 : 49개국 130개단체(199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1973년 10월 회원 가입
- 회장 : Uwe Bahnsen(독일 국적, 활동처는 스위스)
- 설립목적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제고
 - 산업디자인의 수준제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
 -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이론 개발
- 활동
 - 총회에서 산업디자인 관련 주요현안 및 정책결정 : 산업디자이너 권리보호 및 도모
 - 국제 산업디자인 대회 개최(격년) : 최신 산업디자인 연구 및 정보교환
 - 3개분과(전문, 진흥, 교육)를 두고 관련정책 및 사업수행
 - UNIDO, UNFSCO, UNFP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개발도상국의 산업디자인 분야 개발
- 의결기구 : 이사회(9인으로 구성)
 - 한국(정경원 교수, KAIST)
 - 멕시코(Mr. Jorge Comez Abrams)
 - 이태리(Mr. Augusto Morello)
 - 브라질(Mr. Eduardo Barroso Neto)
 - 일본(Mr. Kiyoshi Sakushila)
 - 남아프리카(Ms. Adrienne Viljoen)
 - 네덜란드(Mr. Jan Lucassen)
 - 슬로바키아(Ms. Zdenka Burianova)
 - 독일(Mr. Frilz Frenkler)

- 총회 개최 예정국 : 19차(1995. 9.24 ~ 30)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
20차(1997년 캐나다 토론토)
21차(1999년 호주 시드니)
- 22차 총회(2001년) : 한국 서울 유치 신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경합중)

2. Uwe Bahnsen회장 이력사항

- 국적 : 독일
- 생년월일 : 1930년 5월 30일
- 언어 : 독일어, 영어, 불어
- 학력 : 1950년 독일 함부르크의 Hochshule für Bildende Kunste(졸업)
- 경력
 - 1950~1957 함부르크, 콜로뉴에서 전시, 인테리어, 무대, 그래픽 분야 활동
 - 1958~1976 독일, 미국, 영국에서 디자이너로서 Ford사 근무
 - 1976~1986 영국에 소재한 Ford Europe사 디자인담당 부사장 근무
 - 1983 RSA Design 상 수상
 - 1986~1994 Art Center Europe 이사
 - 1995 ICSID회장('95 대만에서 개최된 19차 총회에서 피선)
- 주요활동
 - 다종의 승용차, 밴, 트럭 등의 디자인을 담당하였으며 그중 Escorl와 Scorpio승용차는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으며 Cargo트럭은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되었음
 - 1970년 이후에는 브라질, 호주에서 자동차제식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일본 마쓰다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런던 소재의 Design Council의 산업디자인 수상위원회 위원
 - 디자인관련 국제 세미나 세미나 및 회의 주재·참여

(나) '97 서울 국제 포장기자재전 개최

목 적

- 포장업체 상호간의 비교전시를 통한 포장기술 향상 및 새로운 포장소재·기술 개발 유도
- 포장라인의 자동화, 물류합리화 촉진 및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개 요

- 일 시 : '97. 5. 31(토) ~ 6. 3(화), 4일간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관
- 주 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 후 원 : 통상산업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방송공사
- 협 찬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대리점협회
- 전시내용
 - 전시품목 : 포장재료 및 용기, 포장기계, 포장재료 가공기기, 물류관련 기자재, 식품포장기계, 포장디자인 제품 등
 - 전시규모 : 7,309m²
 - 예상 참가업체수 : 총 140여개 업체
 - * '95 : 139개 업체(국내 50개, 해외 89개)
 - 예상 관람객수 : 약 25,000명 ('95 : 20,000명)
 - 부대행사 : 포장재 관련 각종 세미나
- ※ 동 행사는 '85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음

(다) '96 서울세계우수산업디자인박람회(2nd Seoul IID) 개최

목 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디자인 상품 및 작품 전시, 심포지움 개최등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 산업디자인 수준 제고
- 2001년 ICSID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준비

개 요

- 일 시 : '96.11.16.~11.20.(5일간)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대서양관
* 개막식 : '96.11.16.(토)10:30, KOEX 3층

행사내용

- 주 최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후 원 : 통상산업부,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 행사성격
 - 세계 각국의 디자인전문회사 및 단체, 교육기관 등이 참가하는 동양 최 대규모의 산업디자인관련 종합행사(2년마다 개최)

행사내용

- 예상 참가국 : 28개국 150여개사(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 '94행사시 세계 15개국 91개 업체 참가(해외 14개국 59개 업체)
- 부대행사
 - 유럽산업디자인교류전 입상품, 산업디자인역사, 한국전통문화등 전시
 - 세계산업디자인심포지움 개최
 - ICSID AMCOM(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의 아시아지역 이사회) 개최

개막식 행사

- 일시 및 장소 : '96.11.16. (토) 10:30~11:10, KOEX 3층
- 주요행사
 - 테이프 커팅 : 10:30 ~ 10:33
 - 전시회 관람 : 10:33 ~ 11:10
- 주요 참석인사
 - 손세일 통산위원장, 맹형규 신한국당의원, 김경재 국민회의의원
 - 각국 참가업체 및 기관대표(Uwe Bahnsen ICSID 회장 등)
 - 디자인관련 학계, 업계 인사 및 참가국 주한 외국대사 등

〈'94 서울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 개최〉

- 기간 및 장소 : '94.10.5(수)~13(목),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참가업체 : 15개국 91개 업체
 - 해외 : 14개국 59개 업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 국내 : 32개 업체 (디자인 전문회사 13개, 제조업체 19개사 등)

(라)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개최

목 적

-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을 국내에 유치하여 양국간의 활발한 문화 및 인적교류 도모
- 선진 환경조형물의 소개를 통한 건축 및 조형분야의 국내발전에 기여

개 요

- 일 시 : 96. 10. 22(화) ~ 10. 31(목), 10일간
- 장 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2층
 - * 개막식 : '96. 10. 22(화). 10:3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주 최 : 주한 스페인대사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까페드라 가우디 연구소, 까탈루냐 왕립미술아카데미, 동아일보사
- 후 원 :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공사,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협회, 평화방송
- 협 찬 : 대한항공, 분성물산
- 전시내용 : 총 72점(실물 40점, 축소모형 14점, 설계도면 10점, 사진 5점, 스케치 3점 등)

개막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96. 10. 22(화) 10:50
 -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주요행사
 - 개막식 테이프커팅(스페인 측에서는 국왕만 참석)
 - 전시품 관람
 - 진흥원과 가우디대의 협정조인식
- 주요 참석인사
 -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내외
 - 통상산업부장관, 외무부차관 등
 - 김수환 추기경, 동아일보사 김병관회장 내외 등
 - 명지대 고건총장, 홍익대 이면영총장 등

〈참고〉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 1857 : 스페인 카탈루냐(레우스)에서 구리세공인의 아들로 출생
- 1869 : 바르셀로나 대학 입학
- 1926 : 바르셀로나에서 건축가로 활동중 사망

가우디 건축 양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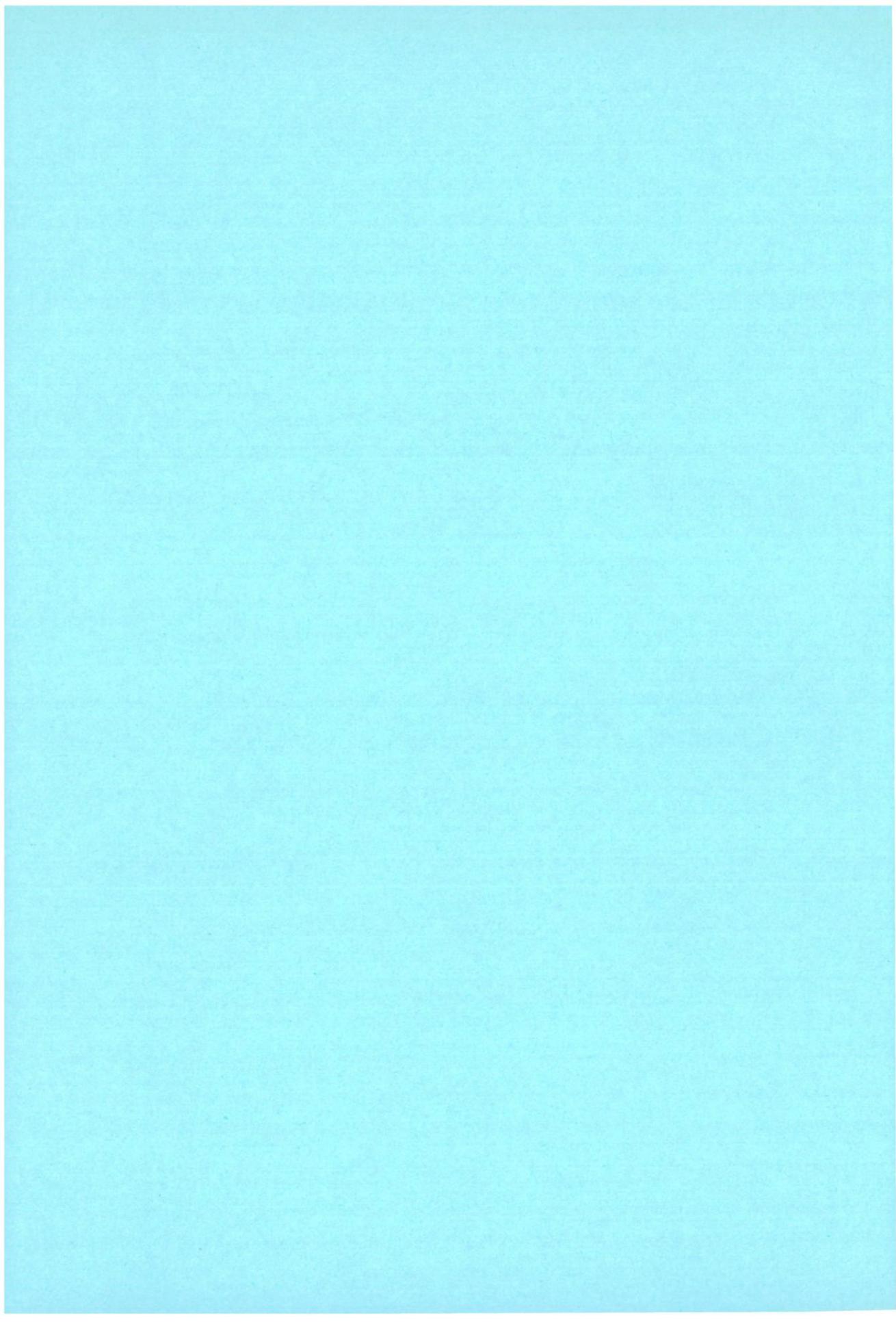
- 몇 가지의 뚜렷한 자연적·종교적 상징물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구조와 재료를 표현
- 건물의 형상과 표면에 산이 많고 해안에 자리잡은 카탈루냐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
- 곡선과 곡면으로 유기적인 구조체 창출. 건축전체가 복잡한 곡면으로 구성되고 자연주의에 철저한 태도로서 환상적 공간을 창출

안토니오 가우디의 주요 작품

- 성가정 교회(Sagrada Familia)
 - 가우디가 전 생애를 바친 계획으로, 1883년 이래 가우디가 사망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건축이 진행중인 교회로서 나선 기둥, 쌍곡포물선 지붕등이 복잡하게 상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음. 1960년대 많은 건축가, 초현실주의자 및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각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음

- 구엘 공원 (1900~1914)
 - 원래는 60채의 주택이 있는 정원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오늘날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기슭에 건설된 이 공원에는 산책로와 건축 등에 돌이나 세라믹 파편으로 모자이크한 곡선과 물결모양의 형태를 볼 수 있음.
- 밀라 저택 (1906~1912)
 - 바르셀로나의 중심부인 Gracia가에 위치한 이 저택은 뒤틀린 형태의 돌로 된 정면 때문에 La Pedrera(채석장)라고 불림. 발코니의 철격자 및 가우디의 특색있는 자연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굴뚝, 환기구, 공중에 걸린 듯한 계단이 있는 옥상등이 특징임
- 구엘영지 교회의 납골실 (1908~1917)
 - 바르셀로나에서 교외 Sabta Coloma de Cervello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무암으로 된 기울어진 기둥, 가우디의 자연주의적 기하학 형태에 따른 벽돌로 된 돔, 유리창 그리고 세라믹 장식등이 특징

〈업 무 참 고 자 료〉



1.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현황 관련자료

가. 전문인력 수급현황

○ 전공별 전문인력 현황

전 공	현인원 (명)	부족율 (%)	총 원 율 (%)		
			'93	'94	'95
전 체	1,399	21.2	12.4	9.0	6.1
제 품 디 자 인	1,065	20.4	13.6	8.9	6.6
시 각 디 자 인	152	40.1	10.5	10.1	7.0
환 경 디 자 인	45	7.8	8.9	12.2	12.5
기 타	137	8.0	5.8	6.9	2.6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은 1,399명으로 전체종업원의 0.65%를 차지

* 250개 제조업체(종업원수 : 216,500명)를 대상으로 조사

* 자료 : 93전문인력수요조사, KIDP, 1993

○ 교육기관별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추이

	대 학 원	대 학	전문대학	계
'89	378	3,090	5,734	9,202
'90	377	3,003	6,629	10,009
'91	377	2,961	7,126	10,124
'92	402	3,330	8,435	12,167

* 자료 : 산업디자인 128호, KIDP, 1993

○ 학력별 디자인전문인력 현황

전 공	현인원 (명)	부족율 (%)	총 원 율 (%)		
			'93	'94	'95
전 체	1,206	23.5	14.8	10.5	7.1
대학원 졸업	40	45.0	25.0	28.5	14.1
대학 졸업	776	20.7	13.0	11.2	7.0
전문대 졸업	390	26.9	15.9	6.4	5.8

* 자료 : '93전문인력수요조사, KIDP, 1993

○ 업체가 요구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항 목	빈 도	비 율(%)
디자인 개발 및 개선	93	50.3
바이어의 디자인 수용	55	29.7
광고 및 홍보	15	8.1
디자인 모방	10	5.4
디자인 자료 수집·분석	10	5.4
기 타	2	1.1
계	185	100.0

* 자료 : 산업디자인129호, KIDP, 1993

○ 경력별 인원 및 부족현황

구 분	현재인원(명)	부족인원(명)	부족율(%)
전 체	1,399	259	21.1
3년 미만	534	92	17.2
3년 이상	334	123	36.8
5년 이상	261	58	22.2
7년 이상	151	18	11.9
10년 이상	119	4	3.4

* 자료 : 산업디자인129호, KIDP, 1993

○ 학력별 취업율 및 산업디자인전문직 취업율

구 분	졸업인력 (명)	취업인력 (명)	취업율 (%)	디자인전문직 취업율(%)
전 문 대	8,435	4,935	58.5	39.1
대 학 학	3,330	1,666	50.0	49.4
대 학 원	402	402	100.0	100.0

* 자료 :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993

나.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설치 현황

○ 외국과 국내 디자인학과 소속단과대학 비교

구 분	디자인대학	미술대·예술대	공과대학	기 타
유 럽 6 개 국	49.6%	24.8%	10.5%	15.3%
국 내	3.0%	75.0%	4.0%	18.0%

* 자료 : 세계디자인대학목록서, 교육부, 1993

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일반현황

○ 일본 디자인전문업체와의 비교

한 국		일 본		일본에 대한 비율(%)	
업체수	제품디자인 업체 비율	업체수	제품디자인 업체 비율	디자인 업체	제품디자인 업체
876(50)	5.7%	3,000(240)	8%	29.2%	20.8%

* 자료 : 통상산업부, 1996

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현황

○ 공인전문회사의 분야별 현황

구 분	시 각	제 품	환 경	전 반
업 체 수	22개사	26개사	14개사	6개사
매 출	5-10억	4-5억	4-5억	5-10억

* 자료 : 통상산업부, 1996

○ 공인전문회사의 자본금 및 디자이너 현황

자 본 금			디자이너 수			종업원 수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25	32	11	15	38	15	26	36	6

* 자료 : 통상산업부, 1996

마. 세계 유명 디자인전문회사 현황

- 미 국 : Fitch Design Central
- 일 본 : GK Graphics
- 영 국 : Pentagram, Weaver Associates
- 독 일 : Neumeister Design
- 프랑스 : CarreNoir, Desgrippes

바. 자체 디자인 개발실태 관련자료

○ 30대 기업의 제품디자인 전담부서 현황

총계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		기타		없음
	실(부) 이상	과	실(부) 이상	과	실(부) 이상	과	실(부) 이상	과	
30	5	1	4	0	1	0	4	2	13

* 자료 : 통상산업부, 1993

○ 디자인 채택경로

(구성비 : %)

구 분	전체	구조별		규모별	
		경공업	중화학	중소기업	대기업
자체개발	40.9	29.2	49.3	39.1	45.2
바이어정보	36.5	54.3	23.3	41.1	24.9
경쟁사모방	10.8	9.2	12.1	9.6	14.1
외부개발의뢰	9.6	6.6	11.8	8.4	12.4
디자인사용계약	2.2	0.7	3.5	1.8	3.4

* 수출상품을 제조하는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자료 : 수출산업실태조사, 무역협회, 1995

○ 디자인개발 저해요인

(구성비 : %)

구 분	전체	구조별		규모별	
		경공업	중화학	중소기업	대기업
개발비용과다	22.5	24.0	21.0	23.9	16.9
개발기반취약	21.3	16.5	24.8	21.2	23.8
투자순위열위	19.6	16.5	21.7	17.7	25.5
거래선디자인	19.2	27.3	14.0	19.9	16.9
기대효과미흡	17.5	15.7	18.5	17.3	16.9

* 자료 : 수출산업 실태조사, 무역협회, 1995

○ 디자인개발 추진방법

(구성비 : %)

구 분	전 체	구 조 별		규 모 별	
		경 공업	중 화 학	중소기업	대 기 업
상 시 전 담 추 진	39.6	35.8	41.3	32.5	67.2
상 시 비 전 담 추 진	27.3	32.5	23.5	30.7	14.8
필 요 시 추 진	19.8	16.3	23.5	23.4	4.9
추 진 계 획 없 음	13.3	15.4	11.7	13.4	13.1

* 자료 : 수출산업실태조사, 무역협회, 1995

○ 비가격 부문에서 국산제품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독창성	견고성	다양성	형태 및 색상	유행감각	브랜드 이미지	포 장 디자인
비율(%)	38.8	37.4	34.8	27.6	27.4	19.4	11.4

* 자료 :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포장 국제경쟁력조사 보고서, KIDP, 1992

○ 주요품목별 불량률 비교

품 목	수출대상국	불 량 률 (%)	
		한 국	경 쟁 국
직 물	사 우 디 아 라 비 아	5-10	1-2(일본)
아나로그 손목시계	이 집 트	2	0.4-0.5(일본)
봉 제 완 구	그 리 스	5	3(독일)
V T R	스 위 스	10	2-3(일본)
승 용 차	파 테 말 라	10	3(일본)
자동응답 전화기	미 국	3-4	1-2(일본)

* 자료 :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분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2

사. 외국과의 디자인수준 비교

한국=100

구 분	일 본	경 쟁 국	후 발 개도국
전 산 업	125.1	98.0	79.1
1 차 산 업	124.4	97.1	76.6
경 공 업	126.2	98.2	77.8
중 화 학 공 업	123.7	97.8	81.4

* 자료 : 무역협회, 1992

○ 국산품과 선진국제품의 디자인 부문 비교

(구성비 / %)

구 分	전 체	구 조 별		규 모 별	
		경 공 업	중 화 학	중소기업	대 기 업
다 소 우 수	14.9	14.5	14.2	16.5	10.6
동 등 수 준	38.0	36.1	39.9	39.5	34.3
다 소 열 세	39.6	41.8	38.0	37.9	43.8
매 우 열 세	7.5	7.6	7.9	6.1	11.3

* 자료 : 무역협회, 1995

○ 우리나라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

(단위 : %)

구 分	우 위	유 사	열 위	계
선 진 국	10.3	27.0	62.7	100
경 쟁 국	31.8	34.1	34.1	100

* 자료 : 산업디자인 129호, KIDP, 1993

아. 디자인관련상품 수출입 추이

주요 디자인상품 수출(수입) 증가율 추이 비교

(단위 : %)

품 명	'92	'93	'94	'95	'96
승용차	18.4 (39.9)	53.4 (△17.7)	14.9 (154.2)	62.0 (120.8)	25.5 (65.1)
자전거	1.0 (0.1)	31.3 (4.0)	△7.6 (171.9)	△40.6 (81.3)	△19.0 (53.7)
P C	△53.9 (△23.5)	13.7 (△2.5)	23.3 (7.7)	△29.1 (21.5)	△26.5 (40.3)
라디오	49.5 (△16.2)	3.8 (22.2)	△3.4 (△36.1)	146.2 (96.5)	△72.4 (158.8)
무선전화기	22.3 (△11.4)	39.9 (75.3)	86.8 (99.4)	35.2 (16.3)	△11.6 (38.3)
섬유제품	△7.7 (9.2)	△7.9 (19.7)	△6.7 (71.8)	△8.8 (49.9)	△14.1 (28.0)
신발	△17.0 (22.4)	△27.5 (35.1)	△22.9 (50.8)	△15.4 (52.8)	△18.0 (34.8)
가구	△18.6 (22.2)	8.2 (29.4)	27.2 (64.0)	11.1 (41.1)	△1.0 (36.3)
금속제기	△6.5 (10.3)	3.1 (△7.0)	6.3 (12.5)	6.9 (39.2)	△9.8 (47.1)
화장용품	14.3 (△13.3)	7.6 (28.5)	35.9 (74.1)	10.8 (56.0)	15.0 (69.4)
완구류	△31.7 (22.9)	△33.6 (44.1)	△26.5 (26.6)	△7.9 (23.8)	△18.6 (35.7)

(단위 : %)

품명	'92	'93	'94	'95	'96
신변장식품	△1.4 (5.1)	1.5 (84.0)	△2.2 (26.9)	△8.1 (27.6)	△1.8 (23.0)
우산 및 양산	△32.6 (△9.9)	△56.9 △(90.9)	△10.7 (15.5)	△36.4 (712.0)	△25.6 (193.2)
안경테	23.1 (22.3)	22.7 (12.0)	17.9 (△4.2)	19.0 (63.0)	1.6 (31.5)
시계	8.8 (△9.5)	10.6 (31.4)	△2.4 (35.2)	3.4 (42.6)	11.9 (13.4)
문구류	7.9 (△1.0)	7.0 (17.7)	13.2 (9.1)	18.6 (33.7)	△1.9 (2.5)
벽지	△33.2 (24.9)	367.0 (9.4)	1,000이상 (12.7)	△62.0 (△0.5)	△49.5 (11.6)
타일	△15.0 (△17.5)	11.1 (△22.9)	10.7 (△8.6)	41.0 (16.5)	18.1 (25.7)
도자제품	△27.6 (△20.1)	△35.3 (43.4)	△23.3 (55.0)	△37.2 (△7.7)	△28.3 (△6.6)
식기류	△33.5 (△31.0)	△26.4 (3.6)	△10.1 (25.3)	△16.3 (13.2)	△19.3 (△12.8)
유리제품 (식기.장식품)	5.0 (△4.5)	△3.6 (8.9)	1.9 (29.6)	13.4 (40.7)	6.7 (12.2)
악기	5.3 (16.4)	7.8 (2.2)	4.0 (17.5)	20.9 (19.8)	△7.6 (△10.8)
운동구	2.4 (53.8)	△17.9 (31.3)	△6.1 (4.5)	38.6 (26.9)	16.3 (15.4)

(단위 : %)

품 명	'92	'93	'94	'95	'96
가 방	△19.8 (△24.1)	△32.0 (21.3)	△7.0 (186.1)	△6.2 (107.7)	59.2 (37.4)
가 발	△4.5 (2.3)	△27.8 (△44.1)	△18.6 (△6.3)	△2.4 (28.2)	△9.8 (4.0)
공 예 품	△18.6 (7.2)	△11.9 (4.8)	△0.8 (20.7)	7.4 (17.4)	△34.6 (6.9)
보석 및 귀금속제품	2.4 (△12.0)	△8.0 (23.9)	△7.8 (8.6)	19.9 (48.1)	2.8 (4.0)
향 豆	△14.5 (△11.5)	54.1 (△7.5)	429.9 (29.7)	△43.1 (△4.0)	△40.8 (5.6)
주류 (위스키)	577.7 (7.7)	△49.9 (7.3)	△38.7 (68.4)	713.7 (6019)	△50.9 (53.6)
냉장고	28.9 (39.1)	19.7 (1.5)	8.3 (76.2)	7.5 (39.3)	21.4 (6.8)
세탁기	26.5 (△12.8)	13.0 (△2.6)	48.2 (41.4)	48.7 (25.5)	20.9 (9.6)
칼라 TV	△4.2 (△53.7)	△2.7 (17.6)	17.1 (23.9)	12.1 (97.9)	16.1 (65.4)
진공청소기	47.5 (△20.3)	△0.2 (64.7)	52.7 (77.2)	98.3 (40.8)	71.1 (13.3)
유선전화기	△6.3 (△3.3)	36.4 (181.9)	△9.0 (32.4)	10.7 (0.9)	△13.4 (△9.3)
조명등기구	△7.0 (△4.9)	2.1 (24.4)	42.5 (22.9)	△13.0 (73.5)	△2.9 (△0.9)

자. 주요 디자인 관련업체의 디자인실 방문결과

디자인관련업체 방문실적 및 업체현황

일자	업체명	접견자	종업원수(명)	디자이너(명)
'96. 5.	삼성디자인연구원	박재관 실장		
'96. 5.	삼성패션연구소	손훈재 이사		
"	SADI	임희주 원장		
'96. 6	LG전자 연구소	김철호 소장		170
'96. 6. 11	기아자동차 연구소	박제혁 소장		
'96. 6. 12	(주)모닝글로리	전재득 전무	250	100
'96. 6. 19	(주)하이크리에이션	우영태 대표	300	15
'96. 6. 26	(주)신영와코루	구자하 전무	1,000	26
'96. 7. 2	(주)이신우	이신우 실장	350	50
'96. 7. 10	(주)로얄 B&B	장재희 부사장		10
"	(주)기린실업	조윤희 부사장		
"	나라섬유	김인식 대표		
'96. 7. 18	(주)212디자인	온병수 대표	12	8
"	(주)APEZX	양찬석 대표	10	7
'96. 7. 25	(주)태평양디자인센터	조용현 상무	91	46
'96. 8. 16	(주)디자인파크	김현 사장		
"	금강제화(주)	이상원 부장	450	30
'96. 8. 19	삼성디자인연구원	박재관 실장	18	
'96. 8. 21	LG화학 디자인연구소	김종성 소장	88	84
'96. 8. 26	한국타이어(주)	최광 팀장	5,000	6
'96. 8. 27	LG화학 디자인연구소	성재갑 부회장	88	84
'96. 8. 29	제일기획(주)	오영곤 이사	1,100	128
'96. 9. 5	(주)신세계백화점	박영준 팀장	110	20
"	(주)디자인신세계	김순복 이사		

(주) 모닝글로리 개발실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한 중 석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내)
- 인원현황 : 250명 (디자이너 100명)
- 생산품목 : 문구류 (지제품, 필기구, 공산품, Ceramic등 3,000여 가지)
- 매출목표 : 600억원 (수출 : 8백만 \$ → L.A, 시애틀, 뉴욕, 워싱턴등)

2. 접견자

- 전재득 전무이사
- 이애리 개발본부 개발1실장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우리나라 문구류의 디자인 수준
 - 현재 국제적인 전시회 또는 판매시 경쟁국인 대만, 싱가폴보다 우위에 있으며, 선진국과는 대등한 위치에 있음.
(필기구류, 문구용 공산품은 기능면에서 선진국에 조금 떨어짐)
- 건의사항
 - 산·학 협동체제의 구축
 - 디자이너들이 제품의 소재, 특성 등을 잘 알아야 소비자가 원하는 확실한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할 수 있는데, 산·학 협동체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틀에 박힌 도안에 그치고 있음
 - ※ 디자이너는 학자처럼 학문에 의하여 전적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에 맞추어 창작하는 것임
 - 디자인보호 제도의 정착
 - 국내의 군소 업체들이 인기상품을 쉽게 도용 판매함에 따라 자사의 이미지 저하

(주)하이크리에이션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우영태
- 설립일자 : '88. 2. 28 (한일 합작투자)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15 중앙빌딩내
- 매출액 : '95년 430억원 (내수 위주)
- 인원현황 : 300명 (디자이너 15명)

2. 접견자

- 우영태 대표이사
- 각 브랜드별 실장(주임 디자이너) 6명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수준
 - 모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면은 선진국대비 60-70%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디자인이 매출이나, 경영측면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디자인과 영업력 각각 50%씩으로 보고 있으나, 점차 디자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건의사항
 - 디자이너 교육을 위한 혁신이 필요
 - 현재 각분야에서 디자인붐이 일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디자이너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디자이너의 재교육을 위하여 쉽게 접할 수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주)신영와코루

1. 업체현황

- 회장 : 이운일, 대표이사 : 이의평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54
- 매출액 : '95년 1,100억원 (수출 : 1,500만 \$)
- 인원현황 : 1,000여명 (디자이너 26명), 대부분이 영업사원

2. 접견자

- 구자하 전무이사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대비 8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재면에서는 일본, 프랑스(레이스 부분)와 이태리(세번수 면직물)가 우수하여 수입에 의존
- 디자인이 매출이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여성내의류는 디자인이 제품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가 디자인이고, 색상, 가격순으로 구매성향이 있음
- 건의사항
 - 동종업계(경쟁사)에서 전문인력 스카웃이 많아 자사에서 개발한 경영 노하우 및 디자인을 Copy하는 경우가 심함
 - 7월 이후부터 출원공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레이스 패턴 등을 등록하여 도용을 막을 생각임

(주)이신우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박 주 천(현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신우씨의 부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6-7
- 인원현황 : 350명 (디자이너 50명)
- 회사연혁 : 1983.7월 창립 (자본금 2억5천 → 10억원 증자)
- 매출액 : '95년 650억원 (수출 : 매출액의 3% 미만)

2. 접견자

- 이신우 대표디자이너
- 나명근 M.D팀장, 유광현 해외사업부 주임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업체의 전망
 - 5년전 우리나라에 컨버터(원단소재의 기획, 개발 등을 담당)가 생긴 후 소재의 개발에 일대변혁을 가져왔으나 최근 신소재, 원단 등의 수입급증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음
- 패션선진국인 이태리 불란서 대비 패션디자인 수준
 - 우리나라는 아직은 미숙하나, 잠재된 기운이 많은 청년기로 보고 있으며 그수준은 60~70%에 이른다고 보고 있음
 - (주)이신우는 패션의 본산인 파리에서 경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수준이라고 보고 있음. 패션수준은 어느 개인의 능력으로 높은수준에 오를 수 없으며 국내의 패션수준이 뒷바침해야 함
- 디자인이 매출이나, 경영측면에 미치는 영향
 - 우리회사의 연간매출은 약 650억원 정도로 디자인에 의한 영향력이 60% 이상으로 광고나 영업력보다 크게 높다고 봄

(주)로얄B&B 방문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박 엽 래
- 소재지
- 디자이너 : 10여명
- 생산품목 : 드레스셔츠, 캐쥬얼셔츠 등

2. 접견자

- (주)로얄 B&B 장재희 부사장 (상품기획본부장)
- (주)기린실업 조윤희 부사장, 이인근 외주관리차장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인 수준
 -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 수준으로 패션업 수준이 아니며 모든 생활관습등 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때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일본의 70년대 후반수준으로 보고 있음
- 디자인이 회사의 경영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주로 대기업은 영업력, 중소기업은 디자인력에 사활을 걸고 있음 그 예로 이신우의 경우 영업력은 0%에 가깝고 디자인력은 80%정도이나, 나산, 신원, 대현 등은 영업력이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애로사항
 - 인건비 상승 및 기능인력 구득난으로 어려움
 - '96년도 12.7% 임금인상으로 매당 3,000원 정도의 인건비 소요
 -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근무 기피
 - 국산 원단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원단 사용 증가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1. 업체현황

회사명	(주)212디자인	(주)APEX
대표이사	은병수	양찬석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9-5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7-22 정유BD 403호
설립일자	'89. 2. 12	'91. 6. 1
자본금	50백만원	70백만원
매출액 ('95)	16억 8천만원	5억원
인원현황	12명(디자이너 8명)	10명(디자이너 7명)
전문분야	제품디자인	시각, 포장디자인

2. 접견자

- (주)212디자인 은병수 사장, (주)APEX 양찬석 사장, 이종욱 제작이사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디자인전문회사의 현재 동향
 - 각 기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디자인부서를 설치하여 자체 개발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으며 전문회사에 발주하는 건이 점차 줄고 있음
- 제품디자인에서 양산까지 소요되는 기간
 - 제품 디자인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양산까지는 2년이 넘게 소요되며 견본품 제작을 위한 재질이 외국제품에 못미침
- 디자인보호를 위한 의장법 개정에 대한 견해

- 의장등록시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제소시에도 제소절차가 까다롭고 시
간이 많이 소요됨
 - 제품의 Life Cycle은 짧은 반면 등록심사기간은 1년이상 소요되어 실
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등록된 물건에 대하여는 심사기간중이라도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망
- 일부계층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을 일본의 7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
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일부분야는 일본의 70년대 중반이라고 볼수 있으나, 인식이 천차만별
임. 디자인의 변화속도가 큰 가운데 정책적인 의지보다는 자구노력에
의거 변화한다고 보고 있음
- 디자인 수주방법 및 금액
 - 50%정도는 공인전문회사임을 알고 빙아오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다른
유인물 및 광고 등으로 회사를 알고 방문하고 있으며, 캔류의 수주금액
은 보통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이며, 1가지 디자인에 약 100일이
소요됨
-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이 낮은 이유
 - 현재 각대학에서 페키지디자인과가 설치된 학교는 없고, 포장디자인과
목이 있는 학교도 별로 없어 고급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없음
- 건의사항
 - 디자인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유통서
비스업과 동일시 취급되고 있으니, 산업서비스 업종으로 별도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디자인 업체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공업발전기금 등 정부융자금을 담
보없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요망

(주)태평양 디자인연구센터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이 능 회 대표이사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1
- 매출액 : '95년 3,500억원(수출은 전체 매출액의 1% 미만)
- 연구센터 인원현황 : 91명[순수디자이너 : 46명(제품:35명, 시각:12명)]
- 생산품목 : 화장품, 생활용품 등

2. 접견자

- 상품개발지원본부장 조용현 상무, 김황룡 부장, 김철호 부장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상품에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중요도는 50~70% 정도로 보고 있으며,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25% 수준
- 현재의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및 향후 전망
 - 우리나라의 디자인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80%정도로 보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봄
-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대비 화장품류 디자인 수준
 - 화장품의 디자인력은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일본 제품이 소재가 다양하고 가공(금형, 가공, 마무리 등) 기술면에서 앞서고 있음

금강제화(주)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지 헌 균 대표이사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1339번지
- 매출액 : '95년 3,000억원(수출은 극히 미미)
- 인원현황 : 약 450명[디자이너 : 75명(미술전공 디자이너가 약 60%)]
- 생산품목 : 남녀 구두, 악세사리, 패션의류 등(토탈패션)

2. 접견자

- 상품기획팀 이상원 부장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제화디자인은 외관과 질감이 복합되어 조화하는 분야로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정통제품인 “리갈”의 경우 40%, 여화 및 캐쥬얼화(Young 브랜드)는 70% 이상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및 향후 전망
 - 우리나라 제화류의 디자인(설계, 외관적 질감 등) 수준은 국제적수준으로 자체 설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제화류 디자인 수준
 - 선진국의 유명제품(패션 또는 편안함으로 명성이 있는 제품)과 디자인 수준을 굳이 비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로 인하여 70%정도로 보고 있으며, 제조원가 수준은 비슷함

삼성디자인 연구원

1. 업체현황

- 원 장 : 김 일 태 전무이사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70-7 (보전빌딩)
- 인원현황 : 18명

2. 접견자

- 지원실장 박재관, 경영지원실 김태균과장, 안삼수 Manager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삼성디자인연구원 설립 : 삼성그룹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 혁명을 선도해 나아갈 디자인연구원을 '94년 미국의 Art Center 협조로 설립을 추진하여 '95.9월 개원
 - 교육대상 : 삼성그룹내 전자 소그룹 유경력자(경력 2~4년)를 대상으로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실시
- 졸업생들에게 학위수여 방안 연구
 - 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시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정규대학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In house 교육도 좋지만 절반정도의 인원은 비 삼성인으로 선발하는 것 이 바람직
 - 삼성의 교육시설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을 고려중
- 현 대학의 디자인교육 실태가 이론위주의 교육이므로 IDS의 좋은 Curriculum을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전국에서 32,000여명 배출)

LG화학(주) 디자인연구소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성 재 갑 부회장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44-13번지
- 매출액 : '95년 33,157억원, ('96 계획) 40,000억원
- 인원현황 : 88명(디자이너 84명)
- 생산품목 : 건축 마감재(욕조, 바닥재, 벽지 등), 화장품, 식품, 의약품, 기타 생활용품

2. 접견자

- 디자인연구소장 김종성 이사
- 생활건강 CU부문 이영주 책임디자이너(이사)
- 화학 CU부문 장호영, 이종완 책임디자이너(부장)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화장품의 경우 40~50%, 생활용품도 내용물의 실용성이 주가 되므로 40%, 인테리어 마감재의 경우 65% 정도로 판단됨
- 각 분야별로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 화장품의 선진국은 프랑스, 일본으로 단순히 디자인 만을 판단할 때 70~80% 수준이나, 용기의 재질, 금형, 마감처리등 디자인 지원요소를 감안하면 50%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생활용품은 60~70%, 인테리어 디자인도 시각디자인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협력업체의 기반기술(인쇄기기 및 기술), 디자인 장비, 창의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30% 수준임

한국타이어(주)

1. 업체 현황

- 대표이사 : 홍 건 희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 매출액 : '95년 8,500억 원
- 인원현황 : 약 5,000명(디자인광고팀 인원 : 14명)
- 생산품목 : 자동차용 타이어, 알루미늄 휠

2. 접견자

- 디자인광고팀 최 광 팀장, 노태진 선임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타이어 디자인이 매출신장에 기여하는 정도
 -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각각 다르나 평균적으로 50~60% 수준임
-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 타이어의 선진국이라면 프랑스(미쉐린), 독일(콘티넨탈), 일본(브리지스톤) 등이 있음
 - 외국의 타이어 선진업체들은 우리나라의 디자인수준을 선진국대비 90%정도로 보고 있으나, 미적감성 및 잠재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건의사항
 - 독창적인 우리상품 개발시 창작품에 대한 의장특허 등 개인별 보호가 필요
 - 실용신안, 의장 등 특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의 모호
 - 외국의 유명메이커와의 회합기회 마련
 - 정부차원에서 업체간의 기술교류, 정보교환 등을 위한 기회 마련

(주)제일기획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윤기선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50 삼성B/D
- 매출액 : '96년 취급고 : 7,500억원, 매출액 : 2,750억원
- 인원현황 : 약 1,100명 (디자이너 : 128명)

2. 접견자

- 크리에이티브 센터장 오영곤 이사
전략기획팀장 한승섭국장, 연구팀 박태수 부장, 이상준 카피디렉터등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및 전망
 -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올해를 “디자인 혁명의 해”로 설정하고, 경쟁력은 곧 디자인이라는 구호아래 선진화 작업 추진
 - '80년대가 기술의 시대이었다면, '90년대는 기술과 디자인이 통합된 시대이며, 2000년대는 디자인위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
 - 광고분야는 대량생산 위주로 소비문화가 발달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선진국 수준이며, 미국의 Interpublic Group of Co.등은 년간 매출이 제일기획의 20배인 5조원, 인원은 7배인 7,000여명 정도
- 건의사항
 - 방송광고 거래제도 개선 및 광고대행 수수료 현실화
 - 공익자금조성과 지원정책 제도개선
 - 방송광고작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개선
 - 중소 광고대행사에 대한 금융세계 개선
 - 광고매체 대행료에 대한 실질채권 인정
 - 광고회사 취급고의 매출인정 등

(주)신세계백화점

1. 업체현황

- 대표이사 : 권 국 주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B/D 16층
- 인원현황 : 전국 매장포함 4,500명 (디자이너 : 38명)

2. 접견자

- (주)신세계백화점 그래픽팀 박영준팀장
- (주)디자인신세계 김순복이사

3. 주요의견 교환내용

- 백화점내에서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큼
 - 총 매출액의 2.5~3%정도가 광고선전매체비 및 판촉비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측정하기가 곤란함
- 외국의 백화점과 국내 백화점 디자인 수준
 - 한국을 100%로 본다면 일본은 200~300% 수준임
- 건의사항
 - 정부주관 자문위원회 등에 교수보다 산업현장의 유능한 디자이너 들을 적극활용 요망
- 중소 디자인업체에 대한 자금 및 세제 등 지원 요망
- 각 기업들의 임원급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외디자인(기업마트, 광고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 국외 디자인업계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노하우를 습득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부여

2.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관련자료

가. 디자인 관련상품의 국내외 가격비교

○ 같은 종류의 제품도 디자인개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 넥타이, 블라우스 국내 판매가격

(단위 : 원)

패션·디자인등급	下	中		上	
		비교	비교		
〈넥 타 이〉					
한 국 산(실크)	5,000	(100)	15,000	(300)	43,000
이 태 리 산 (〃)	—		42,000	(840)	60,000
〈블 라 우 스〉					
한 국 산(실크)	30,000	(100)	100,000	(333)	300,000
이 태 리 산 (〃)	—		240,000	(800)	780,000

* ()내는 비교지수, 한국산 下등급 제품가격 = 100

* 자료 : 통상산업부, 1994. 11.

○ 넥타이, 블라우스 대일수출 평균가격

(단위 : ₩)

구 분	한 국 산	비 교		이태리산	비 교
		비교	비교		
넥 타 이(실크)	545	(100)		1,591	(292)
블 라 우 스 (〃)	4,391	(100)		16,860	(384)

* ()내는 비교지수, 한국산 가격 = 100

* 자료 : 통상산업부, 1994. 11.

○ 미국의 국별 안경테 평균수입가격

(단위 : US\$ /doz)

국 별	1993	1994	1995
이 탈 리 아	150.2	149.8	148.2
일 본	168.5	196.9	212.4
프 랑 스	149.9	139.6	154.9
홍 콩	31.3	54.4	75.4
한 국	48.6	51.7	57.4
중 국	26.4	33.0	28.7

* 자료 : World Trade Information Service, 1996

○ 자동차산업의 경우, 그 기능면에 있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디자인이 제품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됨(자동차의 평균 제품수명주기는 약 3년으로 조사됨)

* 70년대까지 디자인에서 우위를 점했던 유럽의 자동차생산기업들이 80년대 들어 디자인보다 제품의 성능이나 기술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기간 디자인개발에 주력한 일본과 미국에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당함

* 80년대말부터 유럽의 자동차생산기업들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디자인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수출량의 증대를 이루었음

○ 주요국의 자동차수출 추이

(단위 : 천대)

구 분	독 일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일 본	미 국
'60	983	581	716	204	39	323
'71	2,293	1,631	916	681	1,779	487
'81	2,153	1,861	197	497	6,048	718
'91	2,340	2,421	702	806	5,753	871
'94	2,410	2,157	715	670	4,460	1,087

* 자료 : 세계자동차산업, 기아경제연구소, 1996

나. 디자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

〈영국기업의 디자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의 예〉

- 제품출하시 평균 15개월만에 투자비용 회수(전체프로젝트중 41%는 1년 이내에 회수됨)
-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됨
 - 성공적 프로젝트의 소요비용 : 평균 20,000파운드
- 프로젝트 추진이전에 비해 평균 41%의 판매고 증진을 가져옴
- 추진된 프로젝트중 74%가 수출경쟁력제고 및 국제수지향상에 기여
- 프로젝트 완결후 90%가 회사에 이익실현

* 자료 : The Open University, Design Council, 영국, 1991

다. 디자인이 상품판매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의 디자인 수준

구 분	디자인 의존도(%)	현 수준(%)
승용차	70-80	50-60
가전제품	70-80	60-70
의류 (패션의류)	50-60 (60-70)	50-60 (60-70)
문구류	80-90	70-80
화장품	50-70	70-80

* 자료 : 디자인관련 제품생산업체 간부들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통상산업부, 1996.6
주) 1. 디자인 의존도 : 조사시점에서 소재, 기술, 영업능력, 디자인 등 상품의 매출신장 요인중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
2. 현수준 : 해당업종의 선진국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
(승용차 : 미국·일본·독일, 가전제품·문구류 : 일본, 의류 : 프랑스,
이태리)

3. 산업디자인관련 주요위원회 및 위원 명단

가.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설립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 통상산업부장관(위원장)
- 위원 : 재정경제원,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차관 또는 청장, 산업디자인 또는 이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및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나. 산업디자인센터 설립위원회(임기 : '96.3-12월)

위원장 박재윤(통상산업부 장관)

〈자문위원회〉: 15명

위원장 조영제(서울대 교수, 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장)

위원 권명광(홍익대 교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김기문(로만손 사장)

박병재(현대자동차 사장)

박용정(한국경제신문 사장)

부수언(서울대 교수,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회장)

신홍순(엘지패션 사장)

유명식(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회장)

유호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원장)

이순종(국민대 공업디자인과 교수)

이순혁(이화여대 생활미술과 교수)

이해민(삼성전자 대표이사)

임종웅(농심디자인 실장,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정경연(홍익대 교수,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회장)

정경원(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과 교수)

〈기획위원회〉: 5명

위원장 추춘석(통상산업부 차관보)

위원 이영희(재정경제원 예산심의관)

이원우(교육부 대학교육지원국장)

채덕석(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

박영기(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장)

〈실무위원회〉: 10명

위 원 장 이일규(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과장)

위 원 표재호(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서기관)

최남호(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사무관)

김은경(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주무관)

자문위원 권은숙(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과 교수)

금기숙(홍익대 석유미술과 교수)

김 혁(디자인파크 대표)

은병수(212디자인 대표)

이순인(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국제협력부 부장)

장동훈(이화여대 정보디자인과 교수)

산업디자인센터설립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부활동

〈산업디자인센터설립위원회〉

- 제1차('96.5.4) : 산업디자인센터의 설립 추진계획 논의
 - 제2차('96.6.1) : 산업디자인센터의 기능 및 조직(안) 논의
 - 제3차('96.8.27) : 산업디자인센터 설립계획 논의

〈산업디자인센터설립 실무위원회〉

- 제1차(4.27) : 새로운 디자인진흥 중심기관 설립의 필요성 및 센터의 개념에 대한 토의
 - 제2차(5.11)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업무현황 파악 및 동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 제3차(5.18) :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발전방향 및 지원방안 토의

- 제4차(5.25) : 산업디자인센터 설립 및 단체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련단체대표들과의 토의 후 센터의 주요기능별 업무내용 및 조직(안) 토의
- 제5차(6. 8) : 산업디자인센터의 주요기능별 업무내용과 조직안에 대한 합의도출
- 제6차(6.15) : 산업디자인센터의 위치, 건물규모 및 예산관련 토의
- 제7차(6.22) : 산업디자인센터의 세부조직 및 시설내용(안) 토의
- 제8차(6.24) : 산업디자인센터설립 관련 법령개정방향 및 빌딩건립이전 단위기관 설립방안 토의
- 제9차(6.29) : 산업디자인센터 설립계획(안) 내용 수정·보완

다.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및 건립사업단

〈건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노장우(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원장)
 위 원 박용정(한국경제신문 사장)
 (14명) 조영제(서울대 교수, 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권명광(홍익대 교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장)
 부수언(서울대 교수,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회장)
 정경연(홍익대 교수,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회장)
 김태종(그린디자인대표,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장)
 이승근(새암디자인대표, 한국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장)
 박종서(현대자동차 디자인연구소장)
 박영규(용인대 예술대학원 원장)
 한도룡(홍익대 교수)
 김명석(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석철(아키반설계사무소 소장)
 이일규(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장)
 김인환(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건립사업단〉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내에 설치·운용
 - 김인환 기획관리본부장, 김병식부장, 이권희 과장 등

라. 산업디자인 발전심의회

- 조영제 서울대교수(위원장), 김철수 국민대교수, 이순혁 이대교수, 신동소 서울대교수, 이승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장, 김태종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장, 임동준 한국포장협회장, 김철호 엘지디자인종합연구소장, 김청 (주)한선 대표이사, 이정일 (주)동선 상무, 부수언 한국산업디자인협회장, 정경연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장
-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장, 재정경제원 경제개발예산심의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기업지도본부장

마.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 사업 평가위원회

성명	소속	지도분야
곽원모	중앙대학교	제품디자인
김지희	대구 효성카톨릭대	제품디자인
김철수	국민대학교	제품디자인
박한유	전KIDP본부장	제품디자인
부수언	서울대학교	제품디자인
안종문	홍익대학교	제품디자인
이수봉	동아대학교	제품디자인
주송	IDN	제품디자인
한도룡	홍익대학교	제품디자인
나재오	단국대학교	시각포장
문수근	서울산업대학교	시각포장
박종운	조선대학교	시각포장
이하영	뷰애드디자인	시각포장
김교만	서울대학교(명예)	시각디자인
김지철	세종대학교	시각디자인
봉상균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
이인자	경기대학교	시각디자인
이순혁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
이창렬	KIDP본부장	공통부문
이일규	통상산업부	공통부문

바. 산업디자인지도사업 주요지도위원

○ 제품분야 주요지도위원

지역	성명	소속
서울	최박김이이최서유이이정김윤손조정이이윤김박문조박김조홍고류	한 I P & P 누 뉴 디 디 셔 앤 이 인 인 프 홍 G G I I 대 아 아 아 엠 포 포 프 S 전 주 다 D P 디 티 자 프 프 업 자 문 러 랜 대 I I 파 모 자 디 람 이 테 아 디 맥 름 리 리 북 성 전 코
전충부	북청산	N 인 스 인 로 대 이 인 대 스 서 학 D D 워 I 형 인 존 크 이 인 스 서 서 E 학 대 스

○ 시각(포장) 분야 주요지도위원

지역		성명	소속
경북		강성건	김천전문대학
서울		강용훈	V I D A K
대구		고재열	영남전문대학
경북		권영수	경주전문대학
서울		김광식	V I D A K
부산		김광일	동의대학교
부산		김기호	에이스팩
서울		김남훈	씨드디자인
서울		김덕주	삼신서플라이
전북		김병옥	군산대학교
서울		김상오	V I D A K
서울		김수영	상명대학교
대전		김재민	C A C
서울		김천	퍼비드
서울		김철중	레드인터내셔널
서울		김태종	그린디자인
광주		김형중	세건임팩트
전북		김형호	원산업디자인연구소
경남		김혜경	워드디자인
서울		노미선	서울산업대
서울		노병일	남서울산업대학교
서울		소병규	S W C
부산		손점옥	에이스팩
대전		신언모	충남대학교
경남		안병진	동서공과대학

지역		성명	소속
서부	울산	안윤수재현이이이이이이	KPDA
서울	울	은재식재정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동래여자전문대학 씨드디자인
서울	울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대원전문대학
서울	울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울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남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VIDA
서울	울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공주대학 디자인하우스
서울	북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인덕전문대학 교드
서울	전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C
서울	울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VIDA
서울	남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울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북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전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서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수원여자전문대학 신성전문대학
서울	경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인덕전문대학 교드
서울	서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리더컴
서울	경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인덕전문대학 교드
서울	서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대구대학교
서울	경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대디자인
서울	서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경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KPDA
서울	서	숙근성정식열재희우구길영준군규진희회환영명진숙선규식리현	C&COM

사. 기타 각종위원회의 디자인분야 위원

(1) 제3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집행위원회('97년)

성명	소속 및 직위	부문	연령	비고
노장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위원장
부수언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제품	59	초대 디자이너
김덕겸	숙명여대 공예학과 교수	제품	56	"
이건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제품	53	"
권명광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시각	55	"
백금남	성균관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시각	49	"
이효일	성신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	시각	59	"
유영배	세종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환경	48	관련 교수
장윤호	서울디자인센터 대표	포장	54	관련 전문회사
김광현	한양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포장	62	관련 교수
백만기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장			주최기관

(2) 제32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회('97년)

제품디자인

NO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령	비 고
1	부수언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59	- 초대디자이너
2	김영세	이노디자인센터 대표	46	- 재미디자이너(특별위촉)
3	김철호	LG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장	50	- 초대디자이너
4	민경우	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50	- 초대디자이너
5	박종서	현대자동차 디자인실장	50	
6	신명철	대구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50	- 초대디자이너
7	신학수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59	- 관련분야 전문가(인간공학)
8	이승근	새암디자인 그룹 대표	41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회장
9	이순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본부장	47	- 추천디자이너
10	이순종	국민대 공업디자인과 교수	45	- 추천디자이너
11	이석준	서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40	- 추천디자이너
12	정국현	삼성전자 상품기획센타 이사	44	- 초대디자이너
13	정경연	홍익대 섬유미술학과 교수	42	- 추천디자이너
14	홍정표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44	- 초대디자이너

환경디자인

NO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령	비고
1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59	
2	권영걸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교수	50	
3	김경영	라미환경연구소 소장	49	- 공인전문회사 대표
4	김명석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과 교수	47	
5	박영순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49	
6	박창호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	37	- 관련분야 전문가(감성)
7	이건호	명지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51	
8	유영배	세종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48	
9	조벽호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49	- 추천디자이너
10	조태병	한성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47	

포장디자인

NO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령	비 고
1	김광현	한양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62	
2	김태종	그린디자인 대표	48	- 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3	박규원	창원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43	- 추천디자이너
4	선정근	썬디자인연구소 소장	50	
5	유병돈	(주) 쥬리아화장품 상무	52	
6	이영주	LG화학 이사	44	
7	장윤호	서울디자인센터 대표	54	
8	최영숙	수원여전 시각디자인과 교수	46	- 추천디자이너
9	최아영	프리랜서	49	- 초대디자이너
10	최호천	강남대 산업디자학과 교수	44	- 추천디자이너

시각디자인

NO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령	비고
1	조영제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62	- 초대디자이너
2	고현	조선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47	- 초대디자이너
3	권명광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55	- 초대디자이너
4	김선희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49	
5	김학성	숙명여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49	- 초대디자이너
6	김현	디자인파크 대표	48	- 초대디자이너
7	김혜옥	디자인 커넥션 대표	49	- 국가상징자문위원회 위원
8	박강룡	단국대 산업미술과 교수	50	- 초대디자이너
9	백금남	성균관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49	- 초대디자이너
10	이효일	성신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	59	- 초대디자이너
11	이일규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장	47	- 주최기관
12	정연종	프리랜서	51	- 초대디자이너
13	한동수	한국색채연구소 소장	53	- 관련 분야 전문가(색채)

4. 산업디자인분야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93	'94	'95	'96	'97	비 고
출 연 및 보 조	○ <u>인증기금</u> ○ 구조보조금	781	1,171	3,000	3,000	3,913	19,324
	- 경상보조금 (기관운영비)	781	1,171	3,000	3,000	3,913	3,924
	- 자본보조금	-	-	-	-	-	15,400 디자인센터 건립비
	○ 공기반자금 ▼ <u>설비기금</u>	-	-	3,000	5,531	6,700	11,299
	- 디자인개발 <u>설비자금</u>	-	-	3,000	5,531	6,700	11,299
	- 공통핵심 <u>기술개발</u> 기술개발 (<u>디자인 기반 기술</u>)	-	-	-	01000	06000	-
	○ 산업기술자금	-	-	-	-	300	2,300
	- 산업색채표준화	-	-	-	-	300	800
	- 산업색채공동연구	-	-	-	-	-	1,500
	2) <u>기반</u>						
용 자	○ 시제품개발 <u>기금</u>	1,000	2,400	8,000	13,000	16,654	16,000
	○ 산업기반기금 <u>고부가가치 기금</u> (<u>시설개선 등</u>)	-	-	-	-	-	5,000
							5,000
<u>합계</u>		1,781	3,671	14,000	21,531	27,567	53,923

5. 디자인 관련법령 및 규정 등

가. 산업디자인진흥법령

產業디자인振興法(법률 제5,214호 : '96. 12. 30)

第1條(目的) 이 法은 產業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產業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產業의 競爭力強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產業디자인”이라 함은 製品등의 美的·機能的·經濟的 價值를 최적화함으로써 生產者 및 消費者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創作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製品디자인·包裝디자인·環境디자인·視覺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第3條(產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의 수립등)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產業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이하 “產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产业디자인振興綜合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产业디자인振興綜合計劃에는 产业디자인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本政策方向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目標·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通商產業部長官은 产业디자인振興綜合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产业디자인振興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研究 및 振興事業의 실시 등) ①通商產業部長官은 產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產業디자인에 관한 研究 및 振興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機關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 및 振興事業에 참여할 수 있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產業디자인專門會社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
3. 通商產業部長官이 지정하는 產業디자인에 관한 企業附設研究所
4. 教育法 第81條 第1號·第3號의 規定에 의한 大學·專門大學 또는 開放大學
5. 國立·公立研究機關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

③通商產業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研究 및 振興事業에 참여하는 機關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工業發展法 第13條第2項 또는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產業디자인振興委員會) ①產業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通商產業部長官所屬하에 產業디자인振興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優秀產業디자인商品의 선정등) ①通商產業部長官은 우수한 產業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優秀產業디자인商品”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②通商產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優秀產業디자인商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優秀產業디자인商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登錄하여야 한다.

④通商產業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優秀產業디자인商品에 대하여는 당해 상품이 優秀產業디자인商品임을 나타내는 標識(이하 “優秀產業디자인標識”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⑤通商產業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優秀產業디자인商品이 登錄당시와 外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產業디자인商品의 선정·시상·지원·登錄取消 및 優秀產業디자인標識의 使用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優秀產業디자인標識의 附着禁止)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秀產業디자인商品으로 登錄된 商品외의 商品에 대하여는 優秀產業디자인標識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販賣場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專門人力의 養成등) ①政府는 產業디자인에 관한 專門人力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產業디자인에 관한 產學協同과 專門人力의 資質向上을 위한 再教育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은 매년 專門人力需要調查를 실

시하고 그 결과와 專門人力의 需給에 관한 의견을 通商產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產業디자인專門會社에 대한 지원) ①政府는 產業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專門的으로 행하는 會社(이하 “產業디자인專門會社”라 한다)로서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研究成果의 제공 및 尖端 開發技法의 지도
 2. 產業디자인專門會社의 創業을 지원하기 위한 創業保育施設의 設置·운영
 3. 高價裝備의 공동사용
 4. 기타 產業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產業디자인專門會社는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產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③通商產業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에 위탁할 수 있다.

第10條(產業디자인의 보호) ①政府는 產業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模倣을 방지하기 위하여 產業디자인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通商產業部長官은 產業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聯制度의 개선 및 運營合理化 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11條(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의 設立등) ①產業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振興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分院 또는 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④振興院은 產業디자인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開發支援事業
2. 展示事業
3. 出版 및 弘報事業
4. 情報化事業
5. 教育·研修事業
6. 地方의 產業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國際交流·協力事業
8. 政府의 委囑事業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⑤振興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한 經費를 조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収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⑥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振興院의 經費支援) 政府는 豊算의 범위안에서 振興院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第13條(資料의 제공요청등) ①振興院은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政府投資機關·研究機關이나 教育機關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振興院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地方의 產業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14條(事業計劃書등의 제출) ①振興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事業年度開始日까지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通商產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振興院은 每 事業年度의 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事業年度 3月 31일까지 通商產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5條(보고 및 檢查) ①通商產業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振興院에 대하여 그 業務狀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振興院에 출입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6條(秘密嚴守의 義務) 振興院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振興院이 아닌 者는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8條(手數料)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優秀產業디자인商品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9條(罰則) 第7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0條(過怠料)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의 名稱등의 變更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의 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은 이 法에 의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이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
서 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은 이를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으로 본다.

第3條(定款變更等) 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은 지체없이 通商產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 法에 適合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名稱등의 變更에 따른 變更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工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產業디자인振興法에 의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 및 產業디자인專門會社

②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110號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

產業디자인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

第5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產業디자인
·包裝振興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條項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產業디자인·包裝振興法에 의한 產業
디자인包裝開發院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韓國產業디자인振興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349호 : '97.4.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꿀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서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 되지 아니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기타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 2 장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제5조(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교육부·문화체육부·농림부·통상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의 차관과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장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장
3. 산업디자인 또는 그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중요사항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에 관한 중요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5. 기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심의에 불이익한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제9조(선정주관기관의 지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주

관하는 기관(이하 “선정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신청) 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공고전 1년이내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12조(선정심사위원회)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주관기관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게 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주관 기관이 추천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통상 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선정주관기관의 장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사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일부터 10일이내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한 자는 당해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등록상품”이라 한다)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변경되거나 등록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상품의 외관·기능 등의 변경된 상태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 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만 사용 할 것
2. 등록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와 동일할 것
3. 등록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가. 당해 상품
 - 나.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 다. 기타 선정주관기관의 장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정하는 것

제17조(등록상품의 시험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 되고 있는 등록상품의 외관·기능 등의 상태가 제16조제2호의 사용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품의 생산·유통·판매 및 광고에 있어서 허위표시·유사표시 및 과대광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취소)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상품의 등록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및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연구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5 장 산업디자인전람회

제26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27조(전람회의 조직)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람회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전람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집행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집행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출품물심사위원회) ①전람회에 전시할 출품물의 심사를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출품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산업디자인 또는 그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29조 각호의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부문) 전람회는 다음 각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제30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29조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전람회개최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람회의 출품물·출품절차·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 4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통상산업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품의 시험 및 조사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55호 : 97.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공고일까지로 한다.

제3조(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선정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선정계획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 개시일 2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설명서(외관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
2. 상품사진(천연색 60mm×60mm)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 1점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변경등록) ①영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을 한자의 명칭
2.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명칭 및 형식

②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설명서(외관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

2. 상품사진(천연색 60mm×60mm)

③ 진홍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등) 법 제9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③ 진홍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홍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본다.

나. 공업발전법령중 관련규정

공업발전법(법률 제4,888호 : '95. 1. 5)

제11조(공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조직의 설치
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 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 및 운영
3.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특정연구기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적극적인 참여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5. 연구개발투자의 촉진 및 확대
6.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7. 기타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공업발전에 긴요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하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술분야
 2. 공업의 기술력향상에 필요한 핵심소재·부품기술분야 및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분야
 3. 에너지·지원기술, 영상 및 환경관련 공업기술등 새로운 개발수요가 큰 기술분야
 4. 기타 공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분야
- ②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2. 기술계통도의 작성등 기술전망조사에 관한 사항
 3. 공업기술수준의 평가 및 기술개발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기술관계기구와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보급 및 실용화등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

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이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또는 개방대학
5. 공업및에너지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산업기술연구소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전문회사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9. 기타 공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및 사업자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업발전법시행령(제14,939호 : '96. 3. 11)

제8조(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개발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개발사업의 과제, 개발사업의 책임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개발성과의 활동 및 기술료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주관기관의 지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과제의 선정 기타 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담기관에 이를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①사업자 또는 통상산업장관외의 자는 개발사업 주관기관이 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자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을 하는 자와 미리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출연금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금의 사용) ① 개발사업주관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출연금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시설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 직접연구비
2. 교육훈련비·기술지도비 등 간접연구비
3. 기술도입비·개발보전비·위탁개발비등 개발사업관련 비용

② 개발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협약기간 종료후 3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그 사업자로부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정수된 기술료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의 책임자
의 개발능력향상 및 개발사업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용의 충당 등의 목적에 사
용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용도외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
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1997. 3.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공업기술수요조사사
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구분)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
업을 말한다.

1.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핵심기술개
발사업
2. 핵심부품 또는 복합시스템제품기술 등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3.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및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 첨단
대형기술개발사업
4. 국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등이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5.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6.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지원사업
7. 기술정보의 구축·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기술조사, 관리체계개선연구 및
산업기술정책연구 등의 기술개발기획 평가사업
9.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개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출연금
으로 충당한다.

제 2 장 공업기반기술개발전문위원회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개발사업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술수요조사사업(이하 “기술수요조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개발사업 및 기술수요조사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및 기술수요조사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지원분야의 선정 및
산업기술 분야간 투자우선 순위 조정
3. 기타 개발사업 및 기술수요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의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술개발기획평가단) ①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 기술조사사업의 실

시, 기술개발분야의 발굴, 개발사업의 선정·관리·평가등과 관련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기술전문가 및 경제, 산업전문가로 기술개발기획평가단(이하 “기획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평가단 위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및 수행실적에 따라 임기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제5조(기술평가위원회 등) ①제4조제1항의 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 기술수요조사사업의 실시 및 기술개발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기술기획평가단 위원중 기술교류위원회(이하 “기술교류회”라 한다)의 구성과 개발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의 사전심의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전달기관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기술교류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공업기술수요조사사업

제6조(개발사업분야의 발굴)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분야는 기술수요조사사업에 의하여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굴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기술수준의 평가사업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2. 중장기적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정책 수행상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분야중 산업기술정책방향에 따른 개발우선순위의 조정과 기술료 징수대상분야 및 기술료 미징수 대상분야로 구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달기관의 검토 또는 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기술수요조사사업의 실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년도 기술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기술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교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별도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시로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술수요조사사업비)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수요조사결과의 활용)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수요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에 널리 배포하여 기술개발계획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담기관 등

제10조(전담기관의 업무)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기술수요조사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교류회 운영, 관리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2.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4. 개발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개발사업비 정산
5. 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성과활용의 촉진
6.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7. 기술료 정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개발사업 및 기술수요조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주관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관중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기술개발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관과 같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2.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및 단체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5. 기타 시행계획공고시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개발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기술료의 정수 및 결과의 보고
6.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7. 관계법령준수

④제2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개발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을 총괄수행하는 기관(이하 “총괄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두며, 그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참여기업)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2. 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4. 관계법령 준수

제13조(총괄책임자) 당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당해분야에 소속된 연구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5. 개발사업계획서, 계속사업계획서 및 완료과제에 대한 심의·평가시 총괄발표

6. 개발사업결과의 이전등 성과활용

7. 관계법령의 준수

제 5 장 시행계획의 공고·심의등

제14조(시행계획의 공고)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개발사업 대상분야중 당해년도 지원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첨단대형기술개발사업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정된 지원대상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도 주관기관의 희망에 따른 자유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토록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본 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분야외에 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분야 또는 과제를 공고하여 당해 기술과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개발사업의 신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전달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개발사업의 목표, 수행능력 및 사업화 가능성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결과 신청과제가 국내에서 기개발 되었거나, 개발능력 및 준비의 결여, 사업화능력 및 가능성회박, 연구비의 과다한 요구 등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되, 그 결과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제7호에 대한 정액기술료율은 정부출연금의 50%로 한다. 단, 개발사업의 위험도가 높거나 기반기술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료 비정수과제로 분류하여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연구관리능력등 포함)
3. 참여기업의 형태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정도
4. 참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5. 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6. 개발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제32조에 의한 정액기술료율
8.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심의시 일부 반영할 수 있으며, 산·학·연, 기업간 공동연구, 중소기업에 의한 개발사업수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 반영비율 및 공동연구 우대조건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해 주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 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이외의 기술개발사업 전문가 또는 개발사업 수행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결과를 과제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침에 의한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통상산업부장관은 심의결과 등과 당해연도 사업개발의 규모,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사업의 선전) ①전담기관은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정통보에 따라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해당주관기관에 개발사업 선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과제라 하더라도 산업기술정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당해년도 개발사업과제로 선정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과제에 대해 동일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에 복수지원하여 경쟁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④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개발사업비

제19조(개발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신청시 당해 기술과제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을 계상하거나 전담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개발사업비 및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는 개발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참여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직급별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다음 각목은 예외로 한다.

가.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연구원 전체 인건비의 50%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중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100%보수를 지급받는 연구원은 인건비를 계상·지급할 수 없다.

다. 동일연구원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계상 신청할 수 없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연구비는 당해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제작비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 금액총액의 10%이내(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5%이내)에서 계상하되 개발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위탁개발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비목별로 계상하고 조정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출연금의 지원정도) 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유형, 개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당해연도 개발사업비의 2/3 이내로 하되 다음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한다.

주 관 기 관 유 형	참여기업의 수 및 규모	출연금지원비율
중 소 기 업		2/3이내
대 기 업		2.5이내
기타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2/3이내
	기타의 경우	1/2이내

②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표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당해년도 개발사업 수행중에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차년도 개발사업비 조정시 이를 반영한다.

제21조(참여기업 부담금의 부담형태) ① 당해년도 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등”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비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3.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② 당해년도 참여기업등이 부담하는 현금은 1차년도에는 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협약서 및 그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는 민간현금부담분을 입금한 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참여기업 명의의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성의 사본으로 한다.

③ 협약은 통상산업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개발기관의 장간에 체결한다 다만, 영 제8조의2제1항에 의거 동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은 통상산업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④ 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 주관기관의 장이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 대표로부터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협약의 해약)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

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개발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등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협약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대상, 참여제한기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금액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연구기관, 학교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5조(출연금의 지급)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②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에 협약을 위임한 경우 출연금 지급은 개발사업비 소요발생시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지급하며, 전담기관은 협약포기등으로 발생하는하며, 전담기관은 협약포기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출연금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0조 제4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급결과를 월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또는 참여기업등의 부담금등의 개발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2개 이상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장은 제25조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바의 주의를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장은 연구비·지급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티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상기의 연구비·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 및 문구의 고무인을 제작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술개발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술개발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위탁개발기관의 장 또는 위탁개발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협약당시의 산업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비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개발사업비가 당해연도 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승인결과를 전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직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는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 연구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기자재 구입변경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참여기업등의 개발사업 참여) 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화촉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소속연구원을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참여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발사업 수행현황을 설명하여 참여기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학·연·관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협력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개발결과의 보고, 평가, 활용 등

제28조(개발사업결과의 보고) ① 총괄책임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1개월전까

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최종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개발사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성과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전담기관인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담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다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때 “계속”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조정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를 생략하고 보고서접수를 평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정책상 필요 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주 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완료

된 경우 보완결과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 지침에 의한 재검토 또는 평가 위원회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을 계속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조기완료”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공”으로 간주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 “정상수행(I, II)”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정액기술료징수여부를 결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장 및 참여기업 대표가 평가의견서에서 성공으로 자체평가하여 기술료 납부의사를 밝히고,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내용도 자체평가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자체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후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서 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전담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⑩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전담기관은 미리 개발결과에 대한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전담기관은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현장조사결과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쳐 개발사업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정상수행(I, II)” 또는 “실패”로 확정된 경우 당해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총괄책임자등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구개발목적외의 연구비사용 등 불성실 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일시에 환수한다.

제30조(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개발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개발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상인 기타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기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당해연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검토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정산잔액 중 첨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개발사업비 잔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전담기관은 정산잔액등 관리상 발생하는 이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관리 사업 등에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

2. 기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⑤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최종년도 개발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개발사업결과의 활용) ① 전담기관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개발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은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등 개발사업 성

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제6항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 되었으나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에 대하여 공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정책기술료의 징수)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평가되어 정액기술료 징수과제로 확정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를 참여기업 또는 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최종평가 통보후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계약 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동 기간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최종평가결과 통보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균등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이외에 성과활용결과에 따른 매출발생시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협의하는 바에 따라 경상기술료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된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만기일 후 입금된 기술료 징수결과를 매분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통상산업부장관은 정액기술료를 조기납부시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의 사용)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정액기술료는 공업발전기금법 제13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등에의 재투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

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경상기술료는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개발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소속연구원 등의 연구능률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2. 당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
3. 기타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34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당해 개발사업 수행중 발생된 지적소유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요령 29조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시 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부소유로 한다.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요령 제32조제2항에 의한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체결 후 정액기술료를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②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주관기관에 상환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또는 시제품 등) 및 지적소유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실시기업에 무상양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③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범위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종료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④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중 연구기자재비에 상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당해 기업에서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관리운영예산)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연구기획, 평가관리 등에 관한 개발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 기술개발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 등의 위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참여기업의 연구원등이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위반사항의 제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정부출연금의 환수,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자 및 해당기관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관리관의 지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 부설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지침의 제정)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2조의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요령과는 별도로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해 “우수”, “보통”으로 평가받은 과제 중 미활용보고를 제출한 과제는 종전의 요령에 따라 활용도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료징수, 징수유예, 감면등으로 평가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본 요령 제32조(정책기술료의 징수)의 제2항 및 제3항은 1995년도 신규지원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요령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은 1997년 이전 지원과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1997. 4. 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개발사업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 산업디자인정보화 지원사업
3. 산업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
4.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사업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산업디자인·포장기술발전심의회) ①산업디자인·포장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장, 재정경제원 경제개발예산심의관, 중소기업청 산업
2국장,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2.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 전문가중 통상산업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개발사업의 선정·평가에 대한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
계, 학계, 연구계의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 전문가로 산업디자인·포장기술
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구성·운영한다.

제5조(전담기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개발사업의 신청서 접수, 진도관리,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3.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4. 개발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의 보고

5. 개발사업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의 보고

6. 기타 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관기관) ① 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의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을 겸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개발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결과의 보고

제7조(참여기업)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에의 참여
2. 개발사업비 일부의 부담
3.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제8조(개발사업 총괄책임자) ①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야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개발지원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제9조(개발사업 예산계획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개시전까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목적·시행기간·추진절차·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와 별도로 개발사업계획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사업의 신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및 전담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검토 및 심의) ①전담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신청받은 경우 개발사업계획서를 제2항 내지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
3. 참여기업 또는 위탁개발기관 등의 적정성
4.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가능성

5. 개발사업비 및 개발사업 기간의 타당성

6. 기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개발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개발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결과를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 신청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확정) ① 통산산업부장관은 심의결과 등과 당해연도 개발사업의 규모, 산업디자인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확정한 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정통보에 따라 해당 주관기관에 개발사업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사업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 ① 주관기관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발사업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개발사업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산업디자인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개발사업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개발사업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지급)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특성 및 정부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 등의 부담금(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약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협약 체결시의 개발사업비를 비목별로 10%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당해 개발사업의 연속적 인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개발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관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당해연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개발사업비 잔액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개발사업의 실시

2. 기타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주관기관은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를 개발사업종료일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운영예산) 통상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이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개발사업결과의 평가 및 보고) ①주관기관은 개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

를 자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결과의 평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체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후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재조치) 통상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개발사업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당시에 행한 개발사업은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1996. 3.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사업(이하 “수요조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2. 산업정보의 모집·분석·유통의 촉진
3.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
4.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5. 신기술보육사업
6. 국제기술협력의 추진
7.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
8. 기술의 표준화
9. 산업체산권의 보호 및 지원
10. 품질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11.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 2 장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운영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①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정책교류회 위원 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기술기반조성사업 관련전문가 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되, 사업에 따라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장 또는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조(분야별 기술정책교류회 등)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장단기 방향제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인력, 정보 등 분야별 기술정책교류회(이하 “정책교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제5조의 기획관리 평가 전담기관내에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정책교류회,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등

제5조(전담기관)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하되 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교류회 운영, 관리 및 수요조사 실시, 결과의 종합분석

2.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
 3. 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4.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촉진
 5.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6. 기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경우 전담기관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행예산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⑤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제5항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사업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과 같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4. 기타 지원대상분야공고시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③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4. 기술기반조성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7조(참여기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공동참여
2.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활용

제8조(총괄책임자) ①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과정의 지도 및 조정
4. 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보고

제 4 장 수요조사사업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분야의 발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분야는 수요조사사업에 의하여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기술기반 정책수행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조사사업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요조사사업의 실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년도 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정책교류

회를 통하여 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별도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요조사사업비)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0조에 의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요조사결과의 활용)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요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에 널리 배포하여 기술기반조성계획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원대상분야의 공고·심의 등

제13조(지원대상분야의 공고)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기술기반조성사업 대상 분야 중 당해연도 지원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신청)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기술기반조성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분야의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주관기관을 신설하며 지정된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도록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전담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사업내용 및 참여기관 등의 공공성·기반성
 4.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5. 공동활용 계획의 실질성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 산·학·연·관·공동사업, 중소기업에 의한 사업수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해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집단적 사업으로 조직화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도록 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제출도록 할 수 있다.
- ⑥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결과를 사업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선정 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심의결과 등과 해당년도 사업규모, 기술기반조성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회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정통보에 따라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주관기관에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선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제17조(기술기반조성사업비 계상) 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기반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비”라 한다)을 계상하거나, 전담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비 및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는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참여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인건비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100%보수를 지급받는 인원은 인건비를 계상·지급할 수 없다.
2. 직접사업비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세부비목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사업비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세부비목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사업비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한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비목별로 계상하고 조정한다.

제18조(출연금의 지원)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하되,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간은 총 5년 이내로 하되,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부담형태)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중 주관기관 및 사업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서 및 그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금부담분을 입금한 기술기반조성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으로 한다.

③ 협약은 통상산업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한다. 단, 필요시 통상산업부장관은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 기술기반조성사업은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는 당해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경우에는 동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본래 주관기관의 장이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⑥ 위탁사업협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사업기관의 장간에 체결하되,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약시 위탁사업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 대표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기반조성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산업기술기반 정책 수행상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자재등 유형적 재산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협약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 대상, 참여제한 기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된 금액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환수한 기자재 및 설비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연구기관, 학교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3조(출연금의 지급)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제24조(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기술기반조성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전담 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사업기관의 장 또는 위탁사업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5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협약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업별 협약서상의 5천만원 이상의 단일가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비가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비의 비목별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계상된 인건비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참여기관 등의 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에 소속된 사업참여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의 수행현황을 설명하여 참여기관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여기관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학·연·관 관련전문가 등으로 사업협력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기술기반조성결과의 보고, 평가, 활용 등

제26조(기술기반조성결과의 보고) ① 총괄책임자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제출기한은 사업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최종년도 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중단” 또는 “목표미달”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전담기관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현황,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태등 기술기반조성사업 전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체계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중단”, “보완”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조정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보완결고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심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내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기반조성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달성을 따라 “목표달성”, “목표미달”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전담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 이외의 정책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⑧전담기관은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현장조사결과 기술기반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목표미달”로 확정된 경우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사업목적외의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일시에 환수한다.

제28조(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중 매 6개월마다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사업 종료시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사용실적보고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 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기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업실적을 취합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최종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액 및 제22조 제2항,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전담기관은 정산금 등의 관리상 발생하는 이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획관리평가사업 등에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주관기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2. 다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3. 기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⑤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최종년도 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활용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산업기술기반의 공동활용등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목표달성”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후 사업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매년 12월말 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결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27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전담기관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활용보고서를 분석하여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0조(포상) 통상산업부장관은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기한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제5조제4항의 규정, 사업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자 및 해당기관의 명칭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지침의 제정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34조(서식의 변경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 이전에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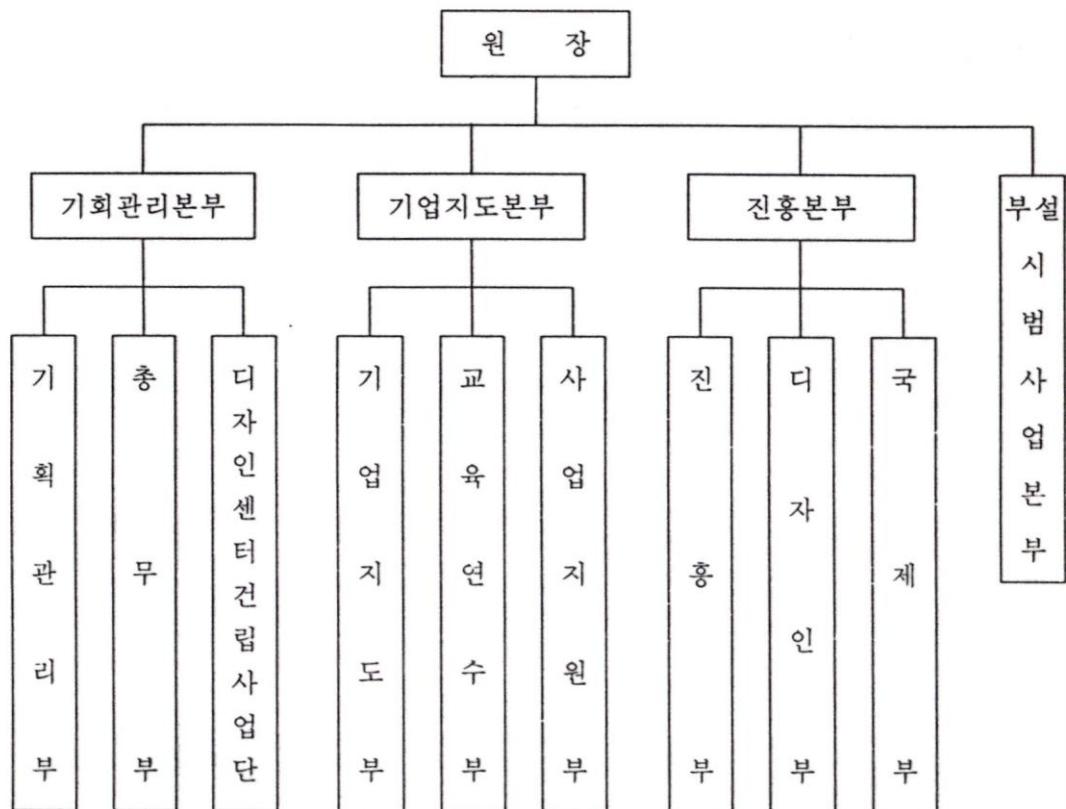
6.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가. 일반현황

- 설립경위
 - 설립년도 : '70. 5. 19.
 - 설립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 조직 : 4개본부
 - 기획관리본부(기획관리부, 총무부, 디자인센터건립사업단)
 - 기업지도본부(기업지도부, 교육연수부, 사업지원부)
 - 진흥본부(진흥부, 디자인부, 국제부)
 - 부설 시범사업본부(영업부, 생산관리부, 부산지부)
- 주요사업
 - 개발지원사업
 - 전시출판 및 홍보사업
 - 정보화사업
 - 교육·연수사업
 -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 국제교류·협력사업
 - 정부의 위촉사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나. 조직 및 예산

○ 기구표



※ 부설 시범사업본부 별도 운영(독립채산제)

※ 인원

- 개발원 본원 : 146명(용역직 16명 포함)
- 부설시범사업본부 : 148명
 - 구로동공장 : 영업·기술직 25명, 생산직 104명
 - 부산 공장 : 영업·기술직 5명, 생산직 14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예산	'97 예산	
수 입	○ 국고보조금	3,913	19,324	
	- 경상보조	3,913	3,924	○ '97예산의 절감액(314 백만원)포함
	- 자본보조	-	15,400	○ 센터빌딩 건립
	○ 한일재단기금	109	79	
	○ 공기반자금	6,700	11,299	○ 디자인·포장 지도사업
	○ 자체자금	1,782	1,532	○ 전시 및 교육수입
합 계		12,504	32,232	
지 출	○ 사업비	7,808	12,280	
	- 지도개발	5,334	9,809	○ 지도사업비 등
	- 교육연수	996	1,265	○ 전문인력양성
	- 진홍사업	1,114	919	○ GD상품 선정 등
	- 정보제공	364	287	○ 기술정보지발간 등
	○ 센터건립	-	15,400	○ 센터건립
	○ 인건비	2,606	2,882	○ 인건비
	○ 일반관리비	1,125	1,620	○ 건물유지비 등
	○ 자산취득비	965	50	○ 건물증축비·기자재 등

다. 이사회

- 설치근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관 7조
- 회의연혁 : '70. 5. 설치(매년 3월 정기총회)
- 기능 및 목적 : 진흥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직제, 회계, 보수 기타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

○ 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이 사 장	김 상 하	상공회의소 회장
	노 장 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김 은 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 원 택	중소기업연구원장
	박 용 정	한국경제신문사사장
	강 영 구	마산 MBC 사장
	전 병 식	포스코켐 상임감사
	봉 상 균	서울산업대 교수
	한 도 룡	홍익대 교수
	조 영 제	서울대 교수
감 사	김 철 수	국민대 교수
	백 만 기	통상산업부기술품질국장
	한 기 성	계원화랑 대표

라. 정관, 직제 및 이사회 규정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약칭 KIDP)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발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산업디자인 수요의 조사
10. 산업디자인 수준의 평가
11. 포장시험 및 검사
12. 포장재공급 시범사업
13. 기타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조(비용부담)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고) 진흥원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업소의 벽면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원장 포함)
3.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통상산업부의 진흥원 감독 주무국장은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② 원장 및 본부장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진흥원장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의 설립·경영주체인 『학교법인 국제

『산업디자인학원』의 이사를 겸하며 동 학교법인의 이사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의 학장을 겸할 수 있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감사의견을 매년도 정기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홍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 ①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책임을 진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진흥원의 이익과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임원은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본부장 또는 직원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본부장) ① 본부장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본부장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③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④ 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저촉된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운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⑤ 본부장의 보수지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는 상임임원에 준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제17조(겸직제한) ①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은 통상산업부장관, 본부장 및 직원은 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원장과 본부장 및 직원은 진흥원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이사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원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의장) ①이사회 의장으로 이사장을 두며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원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진흥원 해산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본부단위 이상의 직제 및 보수규정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중요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원장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 제5호중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중요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제1항 제6호중 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1항 제7호중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중 제5호의 직제 및 보수규정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4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회계 및 자산상황과 제반 업무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당연직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기본자산) 진홍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기본자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의 고정자산
2.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출연금·기부찬조금 및 국고보조금
3. 포장재공급시범사업수입으로서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 또는 계속 기본금으로 보유할 자금

제25조(회계년도) 진홍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편성) 진홍원은 매사업년도 개시일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 진홍원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당해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사업년도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회계) 진홍원은 포장재공급시범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포장재공급사업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 그 순이익금은 진홍원의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의 차입등) 진홍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도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공급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에 대한 지원) 진홍원은 제4조 제5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1조(비밀업수의 의무) 진홍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진홍원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진홍원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해산) ① 진홍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홍원이 해산할 때의 손실의 보상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진홍원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공공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7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이사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정관은 상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71. 6.30, 1972. 8. 2, 1974.10. 8,
1975. 4. 4, 1976.11. 3, 1977. 3.15,
1978. 3.29, 1981. 2.27, 1981. 6.15,
1982. 1.14, 1983. 4. 8, 1984. 2.23)

이 정관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이 정관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포
장진흥기금은 이 정관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실적은 이 정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서·예산서·세입 및 세출결산서로 본다.

제5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최초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선임하며, 이 정관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
임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최초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선임하며,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한다. 다만, 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임임원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는 종전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92. 6.25, 1992. 8.25, 1993. 6.16)

이 정관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0.23)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본부장은 이 정관에 의한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94. 6.14)

이 규정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17, 1996. 3.18)

이 규정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이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
에 의하여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직제규정

X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진흥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밑에 비서실, 감사실, 기획관리본부, 기업지도본부, 진흥본부, 부설 시범사업본부를 두며, 각 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2. 기획관리본부장 밑에 기획관리부, 총무부, 디자인센터건립사업단을 둔다.
3. 기업지도본부장 밑에 기업지도부, 교육연수부, 사업지원부를 둔다.
4. 진흥본부장 밑에 진흥부, 디자인부, 국제부, 정보화추진팀을 둔다.
5. 부설 시범사업본부장 밑에 시범공장, 부산지부를 둔다.
6. 세부조직은 별표1·별표2와 같다.

제3조(직원의 각종 직급) ①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기능직·고용직·경비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사무직·연구직·기술직으로, 기능직은 일반기능직, 생산기능직으로 세분한다.

②일반직은 1급 내지 6급으로 일반기능직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생산기능직은 반장, 조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구분한다.

③세부직종 및 직급구분은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④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별정직·계약직·용역직을 들 수 있다.

제4조(정원) 임직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비서실) ①원장실에 비서실을 둔다.

②실장은 2급갑 내지 2급을로 보하고, 실장밑에 3급 내지 6급 직원을 둔다.

③비서실은 원장보좌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감사실) ①원장실에 감사실을 둔다.

② 실장은 2급갑 내지 2급을로 보하고, 실장밑에 3급 내지 6급 직원을 둔다.

③ 감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피감사업무 총괄
3. 경쟁입찰 입회 및 확인
4. 사고의 보고 및 시정요구
5. 일상감사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진상규명 및 확인업무

제7조(기획관리부) ① 기획관리부에 경영기획팀, 예산과, 홍보실을 둔다.

② 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 및 실장은 2급갑 또는 2급을, 팀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 경영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발전을 위한 신규사업계획 동 프로젝트개발 및 검토
2. 이사회 운영
3. 기본운영계획 수립
4. 부문별 계획의 조정·통제 및 심사분석
5. 정관 및 제규정·지침의 제정·개폐
6. 조직관리 및 업무환경 검토
7. 산업기술개발자금 운영 및 사후관리
8. 외국기관의 사업진행 방향조사 및 비교검토
9. 대국회업무 및 국정감사 수감
10. 대정부 정책수립지원 및 의견제시
1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협약체결
12. 집행부서의 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13.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④예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

2. 예산통제 및 집행분석

3. 대정부 예산계획 제출 및 확보

4. 예산변경 편성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⑤홍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업무(대내.외)

2. 출판업무

3. 홍보·출판관련 대내지원

4. 성공사례 발굴 및 슬라이드 제작 및 관리

5.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6.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8조(총무부) ①총무부에 총무과, 경리과를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통제 및 수발·보관

2. 의식 및 회의·행사 주관

3. 직원의 인사 및 임원서무

4. 급여 및 연말정산과 복리후생

5. 직인관리

6. 각종계약·구매

7. 재산관리

8. 상설전시관 임대운영
 9. 보안 및 민방위 운영
 10. 기타 자산관련 제반업무
 11.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 ④ 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2. 재무제표 및 회계관계 제계표 작성
 3. 회계장부의 기록·집계·유지·보관
 4. 자금별 집행실적
 5. 정부예산 신청 및 정산
 6. 자산의 평가
 7. 제증빙서류의 보관
 8. 채권 및 채무와 세무관련 업무
 9. 자금의 효율적 운영
 10. 결산서 제작
 11. 기타 계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9조(디자인센터건립사업단) ① 기획관리본부 밑에 디자인센터건립사업단을 둔다.

② 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 디자인센터건립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센터건립 세부계획 수립
2. 디자인센터건립 시행

3. 기타 디자인센터건립과 관련된 업무

제10조(기업지도부) ①기업지도부 밑에 제품지도팀, 시각·포장지도과, 외국인지도팀을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 팀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제품지도팀, 시각·포장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인전문가에 의한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개발지원(진단·지도·개발)
2.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의한 개발지원
3.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
4. 산업디자인·포장기술 개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④외국인지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전문가에 의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진단·지도·개발)
2. 외국인전문가 선정 및 업체연계
3. 한일재단사업 관리 및 정산
4.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11조(교육연수부) ①교육연수부에 연수과, 교육과를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연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체 디자이너 등 전문디자이너 재교육
2. 컴퓨터 응용디자인 전문교육
3. 전공학생 실습교육
4.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생 발굴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④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주체 교육(중앙·지방)
2. 산업디자인 세미나 개최
3. 초·중·고생 조기교육
4. 교육계획 수립 및 강사·교육대상처 발굴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12조(사업지원부) ①사업지원부에 상담과, 종합관리팀을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 팀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상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지도사업 수요업체 발굴
2. 중소기업 산업디자인(포장) 상담실 운영
3. 연수부 연수생 발굴 및 모집안내
4. 경영자교육등 교육대상처 발굴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④종합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종합·통계·실적관리
2.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신청내역 검토·심의
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산업디자인지역 협의체 관리·운영
5. 포장기술 지도사업 업체발굴 및 지도
6. 포장기술 지도사업 지원에 의한 사후관리
7. 포장기술 지도사업 전담기관 관리(예산·실적)
8.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13조(진흥부) ①진흥부에 진흥과, 전시과를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진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디자인민간협의회 운영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수리
3. 산업디자이너 등록·관리 및 정보회원제 운영
4. 산업디자인자료관 자료수집·운영
5. 자료실 관리·운영
6. 산업디자인 관련법인체 관리
7. 산업디자인의 날 행사 주관
8.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및 산업디자인성공사례상품(SD)사후관리
9. 국내외 인턴쉽
10. 수출상품의 디자인등록 대상물품지정 및 취소
11.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④전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디자인 관련전시
2. 전시관련 도록 제작
3. 지방산업디자인종합행사 실시
4. 국제전시회 개최 및 참가
5. 대내외 전시관련 지원
6. 기타 원장 부여하는 업무

제14조(디자인부) ①디자인부에 연구조사과, 디자인지원과를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연구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2. 산업디자인 진흥방안 연구사업 실시

3.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요조사
4. 산업디자인 기초연구·공동연구·수탁연구
5. 산업디자인 정책시책사업 연구
6.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④디자인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디자인 공동개발사업
2. 공익사업 및 정부시책사업
3. 생산기술연구원이 관리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주관 및 참여
4. 대내외사업 지원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15조(국제부) ①국제부에 국제협력과, 국제사업팀을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 팀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단체간 교류 및 협력증진(ICSID 2001총회유치)
2. 외국협약체결기관간 교류 및 정보수집
3. 현지 디자인연구기관 및 정보기관과의 업무협조
4. 간행물 및 자료번역
5. 국제회의 참가관련업무
6.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④국제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디자인 지도사업 외국인전문가 발굴 및 초청
2.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의 교수 확보지원
3. 해외연수 실시 및 연수생 현지관리
4. 국제전시회 유치 및 참가관련업무

5. 국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해외디자인동향 조사
6. 해외정보자료 수집 및 신상품 아이디어발굴 및 제공
7.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16조(정보화추진팀) ①진홍본부에 정보화추진팀을 둔다.

②팀장은 3급으로 보하고, 팀장밑에 3급 내지 6급 직원을 둔다.

③정보화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망구축 및 전산화방안 강구
2. 산업디자인 정보자료 수집·분석·가공·전파
3. 산업디자인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전산망 유지 및 관리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17조(시범공장) ①시범공장에 영업부, 생산관리부, 포장시험실, 회계과를 두고, 영업부에 영업1과·영업2과를 생산관리부에 관리과, 생산기술과를 둔다.

②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 및 실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영업1과, 영업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장재공급계획 수립
2. 포장재공급 및 판매관리
3. 비송절차 및 법적조치
4. 제품의 보관 및 출하·납품

④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산기능적 노무관리
2. 기자재 및 원·부자재 조달·보관·출고
3. 수출이행보고 및 사후관리
4. 시범공장 재산 및 시설관리

5. 시범공장 보안
6. 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
7. 원가절감
8. 전산실 운영·관리
9. 기타사항

⑤생산기술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포장재 생산
2. 포장기술지도 시제품 제작지원(선택적)
3. 포장기술교육생 실습지원
4. 기계장비 유지보수
5. 품질관리

⑥포장시험실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포장시험 및 검사
2. 포장기술 지도업체 발굴지원
3. 포장기술 교육생 시험실습지원
4. 기타 관련업무

⑦회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금·예금·유가증권 출납·보관
2. 원가계산 및 분석
3. 재무제표 및 회계관계 제계표 작성
4. 자금운영
5. 수금업무 총괄
6. 회계장부 기록유지 및 보관
7. 채권 및 채무

8. 기타 계리에 관한 사항

제18조(부산지부) ①부산지부에 업무과를 둔다.

②지부장은 1급 또는 2급갑, 과장은 2급갑 또는 2급을로 보한다.

③부산지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원에서 위임하는 진흥업무

2. 포장재 생산 및 공급

3. 소관 재산관리, 생산기능적 노무관리 및 보완

4. 자체소요 부자재의 조달

5. 자체 원가분석

6. 포장재공급사업특별회계 분임회계업무

제19조(보칙) 이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16)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직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계약직·일용직의 월급 및 일급은 예산범위내에서 원장이 별도로 책정한다. 별 표1의 사무·연구·기술직 본봉표중 2급은 3급으로, 3급은 4급으로, 4급은 5급으로, 5급은 6급으로, 6급은 7급으로 변경하고 2급 본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봉 : 819,550원

승호액 : 11,500원

별표 3의 수당표중 2급은 3급으로, 3급은 4급으로, 4급은 5급으로 변경하고 2급 직책수당을 122,500원으로 신설한다.

부 칙(1993.9.27)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직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사무·연구·기술직본봉표중 2급은 2급갑으로, 3급은 2급을로, 4급은 3급으로, 5급은 4급으로, 6급은 5급으로, 7급은 6급으로 변경한다.

별표3의 수당표중 2급은 2급갑으로, 3급은 2급을로, 4급은 3급으로, 5급은 4급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규정은 199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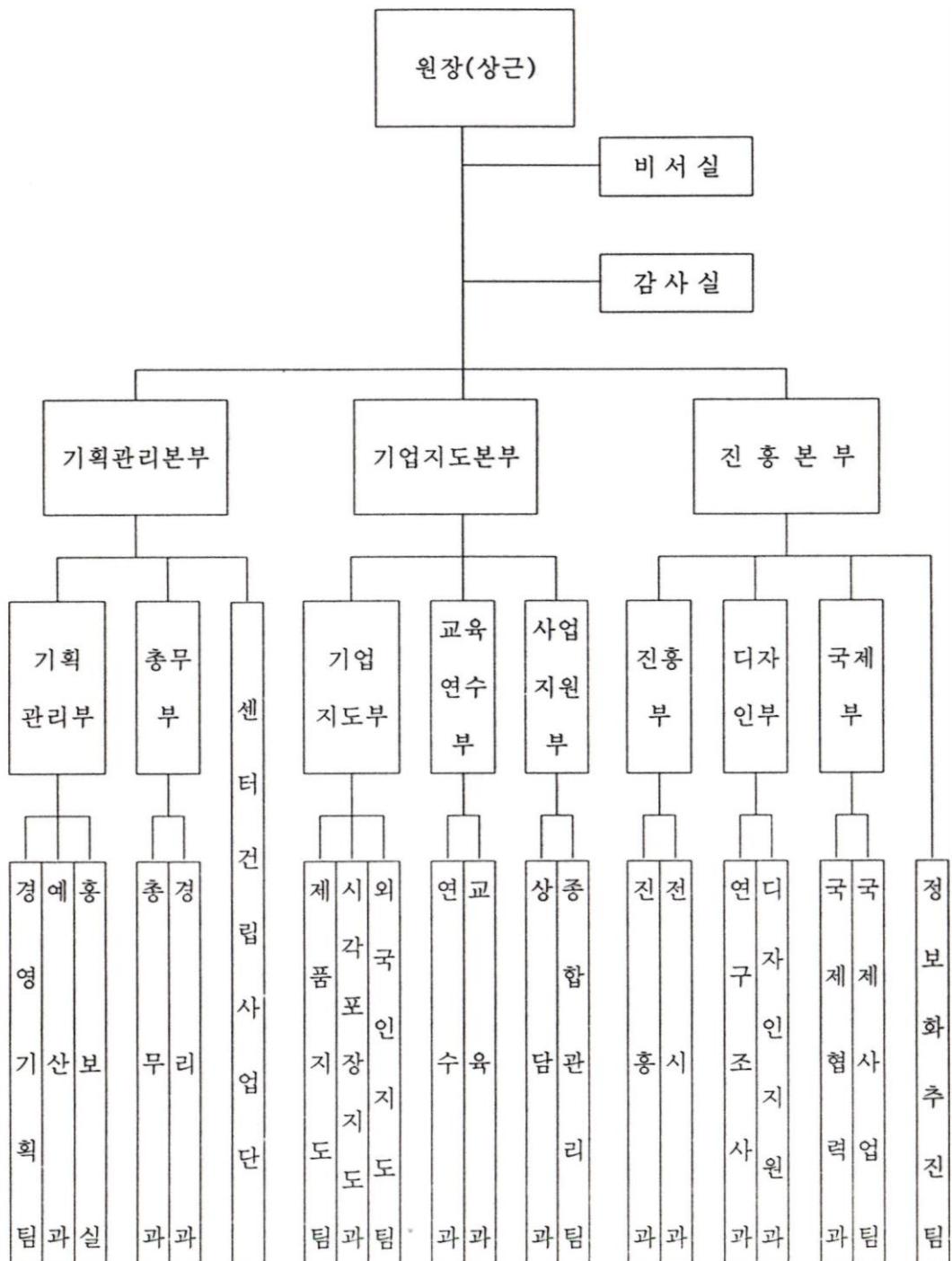
이규정은 199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199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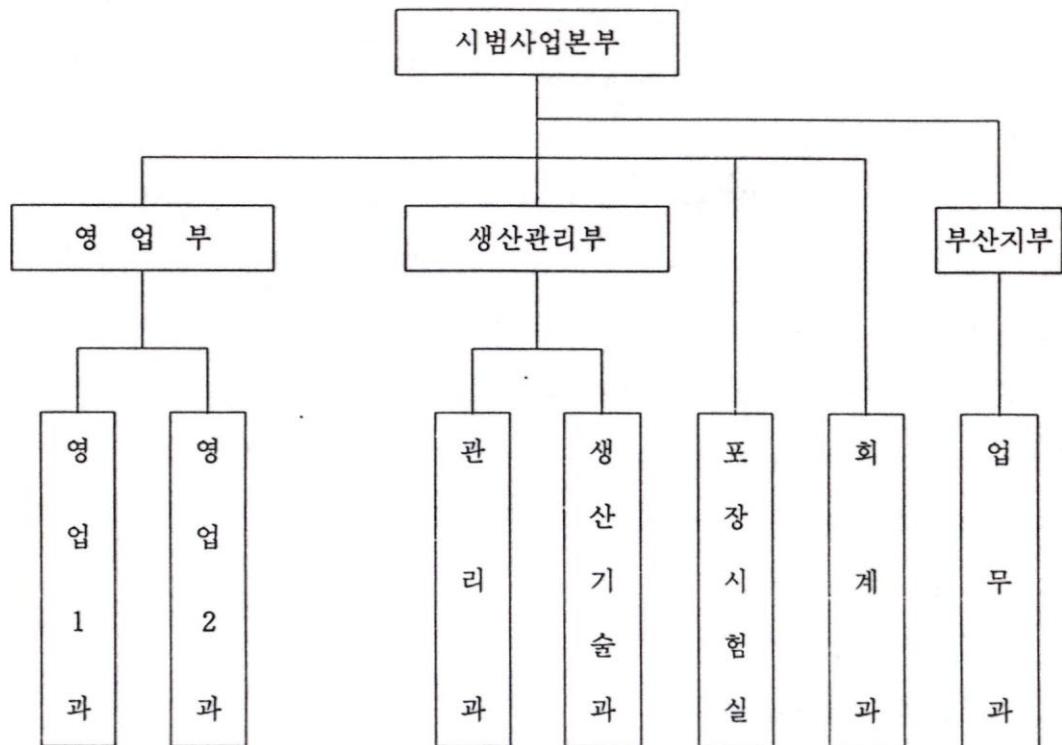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조직도〉



부설 시범사업본부 조직표



정원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구 分	원 장	본부장	일반직	기 능 직		고용직	경 비	합 계
				일반	생산			
본 원	1	3	145	6		8	4	167
부설시범사업본부		1	40	6	104	3	8	162
합 계	1	4	185	12	104	11	12	3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이사회 운영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개발원 해산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 본부단위 이상의 직제, 보수, 기금운용관리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중요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원장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②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 제6호중 기금운용관리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중요규정

3. 제1항제7호중 원장선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중 제6호의 직제·보수규정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 ①이사회 의장으로 이사장을 두며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원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이사회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4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개발원의 회계 및 자산상황과 제반업무상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에 응하기 위하여 본부장을 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의결)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부의절차) ①제4조제1항 각호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이사회에 부의안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이사회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부의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안건을 이사회 부의안건등록부에 등재하고 회의개최 4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안설명) ①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주관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안건과 관계되는 본부장 및 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서면결의) ①이사회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부의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경과 및 결과
2. 주요업무 진행 상황

제12조(사후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서면결의 또는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장은 우선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록의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에는 당해 이사회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또는 서면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록의 보관) ① 이사회 의사록 및 부속서류는 주관부서에서 보관하며,
이사회에 부의한 원안은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거마비)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근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72. 8. 1, 1981. 1. 5, 1982. 9. 1, 1983. 4. 9)

이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0. 10)

이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199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가. 일반현황

○ 대학원직원

구분	학장	부학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타	계
정원	1	1	1	2	2	3	2	2	3	15
현원	1	1	1	1	1	1	2	1	1	8

* 학장 및 부학장은 정원에서 제외

○ 교수현황

- Brian Priestley(영) '96. 7. 1 ~ 현
- Yrjö Turkka(핀란드) '96.11. 1 ~ 현
- Heinz Otte(독일) '96.11. 1 ~ 현
- George Teodorescu(독일) '96.11. 1 ~ '97. 2.15
- Dieter Hofmann(독일) '96.12. 7 ~ 97. 1.16
- Clare Green(영) '96.11. 1 ~ 현
- Ming Leung(영) '96. 3. 2 ~ 현

○ 학생현황

- '96년도 입학생 : 32명
- '97년도 입학생 : 47명

○ 설치근거법률

- 학교법인 설립 : 사립학교법 제10조
- 대학원 설립 : 교육법 제85조

○ 입학자격자 : 교육법 제11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개교연월일 : 1996. 9. 3
- 설치학과 : 산업디자인 50명(예·체능계열)
- 입학정원 : 100명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8(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내)

나.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 이사회

○ 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이 사 장 이 사	박 용 정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강 철 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진 동	서울경제신문사 주필
	김 천 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봉 상 균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조 동 성	서울대학교 교수
	유 호 민	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
	노 장 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김 문 순	조선일보사 사장실장
감 사	한 기 성	계원화랑 대표

-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다. 정관 및 관련규정

정 관

第1章 總 則

제정 1996년 9월 3일
개정 1997년 2월 21일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세계적인 산업디자인 정예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국제화·세계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의 8호에 둔다.

제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第2章 資產 및 會計

第1節 資產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근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재산의 대여등 제한)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第2節 會 計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3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第3節 豫算 決算諮詢委員會

제14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10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학교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第3章 機 關

第1節 任 員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임원으로서 이사 7인(이사장 포함) 및 감사 2인을 둔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③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사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 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교육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2節 理 事 會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의결)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第4章 解 散

제32조(법인의 해산) ①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다.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3.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는 때
- ②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에 귀속된다.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5章 教 職 員

第1節 教 員

제35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1. 교수 1년
2. 부교수 1년
3. 조교수 1년
4. 전임강사 1년

5. 조교 1년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3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6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 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2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한다.

제4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를 임면 또는 임면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또는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
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6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
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9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第2節 教員懲戒委員會

제5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이 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제척사유등)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

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운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원의 소속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第3節 事務職員

제59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및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0조(임용) ①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1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63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第7章 職 制

第1節 法 人

제65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둔다.

②법인사무과에는 과장을 두며 참사로 보한다.

③법인사무과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第2節 大 學 院 大 學

제66조(학장등) ①대학원에 학장을 둔다.

②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원을 대표한다.

③대학원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부학장을 둘 수 있다.

④부학장은 학장이 따로 임면한다.

⑤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장이 지정하는 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하부조직) ①대학원에 교학부를 두며, 교학과등을 둘 수 있다.

②교학부에는 부장을, 교학과등에는 과장을 두되 부장은 부참여,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③교학부는 학사운영, 학생생활등 대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부속기관) ①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부설 연수원

2. 부설 연구소

③부설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설기관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사무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정원) 이 법인 및 대학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第8章 補 則

제7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이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7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2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尹永錫	38. 9. 9	4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12동 502호
이 사	姜哲圭	45.12.25	2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한신제2차아파트 106동 1001호
이 사	金天柱	33. 9.16	2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 나동 102호
이 사	朴勇正	41. 8. 5	4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2동 1402호
이 사	奉相均	32. 9.10	2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6동 1502호
이 사	柳豪玟	43. 8.12	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37-14
이 사	趙東成	49. 1.12	2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5-7 현대하이츠빌라 1동 306호
감 사	金文純	44. 3. 3	1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효성빌라 41동 104호
감 사	韓基成	31. 8.22	2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396-1 현대아파트 6동904호

附 則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基本財產目錄(설립당초)

용도별	재산별	기준	확보	확보율	확보재산평가액
교육용재산	건물	1,900m ²	2,294.5m ²	121%	1,223,193,000원
	토지	543.17m ²	546m ²	101%	1,976,520,000원
수익용재산	현금	610,000천원	650,000천원	108%	650,000,000원
총 계					3,849,713,000원

헌 장

1996년 9월 3일 공표

第1章 總 則

제1조(설립목적) 국제시장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곧 그 국가의 산업디자인 능력이 말해주는 현실에서 선진국 건설에 필요한 재원들중에 엘리트 산업디자이너의 포함은 필수적인 것이다며, 이를 산업디자이너의 양성기관 역시 절실한 상태이므로 이에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교육·연수의무를 띠고 있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국내 산업디자인대학(원)의 교육제도 개선의 모델이 되고 국제적 수준의 산업디자이너를 키워내기 위해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산업디자인 교육개혁 및 엘리트 산업디자이너의 양성을 통한 산업디자인 선진국 건설이다.

第2章 教育課程

제3조(특성화방안) 본 대학원은 세계적인 엘리트 산업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대학(원)과 차별화 하여 운영한다.

1. 2년(6학기)제 전문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
2. 일반대학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실습시간을 배정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지

향한다.

3. 국제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모든 수업을 외국어(영어)로 진행한다.
4. 외국의 유수 산업디자인대학(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유리한 조건으로 선진 산업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개설학과의 발전방안) ①국제적 수준의 산업디자이너를 양성하기에 손색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충분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실습위주의 유럽형 교육을 표방하는 최신식 설비들을 갖춘다.

②워크샵(신발디자인 워크샵, 유리디자인 워크샵, 금속디자인 워크샵, 섬유디자인 워크샵, 수송기기디자인 워크샵, 편집디자인 워크샵등)을 보유하고 철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향한다.

③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본관·별관에도 각종 강의실·산업디자인도서관·산업디자인박물관·우드/플라스틱 워크샵·컴퓨터 그래픽 워크샵·어학실습실등을 갖춰 실무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교육과정은 전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한다.

②전공필수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은 그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만 이수한다.

第3章 教 育 與 件

제6조(교수확보) ①교수진은 외국인 전임교원과 국내외 겸임 및 객원교원으로 편성하여 유럽 및 선진국의 최신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앞선 지식을 제공

한다.

②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0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수를 확보하여 실습위주의 1대1식 교육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

제7조(시설·설비 확보 및 추가확보 계획) 본 대학원은 이미 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기준치를 훨씬 윗도는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엘리트 산업디자이너의 요람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장비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1. 본 대학원은 실습위주의 서구라파식 선진 산업디자인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기교육 및 실습환경의 최적화를 위하여 매년 약 4억 원 이내의 자금을 설비 및 장비 확보에 투자한다.
2. 교사도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작업실을 제공하여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할 것이며, 세계 최신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매년 도서·자료의 수도 추가로 확보한다.

第4章 學事管理

제8조(학생선발) 학생선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학칙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류심사·필기시험·전공실기시험·면접시험등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지적 능력과 인성을 판단하되, 최대의 공정성을 기한다.
3. 학생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입학전형내규에 따른다.

제9조(학기등) 본 대학원의 수업학기는 기본 6학기로 정하고, 9학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칙 제5조에 의하여 수업일수는 매학기 14주 이상으로 한다.
2.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은 학사내규에 의한다.

제10조(대학간 학술교류등) 본 대학원은 유럽 및 일본의 유수 산업디자인교육기관과의 협정을 체결하여 재학생을 교환학생으로 파견·수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1.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필요에 따라 학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의 타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2. 대상학교는 다음과 같으며, 계속적인 외국 유명 대학(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교류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 가. 네덜란드 : AIVE(Akademie Industriële Vormgeving Eindhoven)
 - 나. 독 일 : University of Essen, 스투트가르트 대학
 - 다. 스 페 인 : 가우디 대학
 - 라. 영 국 : RCA(Royal College of Art)
 - 마. 이탈리아 : Domus Academy
 - 바. 일 본 : NID(Nagaoka Institute of Design)
 - 사. 프 랑 스 : ENSCI(Ecole National Supérieure Creation Industrielle)

第5章 大學院運營

第1節 人事管理

제11조(교직원의 채용기준 및 절차등) ①교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채용한다.

② 전임교원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내국인도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직원의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인사규칙에 따른다.

第2節 財政

제12조(재정확보방안) 재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및 수업료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정부지원금에 의한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원(진흥원)의 자체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다.

제13조(재정공개) 해당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를 항상 비치하여 결산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대학원 재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및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거치도록 한다.

제15조(법인의 수익용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의 수익용재산은 개발원(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대학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용 재산의 확충에 노력하며, 수익용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일정비율을 대학원 운영경비로 충당한다.

第6章 福祉厚生

제16조(학생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우수한 자질과 성품을 구비한 자

로서 향학열이 돈독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을 선발·육성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차 국가에 유익한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데 장학 취지를 두고 교내 장학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그외 기업체등의 교외 장학금의 확보에 노력한다.

제17조(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자치기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교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에 참여하여 자치 능력의 배양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18조(교직원복지) ①전임교원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기간(계약기간)동안 안정적 주거생활을 보장토록 한다.

②교직원의 보건 증진등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당해 교직원의 작업전환·취업금지·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중 치료 인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대학원은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은 대학원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9조(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대학원은 졸업예정자 및 기타 재학생에게 졸업후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위상관리·취업특강등 졸업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진로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수·제공한다.
2. 기업체등으로부터 취업추천의뢰를 접수하여 이에 따르는 인원조정을 하고 학장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한다.
3.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취업특강 및 면접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4.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이 학생들을 졸업전에 조기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第7章 長短期 發展計劃

제20조(장단기 발전계획) ①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미래를 선도할 엘리트 산업디자이너의 양성기관인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은 국내 뿐만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국제적인 산업디자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②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작업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원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사를 현재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며, 충분한 실기실습교육을 위하여 매년 첨단 실습시설 보완에 4억 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한다.

③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국내 산업디자인 발전에 속도를 더하고 산·학연계체제 구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산업디자인연구소를 대학원 부설기관으로 설립 추진한다.

④전임교원 외에도 현지에서 산업디자인석사학위를 취득한 구라파인을 조교로 채용하여 국내 관련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기·실습분야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최대한 높인다.

⑤현재 개국 8개 대학(원)과 협정을 맺어 교환학생 및 학점교환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외 유명대학(원)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진 산업디자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⑥ 국내 산업디자인의 국제화가 미흡함에 따라 설립초기에는 세계 저명 외국 산업디자이너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되 연차적으로 내국인 전임교원으로 대체 하여 2000년도까지는 외국인 대 내국인 전임교원 비율을 5:5로 유지하며, 2000년대초까지 세계적인 산업디자인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구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이외에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2000년대에는 외국 학생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⑦ 대학원의 성격·계열·학생정원은 정예인력 양성의 설립취지에 따라 설립당시의 기조를 유지하며, 매년 설립당초에 출연한 수익용기본재산의 20%씩을 추가 출연(진홍원)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조달(진홍원)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한다

第8章 補 則

제21조(현장의 보완) 현장은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표일) 이 현장은 1996년 9월 3일 공표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1996년 10월 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지급액) ①장학금의 종류는 입학성적우수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면학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입학성적우수장학금은 입학전형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세부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합격자수의 상위 10%에 대하여는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의 100%를 면제한다.
2. 합격자수의 차상위 10%에 대하여는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의 50%를 면제 한다.

③성적우수장학금은 재학생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세부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학년별 학생수의 상위 10%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75%를 면제한다.
2. 학년별 학생수의 차상위 10%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3. 학년별 학생수의 차차상위 10%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25%를 면제한다.

④면학장학금은 재학생중 품행이 단정하고 매학기 수업출석율이 90% 이상이며 직전학기 평점이 3.5 이상인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수는 학년별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하며 지급액은 등록금의 3분의 1로 한다.

제3조(장학생 확정) 장학생은 교학부의 추천 및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

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한다. 다만, 입학성적우수장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명부 비치 및 공고등) 교학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학생 명부를 비치 및 공고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증서) 장학생에게는 학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등록기간중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상당액 만큼 입학시 등록금(재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2종류 이상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 중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1할 수 있다.

제8조(실격)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한 경우(재학중 등록 후에 휴학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0점 미만인 경우

제9조(금지행위)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학금지급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등록지연
2.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대학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개 학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학사내규

제정 1996. 9. 3.

개정 1996.10. 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이수) ①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과정별 학점은 별표와 같다.

②복학·재입학 한 차가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 기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수강하고자 하는 년도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수업년한과 재학년한) 본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2년(6학기)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서 완료된다.

제5조(등록금) ①입학금·수업료·기타 납입금은 결석·징계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②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다음 학기에 복학하였을 때 등록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6학기를 마치고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학기에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필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학기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학점상호교류) ①본 대학원과 학점교류를 협약한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매학기당 교류학점은 당해 학기의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특정교과목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①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다.

1. 타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미 수강하였고, 그 취득학점이 B학점(3.5)이상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한경우

2.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담당교수와 교육담당 부학장의 심사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일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10조 제2항 세4호·제11조·학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험) ①시험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필기·실기·구술·논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학생은 당해 교과목 총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수업일수는 출석일수로 본다.

③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시험실시일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④추가시험과목의 최종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시험성적·출석상황·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성적의 전부

3. 시험부정행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4.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수업일수는 출석일수로 본다.

③취소한 성적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성적은 취소후 F로 처리한다.

④출석부·과제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시험답안지등의 성적평가자료와 교수 보관용 성적기록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다만, 성적기록표 원본은 대학원이 영구보존 한다.

제11조(학생 결석처리등) ①결석은 각 교과목당 한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초과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한 학기에 30회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인정받은 수업일수는 출석일수로 본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증빙서 첨부)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증빙서 첨부)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지각(진단서 첨부)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를 위하여 교학부장의 사전 승인
을 받았을 때

5. 기타 교학부장은 부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부정행위자 처라) 시험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과목을 F처리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근신·유기정학·무기정
학·제적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생) ① 학칙 제7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
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생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
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시험신청서 및 졸업연구과제 제출절차) 종합시험신청서 및 졸업연구
과제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종합시험 및 졸업연구과제 심사) ① 종합시험 및 졸업연구과제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을 학장이 위촉한다.

② 종합시험중 외국어시험의 합격점수는 심사위원회가 조정한다.

③ 졸업연구과제는 100점 만점에 평균 85점을 받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장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학위수여) ① 재학년한 2년 이상 3년 이내에 제6학기 이상을 수업하고 수료학점 60학점과 종합시험 및 졸업연구과제학점 9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학기까지 수업하고 수료학점 48학점을 취득한 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학기에 수료학점 12학점과 종합시험 및 졸업연구과제학점 9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학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19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의 연구생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증명서를 수여함.

연구과제 :

19 년 월 일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학장 인

(별표)

교과 과정별 학점

구 분	교 과 목	학 점
전 공 필수	영어(English)	4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	4
	공작기계운영(Equipment Handling)	2
	재료공학(Engineering Materials)	1
	인체공학(Ergonomics)	2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1
	디자인 마케팅(Design Marketing)	1
	디자인 매니지먼트(Design Management)	2
	편집·타이포그래피(Typography)	1
	포장디자인(Packaging Design)	2
	인쇄기법(Printing Technique)	1
	환경디자인(Design for Environment)	1
	금형기술(Moduling Technology)	2
	입체조형(3D Sculpture)	2
	수송디자인(Transport Design)	3
	전기·전자디자인(Electric·Electron Design)	3
	기계디자인(Machine Design)	3
	가구디자인(Furniture Design)	3
	수학·통계학(Mathematic & Statistics)	2
	표준화(Standardization)	2
	디스플레이(Display)	1
	심리학(Psychology)	1
	지적재산권(Design Contract Law I)	1
	디자인계약법(Design Contract Law II)	1
	회계학(Accounting)	1
	사진실습(Photo Techniques)	1
소 계		48
전 공 선택	텍스타일 디자인(Textile Design)	4
	유리디자인(Glass Design)	4
	스포츠화 디자인(Sports shoes Design)	4
	잡화디자인(Accessory Design)	4
	소 계	16
합 계		64

학 칙

제정 1996년 9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9조의 3의 취지에 따라 엔지니어링·마케팅·조형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최첨단 산업디자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기·사례연구·프로젝트 수행 등 실기중심의 강도높은 교육을 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 능력이 탁월한 세계적인 엘리트 산업디자이너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대학원의 명칭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과정) 대학원에는 산업디자인전문석사학위과정(이하 “전문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학과·학생정원 및 전공과목) ①대학원에 산업디자인학과를 두며 학생정원은 총 100명(학년당 25명이상 50명이내) 이내로 한다.

②전공과목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업) ①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한다.

②1년은 3학기로 구성되고 매학기 수업일수는 14주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입학·등록·휴학·복학·제적 및 재입학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신입생 선발은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시기는 1학기초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거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입학전형 및 입학지원절차)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실기시험·구술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등록)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록을 마쳐야하고 그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단위로 하되 통산하여 3개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③군복무 또는 학장이 인정하는 사유(질병·사고 등에 의한 병가)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초 등록기간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퇴학) 자진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10조에 규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13조(재입학)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교과과정·학점·시험 및 수료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육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조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교과과정) ①본대학원의 교과는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 한다.

②교과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수료학점)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제17조(동일강좌 공동수강) ①대학원생의 타 대학원 동일강좌 수강과 타 대학원 학생의 대학원 수강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

②대학원과 협정을 맺은 타대학원에 공동으로 수강할 경우 그 취득한 학점은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점인정) ①학점의 인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일정수준이상이라야 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제적 또는 퇴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19조(시험) 평가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방법은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필기·실기·구술·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0조(수료) ①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학위수여) ①학위수여의 필요학점은 최저 69학점으로 제16조의 수료 학점인 60학점과 졸업연구과제의 9학점을 포함한다.

②아래의 종합시험과 졸업연구과제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1.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 졸업연구과제계획서)

2. 졸업연구과제

③학위수여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까지 최소 4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희망학기 전학기 초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성 적

제23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0~100	4.5
B	80~ 89	3.5
C	70~ 79	2.5
F	69이하	0.0

제24조(유효성적) 학점은 성적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5장 학생지도·징계 및 연구비보조

제25조(학생지도) 학생은 학장 및 각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7조(장학금 및 연구비보조)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6장 교원 및 대학원위원회

제28조(교원) ①대학원에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교원은 전임교수·겸임교수·특별강사로 구분한다.

제29조(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장·부학장외에 교원중에서 학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30조(임기) 학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31조(기능) 위원회는 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퇴학 및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대학원위원회·학위에 관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연구비·장학금 등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공개강좌 및 외국인 학생

제33조(공개강좌) ①본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과목이 명시된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입학 및 공개강좌의 과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학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34조(외국인 학생) 제7조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시행세칙) 이 학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석사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 함.

19 년 월 일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학장

⑩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석) ○○○○

8. 디자인 관련단체 일반현황

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1) 一般現況

(가) 所 在 地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8-7(3층) (전화 : 522-0445)

(나) 代 表 者 : 부 수 언

(다)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第32条	許可日字	1991. 10. 18
設立目的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창조적 연구활동으로 조형과 과학 기술의 유기적 조화에 의한 산업디자인을 통하여 국가산업과 인류 문화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沿革	'72. 한국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협회(KSID) 창립 '80 ICSID(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가입 '91.10.18 상공부 설립허가 '93. KSID, KIDCA, INDDA 3개 산업디자인단체 통합 '94. 1.29 통합된 단체에 맞도록 명칭과 정관개정 '94. 8. 4 법인 등기		
主要事業	1. 산업디자인진흥을 위한 제반연구와 이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3.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4. 산업디자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5. 협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산업디자이너의 권익 옹호와 상호간의 친목도모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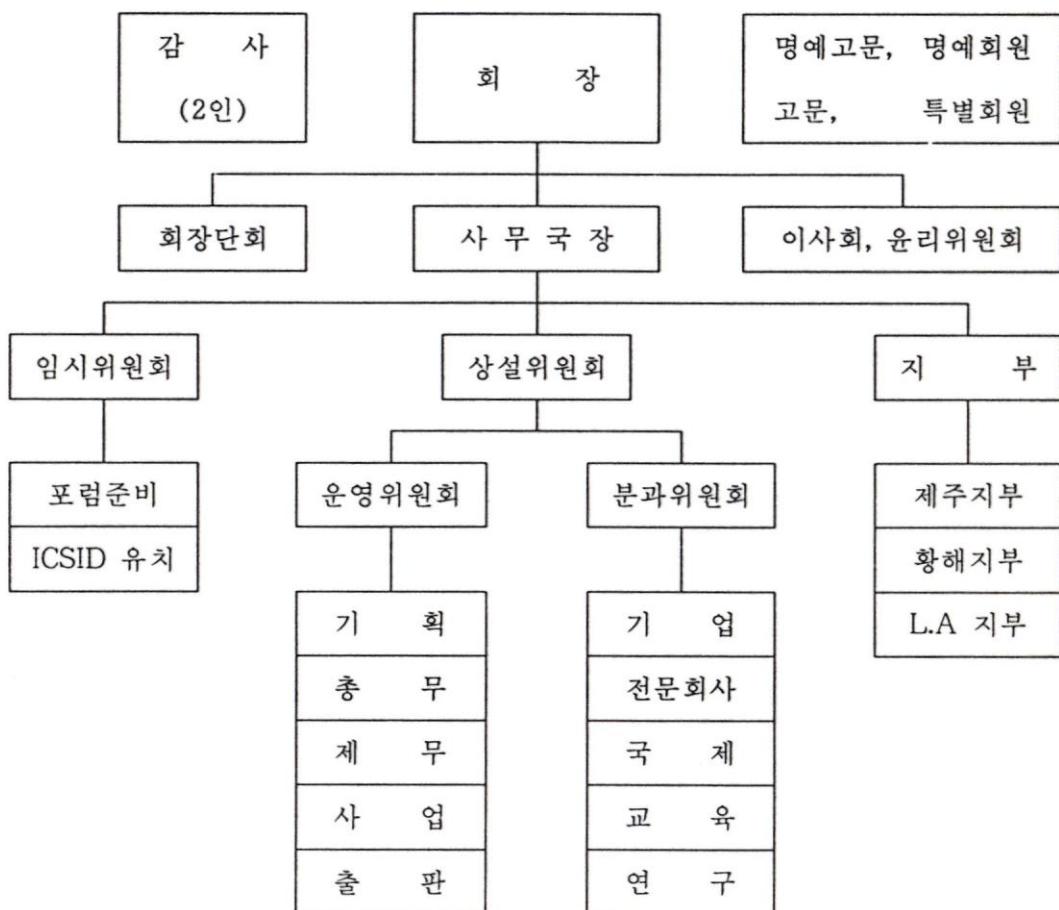
(라) 會 員 數

區 分	會 員 數	備 考
법인회원	13개사	
정회원	400여명	
計		

(2) 조직 및 인원

(가) 機構表

■ 조직도



(4) 任職員 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1급 갑)	次 長 (1급 을)	사무국장	사무원	其 他	計
定 員				1	1		2
現 員				1	1		2
過不足				—	—		—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회 장	직선
부 회 장	"
이 사	회장이 임명
운 영 위 원	"

○ 關聯規定：正관

(3) 豈算 現況

(가) 年度別 豈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31,256	53,907	74,512	130,000
支 出	28,642	51,388	50,117	128,000

(나) '97 豫算內譯

(단위 :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 인건비	
○ 사업수입		○ 복리후생비	
○ 사업외수입		○ 판공비	
○ 정부보조		○ 사업비	
○ 기타		○ 기타	
계	130,000	계	128,000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1. 한국산업디자인상 제정 및 주최	50,000	
2. Design Forum & Festival 개최 (국제 심포지움 포함)	40,000	
3. 한국의 산업디자인 자료발간	30,000	
4. 디자인연구지 연 2회 발간	3,000	
5. News Letter 연 4회 발간	5,000	

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1) 一般 現況

(가) 所 在 地 :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6-11

(전화 : 3141-0098)

(서울그라픽센터빌딩 5층)

(나) 代 表 者 : 권 명 광

(다)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第32條	許可日字	1994. 9. 6
設立目的	회원 및 국내 전 시각디자이너의 응호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산업의 진흥을 꾀하며,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산업의 경쟁력과 디자인 문화향상에 적극 기여함		
沿革	'94. 9. 6 상공부 법인 설립허가 '95.11.20 사업자등록 완료 '95.12.23 정관개정안 검토 '96. 1.27 제2차 정기총회(정관개정안 통과)		
主要事業	시각정보디자인진흥을 위한 제반사업, 시각디자이너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시각디자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협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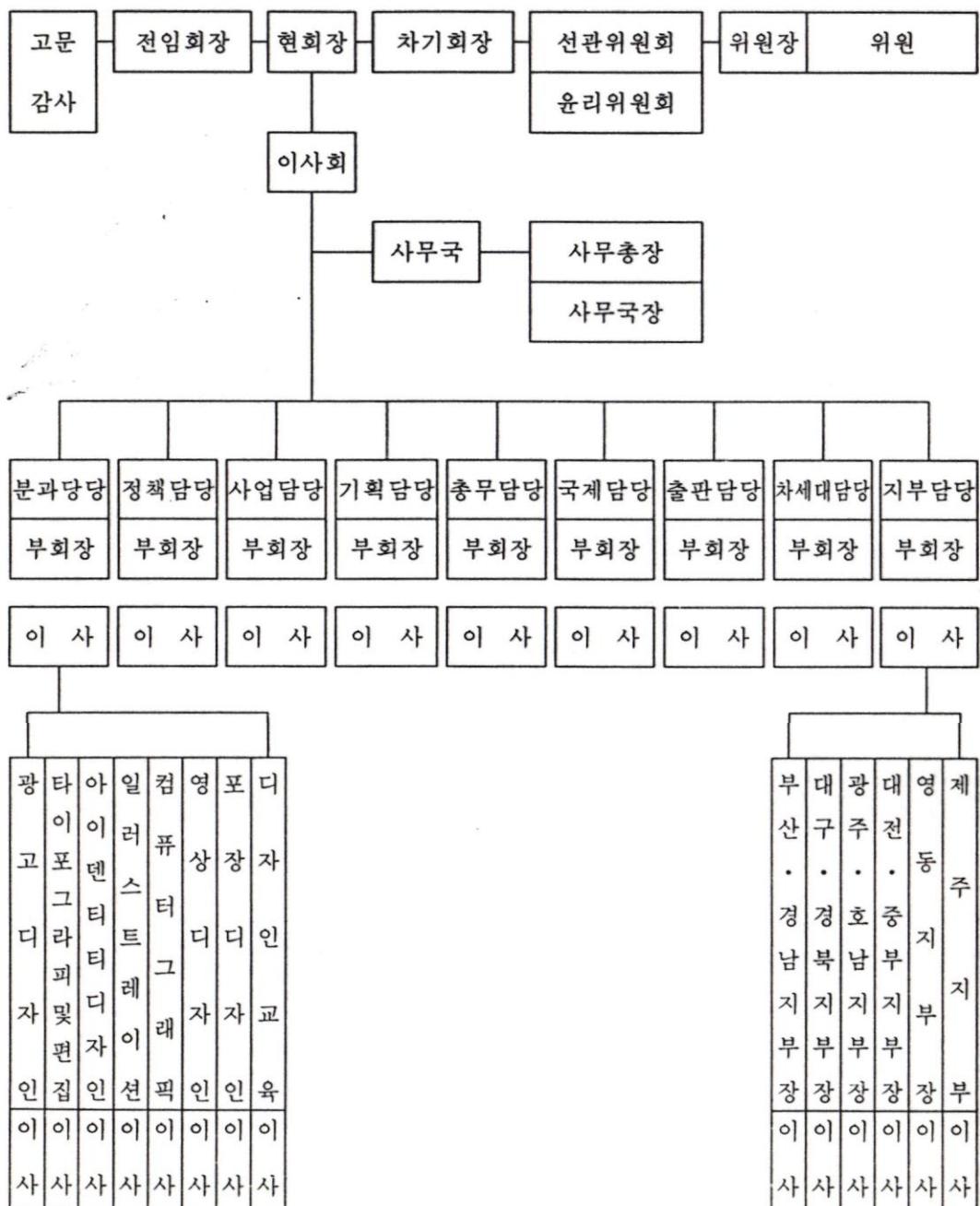
(라) 會員數

區 分	會員數	備考
正会員	849명	
법인회원	11개사	

(2) 조직 및 인원

(가) 機構表

■ 조직도



(4) 任員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處 長 (1 級)	次 長 (2 級)	課 長 (3 級)	係 長 代 理 (4 級)	其 他	計
定 員	45						
現 員	45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전 회 장	현회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전회장이 됨.
현 회 장	차기회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현회장이 됨.
차 기 회 장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
부회장(이사)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
사 무 총 장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
사 무 국 장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
감 사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

○ 關聯規定 : 정관

(3) 豫算 現況

(가) 年度別 豫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	-	191,470	205,500
支 出	-	-	191,470	222,000

(나) '97 豫算內譯

(단위 :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72,500	○ 인건비	22,400
○ 사업수입	130,000	○ 복리후생비	—
○ 사업외수입	—	○ 판공비	—
○ 정부보조	—	○ 사업비	188,000
○ 기 타	3,000	○ 기 타	15,100
계	205,500	계	220,000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 출판사업 (회보발간, 디자인디렉토리발간)	50,000	
○ 디자인진흥사업 (세울연구, 디자인정책연구)	40,000	
○ 문화전시사업 (정기회원전, 타이포그라피전)	40,000	
○ 국제사업 (아코그라다 세계대회유치추진)	10,000	
○ 지부사업	12,000	
○ 분과사업	16,000	

다.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1) 一般 現況

(가) 所 在 地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2-2(정원빌딩)
(전화 : 323-2755)

(나) 代 表 者 : 김 태 종

(다)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제32조	許可日字	1994. 3.17
設立目的	산업체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본협회는 기업과 사회대중에게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낙후된 디자인분야를 개선시키므로서 우리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강력한 상품력을 지닌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디자이너의 능력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음.		
沿革	'78. 5. 6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창립 '94. 3.17 상공부 설립허가		
主要事業	1. 한국팩스타 콘테스트전 및 대학생 패키지디자인공모전 개최 2. 한국패키지디자인총람 발간 3. APD 교류전 참가 4. 중소기업 기술지도 5. 협회보 제작 6. 패키지디자인 전문가초청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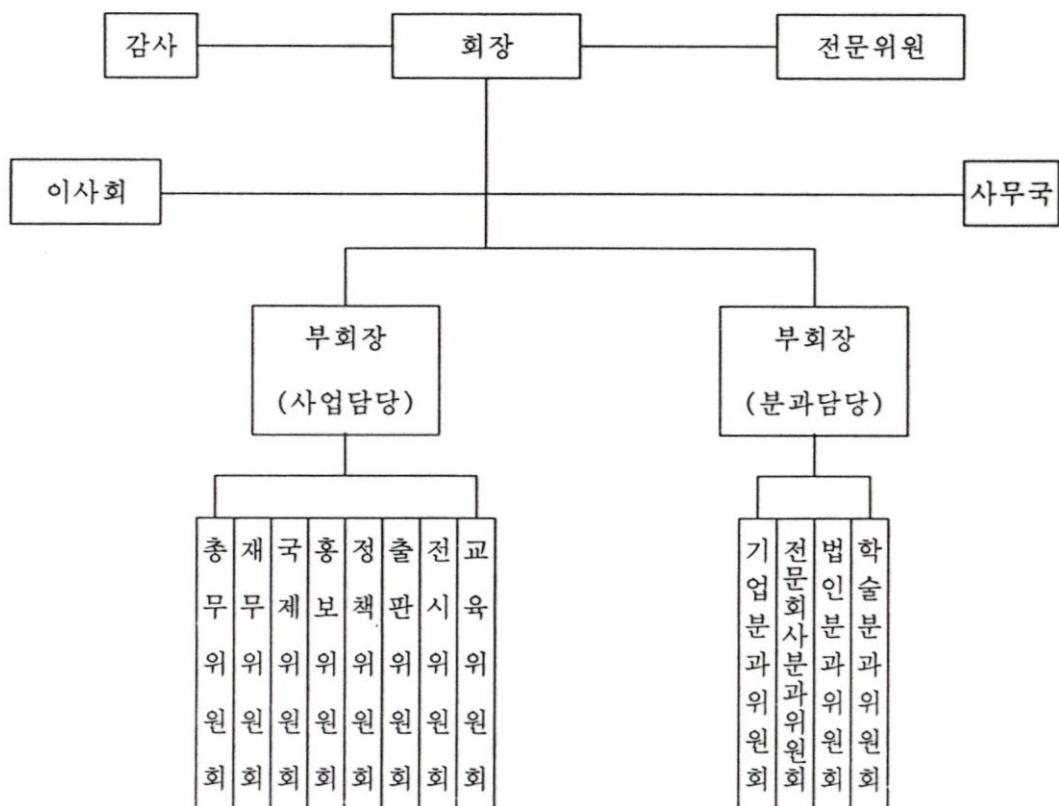
(b) 會員數

區 分	會 員 數	備 考
개인회원	기업분과 : 46업체 101명	
법인회원	전문회사분과 : 47업체 83명 학술분과 : 15개대학 15명	
計	199명	

(2) 조직 및 인원

(a) 機構表

■ 조직도



(4) 任員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1급감)	次 長 (1급율)	課 長 (2급감)	代 理 (2급율)	其 他	計
定 員							
現 員							
過不足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회 장	○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임
부 회 장	○ 회장추천으로 이사회승인, 회장이 임명
운영위원장	"
분과위원장	"
이 사	○ 회장추천, 총회에서 승인 회장임명

○ 關聯規定：정관 제13조, 임원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조

(3) 豈算 現況

(4) 年度別 豈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48,423	102,951		135,700
支 出	40,575	97,708		126,800

(나) '97 豫算內譯

(단위 :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42,000	○ 인건비	13,800
○ 사업수입	78,500	○ 복리후생비	25,000
○ 사업외수입	10,000	○ 판공비	
○ 정부보조	—	○ 사업비	87,000
○ 기 타	5,200	○ 기 타	1,000
계	135,700	계	126,800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1. 한국팩스타 콘테스트전(제6회)	150,000	임대료, 상금, 진행 비
2. 전국대학생 패키지디자인공모전(제4회)		
3. 한국패키지디자인 총람 발간	35,000	3,000부, 250page
4. APD 교류전 참가(일본)	32,000	800 × 40명
5. 협회보 제작(14~18호)	5,000	

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1) 一般 現況

(개) 所 在 地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7-1

(전화 : 571-0801)

(신화빌딩 4층)

(대) 代表 者 : 이 승근

(대)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제32조	許可日字	1994. 4. 9
設立目的	회원사 상호간의 교류 및 협동을 통한 자질향상과 창조적연구활동에 의한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산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산업디자인의 선진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沿革	'94. 4. 9 (사)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허가(상공부장관) '94. 5. 16 법인등록		
主要事業	1. 회원사의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2.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수집과 전파 3. 국제산업디자인 단체간의 교류사업 4. 회원사 수익사업 지원 5. 정보수집 및 디자인력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도 6. 간행물 발간 및 전시회 개최 7. 회원사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사업 8. 국가 및 산업기관에 필요한 제반 디자인활동에 참여 9. 공동산업디자인 개발사업 10.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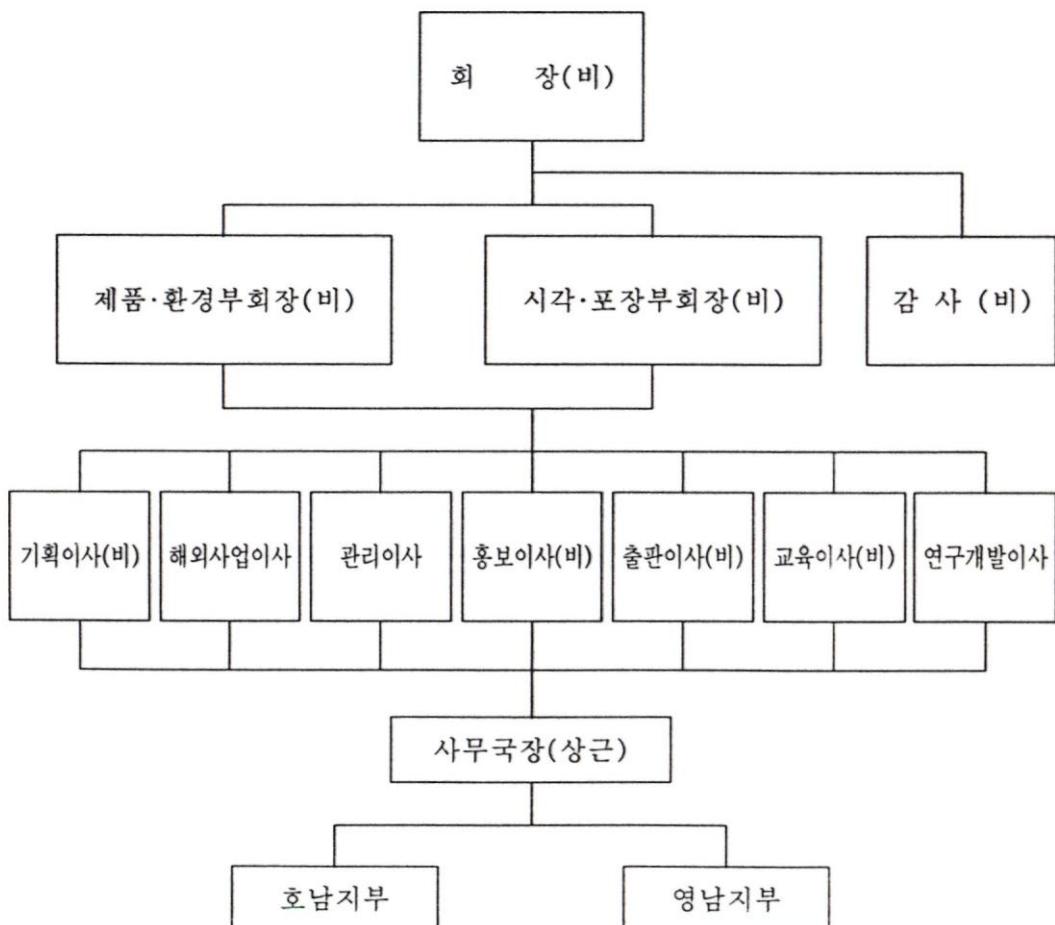
(a) 會員數

區 分	會 員 數	備 考
正회원	50개사 (412명)	본협회는 자연인이 아닌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만이 회원이 될 수 있음
計	50개사(412명)	

(2) 조직 및 인원

(a) 機構表

○ 조직도



(4) 任職員 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處 長 (1 급)	次 長 (2 급)	課 長 (3 급)	係 長 代 理 (4 급)	其 他	計
定 員	-	-	-	1	1	1	3
現 員	-	-	-	-	1	1	2
過不足	-	-	-	1	-	-	1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회 장	○ 총회 선임 → 장관승인
부 회 장	○ 이사회 선임
비 상근 이사	○ 총회 선임
상 근 이 사	○ 이사회 선임 → 장관승인

○ 關聯規定：본협회 정관 11조, 12조

(3) 豫算 現況

(가) 年度別 豫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13,960	14,404	7,079	277,020
支 出	11,414	13,026	7,077	236,830

(나) '97 豫算內譯

(단위 :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32,000	○ 인건비	30,530
○ 사업수입	75,000	○ 복리후생비	16,000
○ 사업외수입	10,000	○ 판공비	5,000
○ 정부보조	160,000	○ 사업비	85,300
○ 기 타	20	○ 기 타	100,000
계		계	236,830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1. 산업디자인 정보수집 및 보급	15,000	
2. 중소기업 지도사업 및 국책사업	20,000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확대	10,000	
4. ICDID(캐나다 헬싱키참여)	15,000	
5. 산업디자인 수요창출	12,000	
6. 산업디자인 인지제고와 회원사 홍보	5,000	
7. 산업기반기술 개발	8,300	

마. 한국디스플레이협회

(1) 一般 現況

(가) 所 在 地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7-4 (3층) (전화 : 547-8232)

(나) 代表 者 : 유영배

(다)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제32호	許可日字	1995. 12. 19
設立目的	디스플레이 제 분야 업무를 통하여 인간환경과 상업환경의 발전 및 향상에 공헌하고,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이룩하여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자질향상, 권익옹호, 지위향상, 상호간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沿革	'95. 4.14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명명 '95. 7. 8 창립 '95.12.19 설립허가		
主要事業	1.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업 2. 디스플레이업계 발전을 위한 회원상호간 정보교환 및 질서유지 3. 회원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강구 4. 정책자료의 수집과 건의 5. 국내외의 디스플레이 관련 조사 및 연구 6. 국내외 정보교환 및 문화교류 사업 7.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8. 출판 및 홍보 9. 디스플레이 관련 전시회 개최 10. 공모전 및 디자인상 제정 및 운영 11.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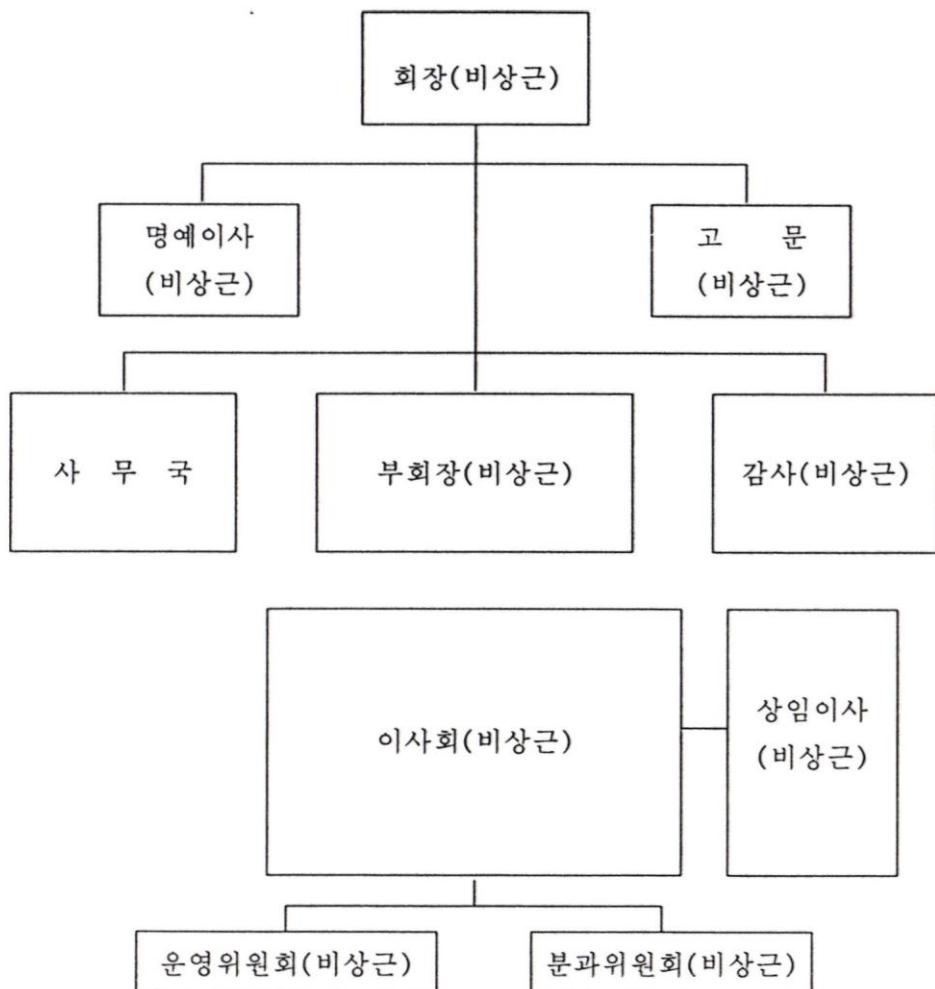
(라) 會員數

區 分	會 員 數	備 考
정회원	354	
찬조회원	17	
計	371	

(2) 조직 및 인원

(가) 機構表

■ 조직도



(4) 任職員 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處 長 (1 급)	次 長 (2 급)	課 長 (3 급)	係 長 代 理 (4 급)	其 他	計
定 員	15인이상						
現 員	24					1	25
過不足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회 장	회원중 선출
부 회 장	회원중 선출
감 사	회원중 선출
이 사	회원중 선출
상 근 이 사	회장단 선임
명 예 이 사	이사회 결의 및 총회인준

○ 關聯規定：正관

(3) 豫算 現況

(가) 年度別 豫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	-	27,200	195,800
支 出	-	-	34,378	195,800

(나) '97 豫算內譯

(단위 :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70,000	○ 인건비	54,750
○ 사업수입	110,800	○ 복리후생비	3,000
○ 사업외수입	—	○ 판공비	—
○ 정부보조	—	○ 사업비	86,600
○ 기타	15,000	○ 기타	51,450
계	195,800	계	195,800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 회보 간행비	25,000	
○ 세미나	15,000	
○ 워크샵	1,800	
○ 특강	1,800	
○ 전시사업비	40,000	
○ 국제교류비	3,000	

바. 한국포장협회

(1) 一般 現況

(가) 所 在 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전화 : 780-9782)

(대한교원공제회관 505호)

(나) 代 表 者 : 임 동 준

(다)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제32조	許可日字	1991. 12. 7
設立目的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회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한 자주적 경제활동조장,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沿革	'91.12. 7 상공부 설립허가(제91-11호) (사) 한국포장협회 '93. 5.21 1차 정관개정(기금조성, 상근이사의 이사회선임) '94. 2. 8 2차 정관개정(임원수 확대) '95. 3.17 3차 정관개정(회장과 상근임원 선임시 승인에서 보고사항으로 개정) '96. 3.13 4차 정관개정(장학사업, 명예회장제 도입)		
主要事業	1. 포장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2. 포장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수집, 전파 3. 국제 포장단체간 교류사업 4. 포장폐기물 처리 및 재생사업 5. 회원사의 포장산업 기술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에 관한 사업 6. 포장교육 연수 및 기술지도 사업 7. 간행물 발간 및 국내전시회 개최 8. 회원 상호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사업 9. 포장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10. 기능공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학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부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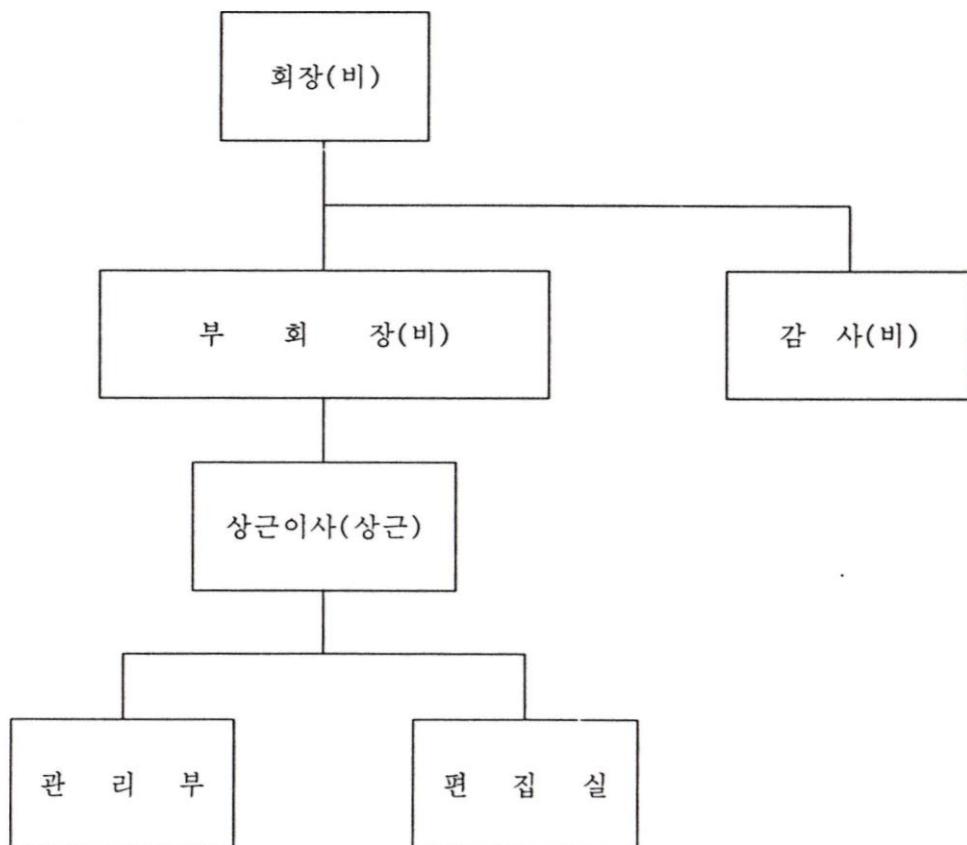
(b) 會員數

區 分	會員數	備 考
正회원	90	
특별회원	5	
計	95	

(2) 조직 및 인원

(a) 機構表

■ 조직도



(4) 任職員 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1급갑)	次 長 (1급을)	課 長 (2급갑)	代 理 (2급을)	其 他	計
定 員	1	1	—	1	1	3	7
現 員	1	1	—	1	1	3	7
過不足	—	—	—	—	—	—	—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회 장	총회 선임
부 회 장	총회 선임 → 장관보고
이 사	총회 선임
감 사	총회 선임
상 근 이 사	이사회 선임

- 關聯規定 :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

(3) 豫算 現況

(가) 年度別 豫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392,386	420,154	421,688	392,073
支 出	392,386	420,154	421,688	392,073

(나) '97 豫算內譯

(단위 :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118,000	○ 인건비	134,805
○ 사업수입	253,000	○ 복리후생비	4,800
○ 사업외수입	—	○ 판공비	13,500
○ 정부보조	—	○ 사업비	164,700
○ 기타	21,073	○ 기타	74,268
계	392,073	계	392,073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1. 월간「포장계」발행	150,000	
2. 세계포장기구 및 아시아포장연맹가입	2,100	
3. 포장전시회 시찰단 파견	600	인솔자 출장비
4. 식품포장재 자율관리 실태조사	500	
5. 포장관련법 및 자료발간	1,000	
6. 세미나 개최(영업, 생산)	6,000	
7. 서울PACK'97 참가	1,000	
8. 회원가입 확대		
9. 광고선 확대		
10. 불법스카웃 방지		
11. 공정거래질서 확립		
12. 폐기물 처리사업		
13. 인력난 해소 및 고급화		

사. 한국색채연구소

(1) 一般 現況

(가) 所 在 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화 : 783-0005)

(나) 代 表 者 : 한 동 수

(다) 設立根據 및 沿革

設立根據	民法 第32条	許可日字	1995. 2. 28
設立目的	색채에 관한 표준화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교육 및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색채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색채문화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沿革	'86 KBS한국색채연구소 설립 '91 한국의 표준색(도료, 섬유, 인쇄잉크)의 제작 '95. 1. 한국색채연구사업(주) 창립 '95. 2. 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 발족(통상산업부 인가) — KBS한국색채연구소 업무 승계		
主要事業	1. 산업 각 분야별 색채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2. 색채 체계에 관한 기초연구 3. 산업부문의 색채응용 연구 4. 환경 또는 공공시설물의 색채 계획 연구 5. 교육용 색채자료의 연구 및 개발 6. 색채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7. 색채에 관한 연구·개발품의 실용화를 위한 제작의 지원 8. 색채를 연구 또는 활용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9. 색채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제공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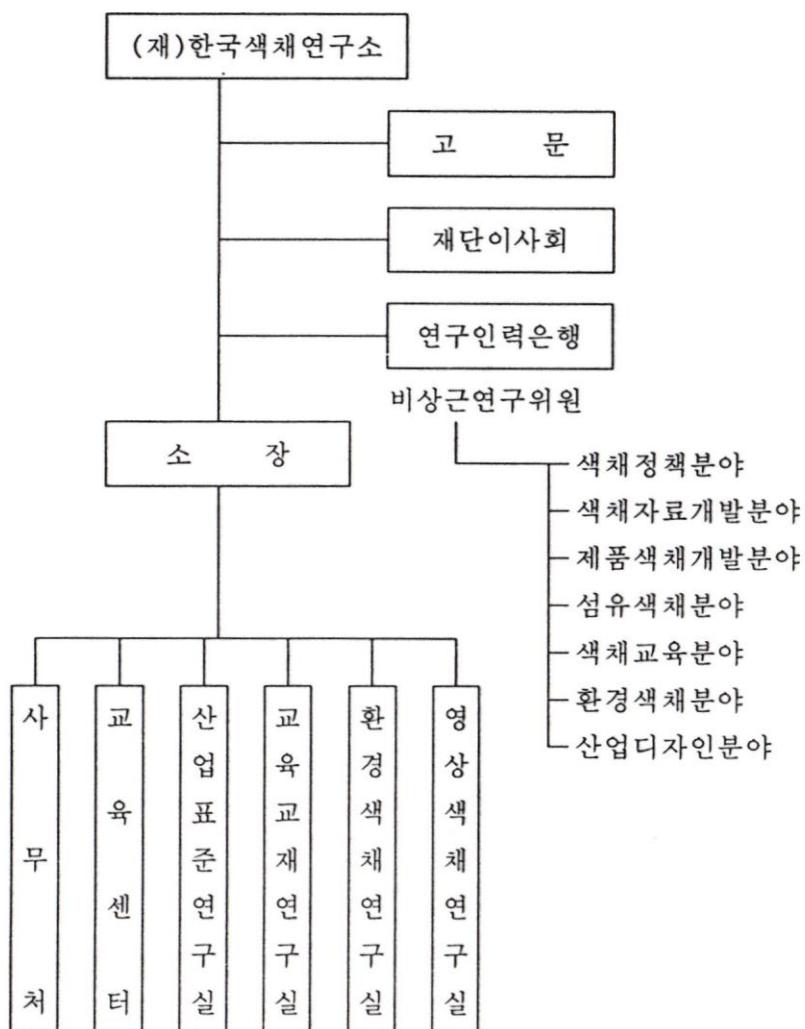
(b) 會 員 數

區 分	會 員 數	備 考
해당없음		
計		

(2) 조직 및 인원

(b) 機 構 表

■ 조직도



(4) 任職員 現況

區 分	任 員	部 長 處 長 (1 階)	次 長 (2 階)	課 長 (3 階)	係 長 代 理 (4 階)	其 他	計
定 員	6	2	3	2	4	10	27
現 員	6	2	2	1	3	10	24
過不足	—	—	1	1	1	—	3

(4) 任員選任 節次

職 位	選 任 節 次
이 사 장(비상근)	법인설립 허가시 추천에 의한 승인
이 사(비상근)	(대표자 추천 - 장관승인)
상근이사(소 장)	

○ 關聯規定：正관

(3) 豫算 現況

(가) 年度別 豫算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94	'95	'96	'97
收 入	—	420,000	830,000	1,530,000
支 出	—	650,000	1,120,000	1,650,000

(나) '97 豫算內譯

(단위: 천원)

'97 收 入		'97 支 出	
○ 회비		○ 인건비	420,000
○ 사업수입	600,000	○ 복리후생비	102,000
○ 사업외수입		○ 판공비	8,000
○ 정부보조	930,000	○ 사업비	760,000
○ 기타		○ 기타	360,000
계	1,530,000	계	1,650,000

※ 인건비에는 본봉·수당·상여금을 합산하고, 판공비에는 업무추진비, 기밀비, 경조비 등을 포함

(다) '97年度 主要 推進事業

(단위: 천원)

主 要 事 業	豫 算 額	備 考
○ 한국프라스틱 표준화 사업(2차년도)	500,000	500색(5,000부)
○ 한국섬유표준색도감 보급	300,000	1,000세트(2,135색)
○ 한국전통색 추출 및 배색사례 연구	130,000	(생기원 공기반 사업)
○ 도료의 고품 소량 다품종 개발	150,000	
○ 색채자료의 제작 보급	165,000	
○ 환경색채 설계 용역 수주	285,000	

9. 외국의 주요 디자인 진흥기관 및 단체

가. 영 국

Design Council

- 설립근거 : 영국 왕립현장
- 설립년도 : 1944년
- 조직체계
 - 본부 : 5개 팀(Research team, Design team, Education & Training team, Communication team, Policy & Planning team)
 - 지부 : 6개소(Leeds, Birmingham, London, Glasgow, Traforest, Belfast)
- 위치 : 런던 헤이마르
- 성격 : 통산부 산하 공공기관
- 인원 : 총 60명
- 주요 사업내용
 - 산업디자인 자문 및 개발, 자금지원
 - 디자이너 등록, 정보제공, 출판 및 디자인 센터 운영
 - 학교교사에 대한 디자인 재교육 및 교육훈련 지원
 - 산업디자인 전시회 및 공모전 개최
 - 산업디자인 관련단체와의 교류
- 각 기관별 기능
 - Research Team : 영국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기업간 디자인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협력방안 연구

- 소비자 취향에 적합한 디자인개발방법
-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특수분야의 산업디자인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 등
- Design Team : Business Link(지역별 디자인 진흥기관) 지원사업
 - Business Link의 디자인 자문관 교육 및 심사분석 등 지원업무 수행
 - 지역별로 전문 산업디자이너로 구성된 Design Support Group을 구성하여 Business Link 디자인 자문관의 업무를 지원
- * 현재 영국내 10개그룹이 구성되어 17개 Business Link 디자인자문관 지원
- Education and Training Team : 디자인 교육개선업무 수행
 - Design Focus in School(350명의 정부, 업계, 학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 및 산업기술훈련 업무수행
- Communication Team :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 디자인 저널 발간을 통한 실용정보 제공
 - 디자인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키 위한 디자인 공모전 수행
예) * Project 2045 : 2045년 영국 모습에 대한 디자인공모, 125,000 명의 작품을 기업에 공개
 - * Design Vision : 21세기 의회 조감도 공모
- Policy & Planning Team : Design Council의 사업관리
- 기획, 예산, 정책수립 등 종합적 관리 업무 수행

Business Link

- 설립목적 : 효율적인 지역별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 설립년도 : '92년 7월부터 각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설립
 - '95년도 말, 70개 Business Link 설립
- 성격 : 공공기관
- 운영체계
 - 통산부의 예산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방공공기관의 협조하에 민간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 초기 3년간은 통산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며 사업이 정상화되면 이용업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디자인개발부터 수출지원 업무까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자문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
 - 지방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관이 지도사업 수행
 - 산업디자인 수요조사, 전문산업디자이너 소개 등 포괄적 지원업무 수행
 - 디자인 자문관은 Design Council 및 지역별 Design Support Group (10개 지역에서 운영중)의 지원을 받음

* '95년말 17명의 디자인 자문관이 Business Link에 배치되어 있음

STD(Society of Typographic Designers)

- 설립년도 : 1928년
- 성격 : 영국의 타이포그래프의 질적향상 도모
- 인원 : 534명(회원)
- 사업내용 : 출판, 공모전,

나. 일 본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IDC)

- 설립목적 : 사회, 산업계, 디자인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
- 설립일자 : '96년 3월
- 총투자액 : 120억엔(아이찌현, 나고야시, 민간이 각 1/3씩 부담)
- 특 성 : IDC빌딩내에 연구소, 도서관, 전시장, 박물관, 청소년 문화센터, 상가 등이 입주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갖춤
- 주요 사업내용
 - 독자적 디자인연구사업 및 외부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 일반대중, 경영자,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 박물관 건립을 통해 일반대중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 제고
 - 각종 도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 상가에서 서적, 비쥬얼정보 등 디자인 관련용품 판매

JIDPO(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

- 설립년도 : 1969년
- 성 격 : 일본의 산업디자인 진흥정책 집행기관
- 인원현황 : 18명(디자이너 없음)
- 주요 사업내용
 - 정보수집·분석 및 전시회나 세미나 개최
 - 정보교환, 출판,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진흥활동을 지원

- 지역디자인센터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심적인 역할인 기획·조정기능을 수행
- GOOD DESIGN 상품 선정사업

OIDI(OSAKA Industrial Design Institute)

- 설립년도 : 1987년
- 성격 : 디자인 발전 및 진흥 도모
- 인원 : 15명
- 사업내용 : 교육, 연구개발, 출판, 전시

JDF(Japan Design Foundation)

- 설립년도 : 1981년
- 성격 : 디자인진흥을 통한 산업 및 문화의 발달도모
- 인원 : 20명
- 사업내용 : 심포지움 및 세미나, 출판, 전시, 공모전

JAGDA(Japan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 설립년도 : 1978년
- 성격 :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이너들의 침목 도모
- 인원 : 2,051명(회원)
- 사업내용 : 강의,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회원들간 정보 교환, 교육
연수, 전시, 출판

JIDA(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 설립년도 : 1952년
- 성격 : 산업디자인 발전 및 디자이너들의 수준향상
- 인원 : 737명(회원)
- 사업내용 : GD관련제도, 교육연수, 출판, 전시

다. 대만

DPC(Design Promotion Center)

- 설립년도 : 1979년
- 인원 : 80명
- 조직현황 : 본원 6개부(디자인매니지먼트부, R&D부, 산업디자인부, 상업디자인부, 포장디자인부, 유럽디자인협력부)와 해외 3개분원(뒤셀도르프, 밀라노, 동경)
- 주요기능 : 자문업무, 전문교육과 기술적인 지원,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활동, 특별디자인프로젝트 지원,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주요 사업내용
 - 대만디자인 국제교류 : 해외 유명디자이너를 초청, 기업과 연계하여 특정 디자인프로젝트 및 강의·연수프로그램 실시
 - 대북국제디자인전시회 : 디자인에 대한 인식확산과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전시회개최
 - 디자인관련 5개년 계획의 집행

- 품질제고5개년계획, 대만상품이미지강화5개년계획, 산업디자인제고
5개년계획
- 대만산업디자인교류 : 신제품공동개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망 신진
디자이너와 업체를 연계
- 포장실험 및 인증 : 최신설비를 갖춘 포장연구동을 설치하여 각종 실
험 지원 및 인증제도 운영
- 디자인국제화 : 산업디자인관련 국제전시회 및 국제단체의 총회 유치

라. 미국

IDSA(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 설립년도 : 1965년
- 소재지 : 미국 버지니아주 Great Fall
- 회원수 : 2,450명(미국내 산업디자이너 모임)
- 사무국 직원 : 8명
- 사무국 예산 : 1백만 \$
- 조직 : 연구소, 어린이 교육원, 도서관, 출판사등(254개 지부)
- 주요 사업내용
 -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고 산업디자이너의 권익증진 도모
 - 자료수집 및 발간으로 디자인의 최근 경향, 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급
 - 지역별 디자인교류 및 IDEA 프로그램 실시
 - 우수디자인을 선정하는 IDEA(I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 프로그램 시행
 - IDSA는 산업디자인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산업디자이너
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 수행

10. 주요 디자이너 및 업체별 디자인부서장 명단

가. 초대디자이너

〈제품디자인〉

백태원	박대순	권순형	이신자	민철홍	이우성	곽원모	최대석	김덕겸
양행기	권상오	부수언	이순혁	곽계정	이 건	고을한	박인철	최금용
윤 근	박인숙	박상우	신영옥	박진홍	홍성수	정대유	이병학	신광석
이부연	정옥란	김철수	김명주	홍경희	민경우	노경조	백 일	이인술
장미연	최종관	김세환	서길용	윤지홍	김태종	정국현	윤영태	김태호
황인철	한석우	이수봉	이재원	박억철	정영환	조종호	변상태	신명철
정용주	강병길	황순영						

〈시각디자인〉

김교만	이명구	봉상균	김수석	조영제	김홍련	김명호	권명광	양승춘
양호일	신용태	장완영	신언모	김 현	황부용	이효일	백금남	류재우
현용순	오근재	방재기	안정언	구동조	나재오	이정호	유한태	윤학중
최아영	박종운	김학성	이봉섭	오은식	박강룡	김상락	문 철	정연종
명계수	조승래	김택훈	장병석	임현혁	고 현	조동업	이상원	

〈환경디자인〉

한도룡 한기웅

〈포장디자인〉

—

나. 추천디자이너

〈제품디자인〉

정경원	박종서	조벽호	천복희	이순종	김현중	김철호	이계천	이유섭
심재진	정경연	김병상	정필인	신택균	전은희	정주훈	안덕춘	이석준
조규촌	지해천	이봉규	박성길	이기상	정충모	이원갑	최현창	추원교
노창호	이승철	박희면	이기후	양윤식	유상욱	정하성	구기설	구본호
이소경	김성진	홍정표	김치준	황영성	이석현	윤재우	김창식	박선우
이순인	유대석	김호연	박태영	김맹길	이해묵	전성수	양덕환	김현식
이경자	길종로	이경림	유선일	송영주	류남희	최남선	장호익	신승모
정경석	안규성	박성규	신상영	김정필	심규승	윤창수	김금술	이한성
문철웅	신학성	이윤동	권승애	박병호	전영제	성창경	홍선영	윤정식
김시만	이병훈	김태진	김경배	김석영	고석천	이우찬	황세민	박경원
김옥현								

〈환경디자인〉

유진형	이재권	김준기	송창호	권기범	강경용			
-----	-----	-----	-----	-----	-----	--	--	--

〈포장디자인〉

문수근	오국영	박규원	최충식	임종웅	권영수	한승문	남용현	최영숙
최문정	안상락	김철영	이원진	김진길	조성진	김재익	윤석영	김미정

〈시각디자인〉

정시화	장동훈	김덕용	조종현	권기덕	고춘혜	서홍선	한백진	송성재
홍동원	이상원	서기흔	김남호	박용원	이준섭	강윤성	박일재	윤병훈
최호천	김공웅	심인보	임경호	강성철	김경균	한옥현	김기순	이윤수
김창식	정계문	남윤호	박덕원	장범순	이진구	구환영	김경훈	양진필
김금재	서광적	박연선	위성호	윤현정	장호철	선병일	현영호	고석우
김제중	박금준	이정혜	여훈구	이명구				

다. 주요 업체별 디자인부서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비고
윤오용	기아자동차 디자인센터 이사	T : 801-2100 F : 801-2099	김경민과장(2035) 한기호대리(2082)
임종웅	(주)농심 농심기획 이사	T : 820-8903 F : 820-8997	
유한정	대우전자 디자인센터 상무	T : 369-0601 F : 369-0659	김윤기과장(0603) 최현
김용관	동양매직 디자인실 이사	T : 3473-2413 F : 3473-5493	
이재열	동양제과 마케팅부 디자인팀 부장	T : 710-6152 F : 717-4782	
김용택	롯데제과 마케팅 담당 이사	T : 670-6222 F : 670-6451	
김홍식	삼성자동차 디자인팀 이사	T : 0331-280-8134 F : 0331-281-4070	박봉서과장
정국현	삼성전자 상품기획센타 이사	T : 259-2001/2 F : 259-2040	우상호과장(2052)
박재관	삼성IDS 디자인연구원 실장	T : 3441-0210 F : 3441-0270	
이경옥	선경인더스트리 상품 기획실 디자인실 부장	T : 273-3131(5672) F : 264-3673	
이명기	쌍용자동차 디자인실장	T : 526-1535 F : 526-1470	
김준배	아세아자동차공업 디자인연구소 이사	T : 062-370-4028 F : 062-372-6591	
조용현	태평양 상품개발 지원본부 상무	T : 709-5054 F : 709-6209	
이재훈	한국전자 영상통신사업부 이사	T : 589-5341 F : 589-5404	
최광	한국타이어 디자인광고팀 부장	T : 222-1350 F : 222-1679	
박종서	현대자동차 디자인연구소 상무	T : 0339-369-5024 F : 0339-369-5939	
권승호	현대전자 디자인부장	T : 527-4518 F : 527-4519	방영찬과장(5922)
김철호	LG전자 디자인센터 상무	T : 630-3003 F : 675-4573	양두선과장(3201)
김종성	LG화학 디자인연구소 이사	T : 3474-6762 F : 3473-2283	
구규우	애경산업 디자인실 부장	T : 8181-791 F : 8181-629	

11. 세계 디자인관련 주요발간물 현황

- 미 국 : IDSA紙, ID(INDUSTRIAL DESIGN)紙
- 일 본 : AXIS紙, CARSTYLING紙, DESIGN NETWORK紙
- 이태리 : DOMUS紙, AUTO & DESIGN紙, INTERNI紙
- 독 일 : FORM紙, DESIGN REPORT紙
- 스웨덴 : FORM紙
- 프랑스 : BON A TIRER紙
- 영 국 : EYE紙, DESIGN紙

12.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연혁

가. 설치근거 및 년월일

-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 4,908 : '96. 2. 9)

나. 구성원 현황

구 분	과 장	4 급	5 급	6급이하	계
정 원	1	1	3	4	9
현 원	1	1	2	4	8

다. 업무분장

-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5,051호 : '96. 6. 29)

1. 산업디자인진흥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운용
3. 산업디자인기술의 연구개발지원
4.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진
5. 패션산업의 진흥
6. 산업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 개인별 업무분장

이일규 과장

표재호 서기관

- 각종 계획업무
- 디자인관련 법령운영 등

이영렬 사무관

- 「산업디자인센터」건립 추진
 - 건립추진위원회 및 건립사업단 구성·운영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자금배정 및 집행
-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구성
 -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안) 작성
 - 확정 및 공고
- 디자인산업육성

- 디자인관련 세제지원
- 디자인전공자 병역특례혜택 부여 등
- 기업디자인책임자들과의 교류
- 디자인관련 단체 등

김시성 주무관

-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 운용
 -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관련업무
 -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등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자금배정 및 집행
 - 개발사업 실태조사 실시
- 진흥원 보조금
 - 예산
 - 정산
- 진흥원 일반업무 관련사항
 - 이사회 개최 등
- 디자인편람 편집
- 세계화추진위원회 관련업무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서무
 - 각종 업무협조

서정원사무관, 황중연 주무관

-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의 추진
 - 지방산업디자인 종합행사(대전 등 8개도시 순회개최)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선정 및 전람회
 - 초·중·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
 - 각종 산업디자인관련 전시회 및 후원행사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전문회사 실태조사
 - 지원방안 마련
 -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
- 산업디자인보호제도 개선·보완
 - 보호제도개선안 마련
 - 특허청의 의장법개선대책 반 참여
- 산업기반기금 관련업무
 - 산업기반기금 운영지침 수립
 - 자금배정 및 집행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관련업무
- 시제품 개발사업
- 포장관련 업무 등

김은경 주무관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 플라스틱 색채 표준화(96 ~ 98)
- 산업색채 공동연구 기반구축(97 ~ 99)
- 우리상품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추진
- 산업디자인 국제협력 사업 추진
 - 세계우수산업디자인박람회 개최
 - ICSID관련업무 추진
- 패션 및 텍스타일디자인 육성
- 민원업무(외국인 고용추천 등) 등

이 난 희

- 서무업무협조

라. 산업디자인관계관 변동현황('96. 2 ~ '97. 5)

통상산업부장관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 安光咎	통상산업부장관 林昌烈
통상산업부차관 安光咎	통상산업부차관 姜萬洙	통상산업부차관 韓惠洙
차관보 鄭海湧 秋俊錫	차관보 秋俊錫	차관보 秋俊錫
기술품질국장 朴永基	기술품질국장 朴永基 白萬基	기술품질국장 白萬基
산업디자인과장 李一奎	산업디자인과장 李一奎	산업디자인과장 李一奎
서기관 表載昊	서기관 表載昊	서기관 表載昊
사무관 李英烈	사무관 李英烈	사무관 李英烈
사무관 崔南浩	사무관 崔南浩 徐貞苑	사무관 徐貞苑
사무관 姜秉三	사무관 姜秉三	
주무관 金時成	주무관 金時成	주무관 金時成
주무관 黃重淵	주무관 黃重淵	주무관 黃重淵
주무관 金恩京	주무관 金恩京	주무관 金恩京
주무관 朴千載 李蘭姬	李蘭姬	李蘭姬

산업디자인편람

1997년 5월 일 인쇄
1997년 5월 일 발행

편집 :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이일규, 표재호, 이영렬,
서정원, 김시성, 황중연,
김은경, 이난희

발행 : 통상산업부

발행처 : 남형문화사
전화 : 503-4825

